

## CONTENTS

### 권두칼럼

한국경제의 해법 · 김정식 ..... 02

### 현안분석

이탈리아 금융거래세가 주식 및 지수선물에 미친 효과 분석  
· 이상엽 ..... 08

지방 SOC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에 대한 소고: 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 김현아 ..... 36

###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OECD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 제출하도록  
제안규정 발표 외 ..... 60

### 정책흐름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 ..... 92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마련 및 통보 ..... 94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97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본격 추진 ..... 10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103

### 이슈&포커스

“배출권거래제 미흡, 환경세 도입을” 외 ..... 109



## 한국경제의 해법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로 낮아지면서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 추세가 진전되면서 잠재성장률은 기존의 3%대에서 2% 중반대로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주력산업인 조선과 철강은 물론 전자와 자동차 산업까지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데 비해 이를 대체할 신성장동력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기업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우리경제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는 고성장기에 연금체제와 복지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해 놓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저성장과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 저성장과 고령화, 연금체제 미구축의 영향

저성장과 고령화 그리고 연금체제의 미구축이라는 3가지 요소가 동시에 합쳐지게 되면 그 나라는 구조적으로 가계부채나 국가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성장률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연금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령화가 진전되면 노후소득이 준비되지 않아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다.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경우 복지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결국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통화량을 증발할 경우 통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버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과 주거비용이 늘어나면서 소비여력이 감소하고 또한 임금이 인상된다. 경제는 임금상승과 기업투자 감소의 악순환 속으로 들어 가게 되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경제는 이미 이러한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2017년이면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부족과 고령층의 증가로 생계형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비록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낮아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경우 복지수요의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늘어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로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남미와 같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추격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의 주력산업은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우리에게 산업을 이전해 주었듯이 우리 역시 중국에 주력산업을 이전해주리라 예상되는 것이다.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주력산업이 이전될 경우 실업이 늘어나면서 우리에게 산업을 물려주고 난 후 일본이 경험한 것과 같이 장기경기침체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연금체제를 확대하고 또한 보완해야 한다. 복지수요를 줄이고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연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청년부터 연금에 가입하도록 세금 인센티브를 주어 노후소득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연금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복지지출을 늘려 노후소득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노후소득이 안정되어야 소비가 늘어날 수 있으며 복지수요가 줄어들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신산업정책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둘째, 신산업정책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여 기업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사용했다. 정부규제를 완화했으며 최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내수를 부양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 외에도 기업투자를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중국으로 이전하는 주력

.....

**복지수요를 줄이고  
노후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금보험료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연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  
**약해진 기업가 정신을  
 탓하기보다는  
 정부는 신산업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줄여줘서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선 산업의 미래 비전이 있어야 현재 투자를 늘릴 수 있다.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는 신산업정책이 중요하다. 기존의 산업정책은 정부가 직접 특정산업에 투자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공급이 과잉되거나 투자손실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산업정책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신기술전문인력 육성이나 신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 등도 모두 이러한 신산업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공과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여 유능한 과학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신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업에 투자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다.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많은 위험요인이 존재한다. 첨단기술개발에는 대규모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제품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리스크를 줄여서 기업투자가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해 새로운 고등교육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의 산업구조에 맞게 짜여진 교육구조를 새로운 산업구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연구인력을 초빙하여 새로운 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첨단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약해진 기업가 정신을 탓하기보다는 정부는 신산업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줄여줘서 기업투자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 제조업 육성과 수출의 중요성

셋째, 내수와 서비스업도 중요하지만 수출과 제조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비스업에서 70%의 고용이 창출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내수를 부양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는 맞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소비가 주를 이루는 내수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소득이 없는 가운데서 내수를 늘리면 결국 소비는 부채를 통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수를 부양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내수시장이 큰 경우는 서비스업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에 의해 국부가 창출되는 경제에서는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는 내수보다는 제조업을 육성해서 수출해야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 서비스업은 수출하기 어려운 업종이 많기 때문에 내수를 통해 높은 성장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조업 수출을 통해 먼저 소득이 늘어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줄어들게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리쇼어링(reshoring)을 교훈삼을 필요가 있다.

연금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고령화와 저성장기조가 지속되면서 한국경제는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변화된 경제환경과 산업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해서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주도전략에 의해 소득창출을 한 후 내수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나도록 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할 때 한국경제는 활로를 찾을 수 있다. 

.....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주도전략에 의해  
 소득창출을 한 후  
 내수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나도록 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수립할 때 한국경제는  
 활로를 찾을 수 있다.**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losing	Mid	Ch
	6.1293		
	1.2386		
	0.4823		
	8.8393		
	2.6432		
	1.2827		
	618.813		
	7.9738		
	0.0082		
	0.007		
	0.005		
	6.9100	-0.0029	
	2.0663	-0.0004	
	1.0028	-1.3000	
(C)	483.750		



# | 현안분석 |

- 이탈리아 금융거래세가 주식 및 지수선물에 미친 효과 분석  
이상엽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 지방 SOC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에 대한 소고 : 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이탈리아 금융거래세가 주식 및 지수선물에 미친 효과 분석

## I. 연구배경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syobleee@kipf.re.kr)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에 막대한 구제금융이 지원되면서, 금융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금융거래세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2009년부터 EU회원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09년 9월 G20 정상 회의와 2010년 6월 재무장관회의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주장하였고, 2011년 9월 EU집행위원회에서는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을 위한 실행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 이후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속되던 중 같은해 11월 합의에 실패하면서 EU 차원의 도입은 무산되었다. 특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자본시장이 발달된 영국과 네덜란드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 금융거래세가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지 않을 경우 자본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반대하였다.

이후 프랑스는 2102년 1월 금융거래세의 단독 도입을 선언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시행하였고, 10월에는 EU회원국 중 11개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하였으나 영국, 네덜란드 등이 반대하여 현재 EU 차원의 금융거래세 논의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이후 2013년 3월 1일부터 이탈리아가 주식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였고, 같은 해 9월부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으며 관련된 선행연구들도 다수 존재하나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을 찬성하는 Keynes(1936), Tobin(1978), Stiglitz(1989), Summers and Summers(1989) 등은 금융거래세가 단기적 투기거래를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의 불안정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Schwert and Seguin(1993), Kupiec(1996), Habermerier and Kirilenko(2003), Haberer(2004), Ehrenstein et al.(2005), Amihud and

Mendelson(2011)등은 금융거래세가 거래량을 감소시켜 유동성이 축소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금융거래세의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 분석을 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근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주식에 대한 거래세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나 변동성이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Meyer et al.(2003), Haferkorn and Zimmermann(2013), Capelle-Blancard and Havrylchuk(2014), Rühl and Stein(2014) 등).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주식에 대한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금융거래세가 부과된 금융자산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지수선물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수선물에 대한 거래세가 주식의 거래량이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만약 주식과 지수선물이 투자자 입장에서 대체적인 투자수단이라고 보면 주식의 거래비용 증가는 지수선물의 상대적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지수선물의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반면, 보완적인 투자수단이라고 보면, 주식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현 선물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선물의 거래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즉, 하나의 금융자산에 대한 금융거래세는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주식에 대한 거래세가 지수선물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  
**최근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세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체로  
 주식에 대한 거래세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나  
 변동성이나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

가 주식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탈리아에서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6개월이라는 시차를 두고 시행하였다는 점과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시가총액이 500만유로 이상인 주식에 대해서만 부과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근의 선행연구들처럼 DID(Difference in Difference)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즉, 금융거래세 부과 전후를 금융거래세 과세 대상 자산과 금융거래세 면제 대상 자산의 거래량과 변동성의 변화를 비교하여 금융거래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이탈리아의 금융거래세 현황을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금융거래세 관련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이탈리아의 금융거래세가 주식과 지수선물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식과 지수선물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주식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지수선물과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지수선물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 II. 이탈리아 금융거래세<sup>1)</sup>

### 1. 이탈리아의 금융거래세 개요

이탈리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주식거래에 대해, 같은 해 9월 1일부터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였다. 2012년 10월부터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12월 24일 금융거래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주식 거래에 대해, 2013년 6월부터는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는 9월로 연기되어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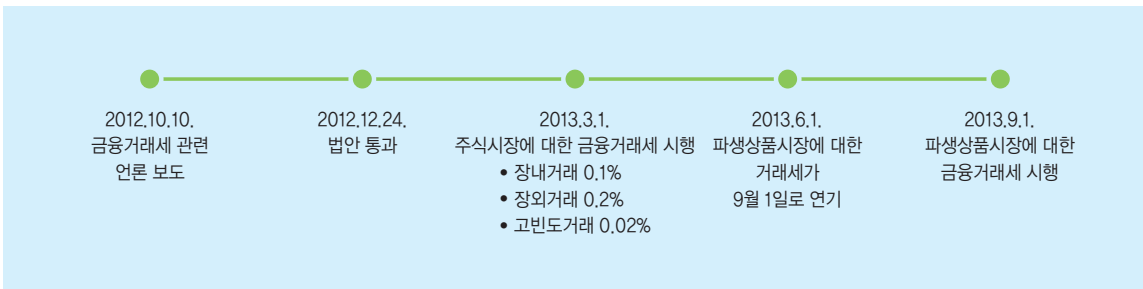
#### 가.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

먼저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를 살펴보면, 과세 대상 주식은 이탈리아에 본점을 둔 기업이 발행한 주식 및 이익참가부증권, 미국예탁증권, 유럽예탁증권, 전세계예탁증권 등이며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이다. 단, 정규거래소 또는 다자간거래시스템

“  
이탈리아는 2013년  
3월 1일부터 주식거래에 대해,  
같은 해 9월 1일부터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였다.  
”

을 통해 거래되는 주식 중 매수일이 속한날의 전년도 11월 기준으로 주식 시가총액이 500만유로 미만인 주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규거래소 또는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율은 0.22%이며, 장내거래의 경우 경감세율인 0.12%가 적용된다. 장내거래는 정규거래소와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의 다자간거래시스템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고빈도거래의 경우에는 0.0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납세의무자는 매수·매도 주문을 수정 및 취소하는 자이다. 참고로 고빈도거래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주식의 매수·매도 주문의 전송, 수정, 또는

[그림 II-1] 이탈리아 금융거래세 관련 타임라인



출처: Coelho (2015), Figure C,2<sup>2)</sup>

1) 이탈리아의 금융거래세는 PWC, Financial Transaction Tax—Italy, 2014와 IBFD를 참고하여 정리함.

2) Coelho, Maria, Dodging Robin Hood: Responses to France and Italy’s Financial Transaction Taxes (October 13, 2015).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389166> or <http://dx.doi.org/10.2139/ssrn.2389166> 자료 검색일자: 2015.10.28.

〈표 II-1〉 이탈리아의 금융거래 과세제도

	주식·증권거래 과세	파생금융상품거래 과세 <sup>2)</sup>
과세대상	주식, 이익참가부증권(PFI), 예탁증권	선물, 옵션, 선도, 워런트, 커버드워런트, 스왑, 증권(certificates), 양도성유가증권(transferable securities)
과세율(과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외거래 : 0.22%</li> <li>장내거래<sup>1)</sup> : 0.12%</li> <li>고빈도거래 : 0.02%</li> </ul>	18.75유로~200유로
납세의무자	매수인(거주자, 비거주자)	거래참여자(매수자, 매도자 모두)

주: 1) 장내거래란 이탈리아에서 규정한 정규거래소 및 다자간거래시스템(MTF)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를 말함

2) 단, 파생금융상품 기초자산가액의 50% 이상이 주식, PFI, 예탁증권인 경우이거나, 양도성유가증권의 경우 만기일에 현금결제로 인수·인도하거나 주식, PFI, 예탁증권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거래세가 부과됨

취소 결정을 하는 것으로, 주식의 매수·매도 주문 후 주문의 수정·취소까지 0.5초를 초과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예외적으로 증여상속에 의한 양도, 사내그룹 간 거래, 국제적 협약에 의한 거래, 중앙은행,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뮤추얼 펀드, 연기금 등의 거래에서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나.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금융거래세

금융거래세가 적용되는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금융상품의 기초가액 또는 준거가치의 50% 이상이 주식, 예탁증권, 이익참가부증권인 것으로 한정하

고 있으며, 주식과 달리 매수·매도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구체적으로 주식, 예탁증권, 이익참가부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만기일에 현금결제로 인수 인도하는 양도성 유가증권으로 주식 관련 선물과 옵션이 과세 대상이다. 파생금융상품의 종류와 계약의 명목가치에 따라 최대 200유로까지 정액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데, 파생금융상품의 종류별 금융거래세는 〈표 II-2〉에 정리되어 있다. 한편, 파생금융상품이 정규거래소나 다자간거래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할 경우에는 금융거래세의 20%를 경감해 준다.

〈표 II-2〉 이탈리아의 파생금융상품 금융거래세

(단위: 유로)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계약의 명목가치(1,000유로)							
	0~2.5	2.5~5	5~10	10~50	50~100	100~500	500~1,000	1,000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수(index) 또는 수익(yield)에 기초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물(futures), 증권(certificates), 커버드워런트(covered warrants), 옵션</li> </ul> </li> </ul>	0.01875	0.0375	0.075	0.375	0.75	3.75	7.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에 관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물, 워런트, 증권, 커버드워런트, 옵션</li> </ul> </li> </ul>	0.125	0.25	0.5	2.5	5	25	50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식스왑계약</li> <li>주식선도(forward)계약</li> <li>현금결제증권(cash settlement)</li> <li>주식관련 금융계약</li> <li>복합파생금융상품(주식+스왑·선도·현금결제증권·기타금융계약)</li> </ul>	0.25	0.5	1	5	10	50	100	200

### Ⅲ. 금융거래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 금융거래세에 관한 선행 연구

먼저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은 거래세가 과도한 단기 투기거래를 억제함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Keynes(1936)는 거래세가 단기적인 투기거래를 억제하여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과 자산가격의 왜곡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tiglitz(1989)도 거래세가 단기적인 투기거래와 렌트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와 같은 비효율적인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Summers and Summers(1989) 역시 거래세가 투기거래로 인한 시장의 불안정성을 축소하고 금융산업 부문에 적절한 자원이 투입되게 유도할 수 있으며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연구들은 거래세가 거래량을 감소시켜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Schwert and Seguin(1993)은 모든 자산이 거래세에 동일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나 자산 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거래세의 시행과정, 조세회피 등의 과정

“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반대하는  
 연구들은 거래세가 거래량을 감소시켜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

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Kupiec(1996)은 거래세가 단기 투기적 거래에 따른 변동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자산가격의 하락에 따른 변동성이 더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Lo et al.(2004)은 거래세가 거래를 축소시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이로 인하여 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성이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Haberer(2004)은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거래세의 세율이 낮을 경우에는 투기적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축소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이 U자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 외에 Ehrenstein et al.(2005), Habermeier and Kirilenko(2003), Amihud and Mendelson(2011)들도 유사한 이유로 거래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

〈표 Ⅲ-1〉 거래세 도입을 주장하는 선행연구

저자	내 용
Keynes(1936)	거래세는 단기적인 투기 거래를 억제하여 과도한 변동성과 자산 가격의 왜곡을 감소시킨다고 주장
Tobin(1978)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기 위한 외환거래세를 주장
Stiglitz(1989)	거래세는 단기적인 투기 거래를 억제하여 시장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Summers and Summers(1989)	거래세는 투기 거래로 인한 불완전성을 줄이고 금융산업 부문에 적절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하며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

〈표 III-2〉 거래세 도입을 반대하는 선행연구

저자	내 용
Schwert and Seguin(1993)	모든 자산이 거래세에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 아니므로 포트폴리오나 자산 구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거래세 시행과정, 과세 회피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고려한다면 거래세의 비용이 비생산적인 투기 거래 감소라는 편익보다 더 클 것
Kupiec(1996)	거래세로 인한 자산 가격의 하락이 노이즈거래(noise trading)에서의 변동성 하락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Habermeier and Kirilenko(2003)	거래세는 비유동성 할인(illiquidity discount)을 유발할 수 있음 거래세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요구 수익률의 증가와 자산가격의 하락을 유발할 것
Haberer(2004)	거래세의 세율이 낮을 때는 투기적 시장에서의 과도한 변동성(excess volatility)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시장의 유동성과 변동성은 U자 형태의 관계를 보이므로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서 부과되는 거래세는 변동성을 높일 것
Ehrenstein et al.(2005)	거래세는 변동성과 가격왜곡을 줄일 수 있으나 시장의 심도에 대한 price impact function <sup>1)</sup> 의 민감도가 높아진다면 시장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
Amihud and Mendelson(2011)	거래세는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유동성이 높은 대형주의 주가를 더욱 하락시킬 것

주: 1) Price impact function은 유동성을 측정하는 함수로  $\Delta p = \Phi(\omega, \tau, t)$ 의 형태이며,  $\Delta p$ 는  $t$ 시점에서의  $\omega$ 규모의 시장가주문으로 인한  $t+\tau$  시점에서의 가격의 로그함수적 변화를 의미(Iori et al, 2003)함

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금융거래세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이 서로 상반되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실증연구들이 금융거래세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표 III-3〉에서 정리된 것처럼 실증분석 결과들 또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금융거래세 시행 전후의 수익률과 변동성 등을 비교하거나, 고정효과 모델, DID 방법론 등을 사용하여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나 거래세가 변동성, 거래량, 자산가격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 Meyer et al.(2013)가 프랑스 금융거래세가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래세가 거래량을 감소시켰으나 유동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aferkorn and Zimmermann(2013)도 프랑스의 금융거래세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거래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

다. Capelle-Blancard and Havrylych(2014) 역시 프랑스 주식시장의 데이터와 DID방법론을 사용하여 금융거래세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금융거래세가 거래량을 감소시켰으나 유동성이나 변동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Rühl and Stein(2014)은 이탈리아의 금융거래세가 거래량과 수익률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식의 거래량은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5분 단위 수익률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세가 오히려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거래세에 관한 실증연구 요약

저자	자료 및 결과
Roll(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3개국(1987-1989)</li> <li>• 거래세와 주식시장 변동성은 역(-)의 관계에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li> </ul>
Umlauf(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1984, 1986)</li> <li>• 변동성과 거래세 사이에 정(+)의 관계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li> </ul>
Saporta and Kan(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1963, 1974, 1984, 1986)</li> <li>• 거래세와 변동성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음</li> </ul>
Hu(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1991, 1992, 1993), 일본(1977, 1980), 한국(1978, 1979, 1987, 1990, 1994), 대만(1978, 1985, 1986, 1993)</li> <li>• 거래세와 변동성 사이에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음</li> <li>• 소형주의 경우 거래세와 거래량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대형주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li> </ul>
Baltagi, Li and Li(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1997)</li> <li>• 거래세와 거래량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함</li> <li>• 거래세와 변동성 사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남</li> </ul>
Liu(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1989),</li> <li>• 거래세는 거래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li> </ul>
Phylaktis and Aristidou(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테네 주식시장(1998, 1999, 2000)</li> <li>• 정상적인 경제 상태에서는 거래세는 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강세장에서 거래세는 변동성과 정(+)의 관계를 보임</li> </ul>
Pomeranets and Weaver(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1932-1981)</li> <li>• 거래세와 거래량은 역(-)의 관계에 있음</li> </ul>
Meyer et al.(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2012)</li> <li>• 거래세와 거래량은 역(-)의 관계에 있으며, 거래세와 스프레드 사이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음</li> </ul>
Haferkorn and Zimmermann(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2012)</li> <li>• 스프레드 수준이 상승하였고 유동성 지표의 하나인 book depth<sup>1)</sup>는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li> </ul>
Capelle-Blancard and Havrylchyk(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2012)</li> <li>• 거래세는 거래량을 감소시키나 유동성이나 변동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ul>
Rühl and Stein(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탈리아(2013),</li> <li>• 거래세는 거래량과 부(-)의 관계에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li> <li>• 한편, 5분 단위 수익률과는 정(+)의 관계에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li> </ul>
European Com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2012)</li> <li>• 거래세가 주식 가격이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주: 1) Book Depth은 특정 시점의 주문 리스트(order book)의 가격 수준의 개수로 유동성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임

## 2.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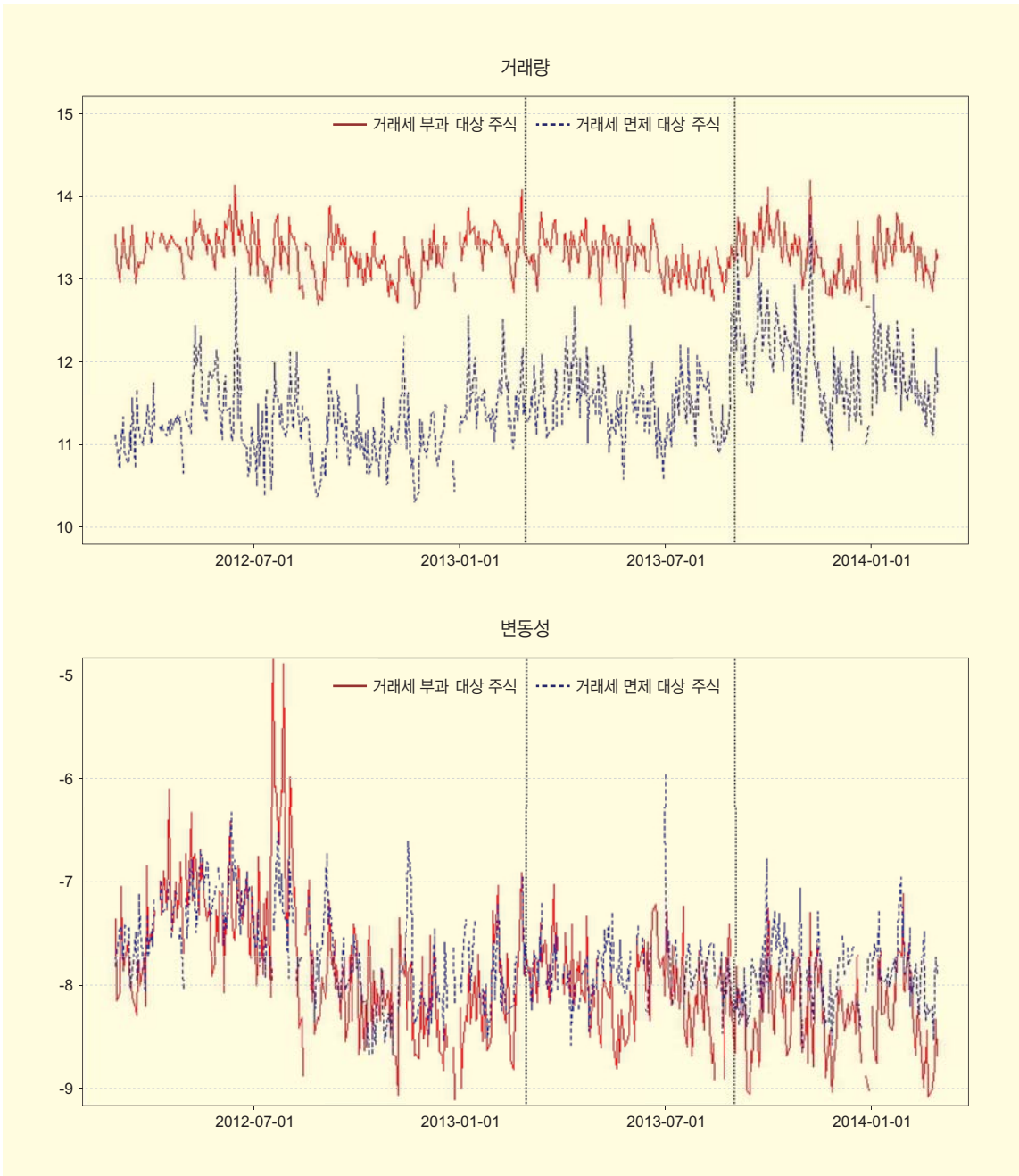
### 가. 자료

금융거래세가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35개 기업과 면제 대상 35개 기업의 일별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사용하였다. 면제 대상의 기업 수를 부과대상 기업 수와 동일하게 설정한 이유는 시가총액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는 주식들 간의 비교를 위해서이다. 본 분석에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각 주식의 거래량, 일중 고가, 일중 저가 등의 변수를 Thomson Reuters Data Stream에서 추출하였고, 이벤트를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부과된 2013년 3월 1일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부과된 2013년 9월 1일로 설정하여 이벤트 윈도우를 각각 이벤트일 전후 3개월, 6개월, 12개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Ⅲ-1]은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동안의 주식시장의 거래량 및 변동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표 Ⅲ-4>의 주식시장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3개월 전후를 비교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의 거래량 평균은 감소하였고, 금융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의 거래량 평균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678,475천주에서 657,020천주로 3.16% 감소하였고 금융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98,203천주에서 114,612천주로 16.71% 증가하였다. 한편, 변동성의 경우,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변동성 평균은 0.0003에서 0.0004로 33.3% 증가하였고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변동성 평균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거래세가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35개 기업과  
면제 대상 35개 기업의 일별 데이터를  
패널화하여 사용하였다.  
”

[그림 Ⅲ-1]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주식의 거래량 및 변동성 추이



주: 그래프에는 거래량과 변동성의 자연로그값을 사용함  
수직선은 event day(2013.3.1., 2013.9.1.)

〈표 Ⅲ-4〉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3개월 주식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volume	59	678475	163598	376406	1295676	63	657020	142643	312843	983871
volatility	59	0.0003	0.0002	0.0001	0.0010	63	0.0004	0.0001	0.0002	0.0009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volume	59	98203	46903	34579	284033	63	114612	50307	39670	317099
volatility	59	0.0004	0.0001	0.0002	0.0010	63	0.0004	0.0001	0.0002	0.0007

주: 1. volume은 거래량, volatility는 주기변동성, return은 자연로그수익률, return30은 30일 평균  
 2. volume의 단위는 천주

다음으로 〈표 Ⅲ-5〉의 주식시장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6개월 전후를 비교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의 거래량 평균은 감소하였고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의 거래량 평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615,501천주에서 590,175천주로 4.12% 감소하였고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83,535천주에서 107,502천주로 28.69% 증가하였다. 변동성의 경우,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은 0.0003에서 0.0004로 약 33.3%가 증가하였으나 금융거래세 면제대상 주식의 변

동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Ⅲ-6〉의 주식시장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12개월 전후를 비교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의 거래량 평균은 감소한 반면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의 거래량 평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634,876천주에서 611,349천주로 3.71% 감소하였고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86,974천주에서 141,831천주로 63.07% 증가하였다. 변동성의 경우,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은 0.0006에서 0.0003으로 50% 증

〈표 Ⅲ-5〉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6개월 주식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volume	124	615504	169414	310940	1295676	127	590175	144268	312843	983871
volatility	124	0.0003	0.0002	0.0001	0.0010	127	0.0004	0.0001	0.0001	0.0009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volume	124	83535	41271	30204	284033	127	107502	47430	39451	317099
volatility	124	0.0004	0.0002	0.0002	0.0013	127	0.0004	0.0002	0.0002	0.0026

주: 1. volume은 거래량, volatility는 주기변동성  
 2. volume의 단위는 천주

“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는  
 과세 대상 주식의  
 거래량을 감소시킨 반면  
 면제 대상 주식의 거래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가하였고,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변동성 평균은 0.0005에서 0.0004로 20%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는 과세 대상 주식의 거래량을 감소시킨 반면 면제 대상 주식의 거래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은 거래세 면제 주식으로 거래가 이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세 대상의 주식 거래량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거래세 과세 대상 주식의 변동성은 증가한 반면 거래량이 늘어난 금융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의 변동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Ⅲ-2]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동안의 주식의 거래량 및 변동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표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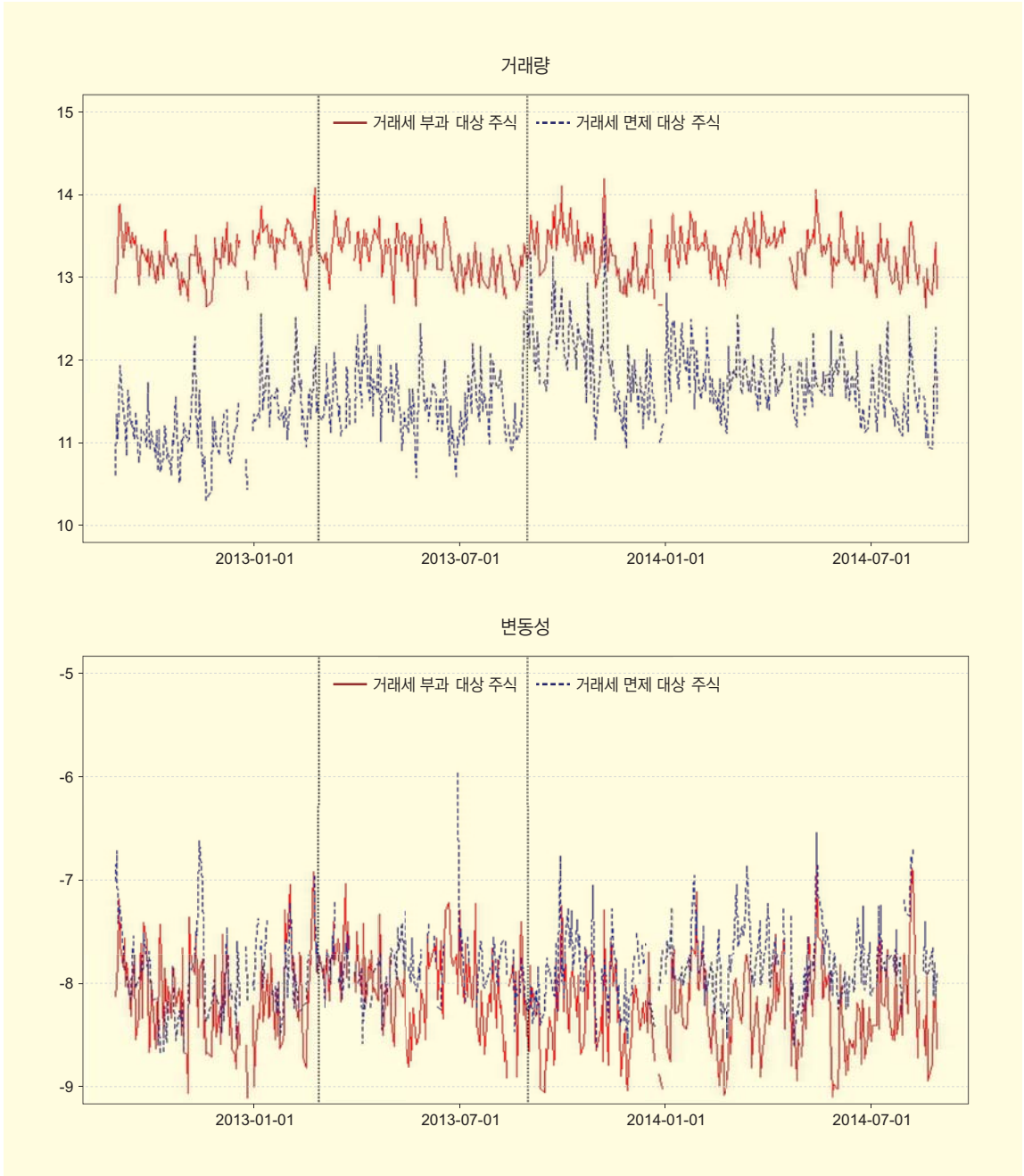
-7)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3개월 전후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거래량과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524,374천주에서 671,489천주로 28.06% 증가하였고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100,503천주에서 211,724천주로 110.66% 증가하였다. 한편,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과 면제 대상 주식 변동성 평균은 감소하였다.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변동성의 평균은 0.0004에서 0.0003으로 25%,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변동성 평균은 0.0005에서 0.0004로 20% 감소하였다.

〈표 Ⅲ-6〉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주식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volume	252	634876	168399	310940	1373251	252	611349	173661	312843	1456190
volatility	252	0.0006	0.0008	0.0001	0.0082	252	0.0003	0.0001	0.0001	0.0009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volume	252	86974	49220	30204	515152	252	141831	95714	39451	966924
volatility	252	0.0005	0.0003	0.0002	0.0018	252	0.0004	0.0002	0.0002	0.0026

주: 1. volume은 거래량, volatility는 주기변동성  
 2. volume의 단위는 천주

[그림 III-2]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주식의 거래량 및 변동성 추이



주: 그래프에는 거래량과 변동성의 자연로그값을 사용함  
수직선은 event day(2013.3.1., 2013.9.1.)

〈표 III-7〉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3개월 주식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volume	64	524374	112853	343422	913582	65	671489	214753	349991	1456190
volatility	64	0.0004	0.0001	0.0001	0.0007	65	0.0003	0.0001	0.0001	0.0007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volume	64	100503	43683	39451	295030	65	211724	143796	56898	966924
volatility	64	0.0005	0.0003	0.0002	0.0026	65	0.0004	0.0002	0.0002	0.0012

주: 1. volume은 거래량, volatility는 주기변동성  
 2. volume의 단위는 천주

다음으로 〈표 III-8〉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6개월 전후 기초통계량에 따르면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거래량과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증가하였다.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590,175천주에서 632,862천주로 7.23% 증가하였고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107,502천주에서 176,708천주로 64.38% 증가하였다. 변동성의 경우,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변동성의 평균은 0.0004에서 0.0003으로 25%가량 감소하였다.

금융거래세 부과 12개월 전후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거래량과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602,688천주에서 626,125천주로 3.89% 증가하였고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의 평균은 95,662천주에서 151,565천주로 58.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동성 평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III-8〉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표 III-8〉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6개월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volume	127	590175	144268	312843	983871	125	632862	197411	316651	1456190
volatility	127	0.0004	0.0001	0.0001	0.0009	125	0.0003	0.0001	0.0001	0.0008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volume	127	107502	47430	39451	317099	125	176708	117580	56898	966924
volatility	127	0.0004	0.0002	0.0002	0.0026	125	0.0004	0.0001	0.0002	0.0012

주: 1. volume은 거래량, volatility는 주기변동성  
 2. volume의 단위는 천주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이후 과세 대상 주식과 면제 대상 주식 모두 거래량은 증가하였으나, 과세 대상 주식 거래량의 증가폭은 면제 대상 주식의 증가폭

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와 관련 없는 다른 시장요인에 의해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III-9〉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주식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volume	251	602688	157391	310940	1295676	251	626125	181435	305658	1456190
volatility	251	0.0003	0.0001	0.0001	0.0010	251	0.0003	0.0001	0.0001	0.0011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volume	251	95662	46000	30204	317099	251	151565	92552	56479	966924
volatility	251	0.0004	0.0002	0.0002	0.0026	251	0.0004	0.0002	0.0002	0.0015

주: 1. volume은 거래량, volatility는 주가변동성  
2. volume의 단위는 천주

나. 실증분석 모델

금융거래세가 주식의 거래량과 주식의 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Haferkorn and Zimmermann(2013), Capelle-Blancard and Havrylchyk(2014)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한 DID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을 처치군(Treatment Group)으로,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을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ln(TV_{it}) = \alpha_1 + \beta_{11}FTT_{it} + \gamma_1 X + \delta_i + \eta_t + \epsilon_{it} \quad \text{식 (1)}$$

$$\ln(vol_{it}) = \alpha_2 + \beta_{21}FTT_{it} + \gamma_2 Z + \psi_i + \omega_t + v_{it} \quad \text{식 (2)}$$

식 (1)의  $\ln(TV)_{it}$ 은 주식  $i$ 의  $t$ 일의 거래량이고,  $FTT_{it}$ 은 터미변수로 금융거래세 부과 이후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X$ 는 통제변수들의 벡터로 변동성 변수, 전일 거래량, 자연로그수익률( $return$ ), 30일 평균 자연로그수익률( $return30$ )이 포함되어 있다.  $\alpha_i$ 는 주식  $i$ 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은 고정효과를,  $\eta_t$ 은  $t$ 일에 모든 시장에 미치는 관측되지 않은 고정효과를 통제한다. 다음으로 식 (2)의  $\ln(vol)_{it}$ 은 주식의 가격 변동성으로 Parkinson(1980)이 제시한 high low estimator를 사용하였다.<sup>3)</sup>  $Z$ 는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량, 전일의 변동성, 유동성 변수를 포함하는 통제변수의 벡터이다.  $\psi_i, \omega_t$ 는 각각 각 기업의 고정효과와 시간의 고정효과를 통제한다.

3) High low estimator =  $\frac{(\ln(H)_t - \ln(L)_t)^2}{4\ln(2)}$ 이며,  $\ln(H)_t$ 은 일중 고가이고  $\ln(L)_t$ 은 일중 저가이다.

먼저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가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표 III-10>에 정리되어 있다. 주식에 대한 거래세 부과 이후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의 거래량은 감소, 변동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이후 3개월 동안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

의 거래량은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보다 약 17.1%<sup>4)</sup> 감소하였고, 변동성은 약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 윈도우를 6개월과 12개월로 확장했을 때 거래량은 각각 19.3%, 23.7% 감소하였고, 변동성은 8.2%, 13.1% 증가하였다.

<표 III-10>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거래량·변동성 변화 실증분석 결과

	3개월		6개월		12개월 <sup>1)</sup>	
	거래량	변동성	거래량	변동성	거래량	변동성
FTT	-0.191*** (0.0367)	0.111** (0.0531)	-0.200*** (0.0288)	0.0683* (0.0403)	-0.254*** (0.0216)	0.101*** (0.0298)
변동성 <sub>t</sub>	0.319*** (0.0121)		0.321*** (0.00927)		0.317*** (0.00675)	
변동성 <sub>t-1</sub>		0.0718*** (0.0149)		0.0968*** (0.0112)		0.119*** (0.00817)
거래량 <sub>t</sub>		0.608*** (0.0230)		0.570*** (0.0162)		0.518*** (0.0109)
거래량 <sub>t-1</sub>	0.342*** (0.0145)		0.384*** (0.0107)		0.467*** (0.00746)	
수익률	0.0802*** (0.0106)	0.318*** (0.0141)	0.0833*** (0.00836)	0.321*** (0.0108)	0.0829*** (0.00618)	0.334*** (0.00779)
30일평균 수익률	0.00530 (0.00481)	0.0148** (0.00691)	0.00551 (0.00362)	0.0101** (0.00503)	0.00244 (0.00250)	0.00777** (0.00343)
상수항	7.265*** (0.184)	-9.977*** (0.299)	6.729*** (0.136)	-9.572*** (0.205)	6.429*** (0.112)	-9.024*** (0.167)
R <sup>2</sup>	0.538	0.523	0.577	0.528	0.632	0.548
관측치	2,773	2,772	5,023	5,021	9,762	9,757
기업 수	70	70	70	70	70	70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FTT는 금융거래세 부과 이후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3. 거래량, 변동성, 수익률, 30일평균수익률은 모두 자연로그값을 사용  
 4. 시간 및 기업의 고정효과는 생략  
 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이벤트가 포함됨

4)  $(\exp(-0.187)-1)*100 \approx -17.1$

다음으로 <표 Ⅲ-11>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가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파생금융상품에 거래세 부과 이후 3개월, 6개월, 12개월 동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이벤트 윈도우에서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의 거래량이 감소하고 변동성이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과세 이후 3개월 동안 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의 거래량은 거래세 면제 대상 주식 거래량보다 약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 동안 13%, 12개월 동안 18.6% 감소하였다. 반면, 변동성은 과세 이후 3개월 동안 17.6%, 6개월 동안 8.6%, 12개월 동안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주식 거래량·변동성 변화 실증분석 결과

	3개월		6개월 <sup>1)</sup>		12개월 <sup>1)</sup>	
	거래량	변동성	거래량	변동성	거래량	변동성
FIT	-0.196*** (0.0406)	0.187*** (0.0571)	-0.173*** (0.0275)	0.114*** (0.0393)	-0.219*** (0.0212)	0.0727** (0.0295)
변동성 <sub>t</sub>	0.325*** (0.0122)		0.324*** (0.00861)		0.317*** (0.00667)	
변동성 <sub>t-1</sub>		0.105*** (0.0154)		0.101*** (0.0108)		0.125*** (0.00817)
거래량 <sub>t</sub>		0.597*** (0.0218)		0.592*** (0.0156)		0.533*** (0.0111)
거래량 <sub>t-1</sub>	0.398*** (0.0148)		0.408*** (0.0102)		0.451*** (0.00747)	
수익률	0.0958*** (0.0114)	0.330*** (0.0148)	0.0915*** (0.00781)	0.321*** (0.0103)	0.0864*** (0.00600)	0.327*** (0.00769)
30일평균 수익률	0.00199 (0.00445)	-0.000213 (0.00628)	0.00123 (0.00307)	0.0108** (0.00438)	0.00117 (0.00239)	0.00946*** (0.00336)
상수항	7.119*** (0.233)	-9.385*** (0.356)	7.231*** (0.205)	-9.915*** (0.308)	6.280*** (0.112)	-9.126*** (0.166)
R <sup>2</sup>	0.611	0.542	0.612	0.536	0.641	0.538
관측치	2,784	2,783	5,395	5,392	9,633	9,628
기업 수	70	70	70	70	70	70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FIT은 금융거래세 부과 이후 금융거래세 부과 대상 주식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3. 거래량, 변동성, 수익률, 30일평균 수익률은 모두 자연로그값을 사용

4. 시간 및 기업의 고정효과는 생략

1) 해당 기간에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이벤트가 포함됨

### 3.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지수선물에 미친 영향 분석

#### 가. 자료 및 기초 통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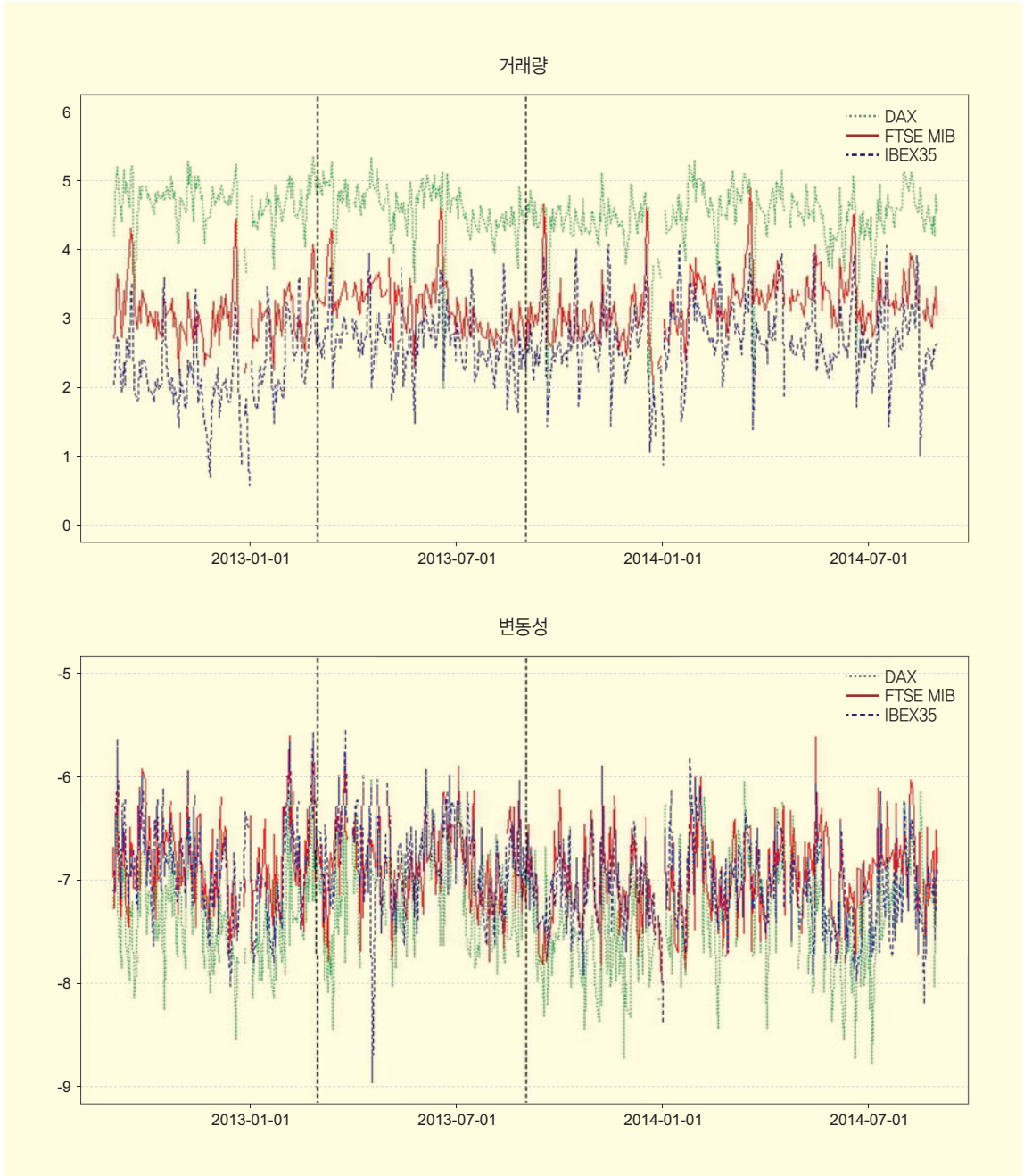
거래세가 지수선물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지수선물 FTSE MIB futures와 비교대상인 스페인 IBEX35 futures, 독일의 DAX futures의 일별데이터를 패널화하여 사용하였다. 비교대상으로 스페인 지수선물을 선택한 이유는 스페인이 유로존 내에서 이탈리아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두 국가가 시장의 충격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비해 독일은 유로존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크고 시장충격에 대하여 두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비교국으로 선정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각 지수선물의 거래량, 미결제약정, 매수호가, 매도호가, 일중 고가, 일중 저가 등의 변수를 Thomson Reuters Data Stream에서 추출하였고, 이벤트 일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부과된 2013년 9월 1일과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부과된 2013년 3월 1일로 설정하였고, 이벤트 윈도우는 각각의 이벤트일 전후 3개월, 6개월, 12개월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그림 Ⅲ-3]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동안의 지수선물 거래량 및 변동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표 Ⅲ-12>~<표 Ⅲ-14>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전후를 비교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전후 3·6개월의 경우 이탈리아와 독일 지수선물의 평균 거래량은 감소하였고, 스페인의 지수선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지수선물의 평균 거래량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후 3·6개월간 각각 9.5%, 9.3% 감소하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전후를 비교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전후 3·6개월의 경우  
이탈리아와 독일 지수선물의 평균 거래량은  
감소하였고, 스페인의 지수선물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였으나 12개월간 평균 거래량은 약 15%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스페인 지수선물의 평균거래량은 각각 1.5%, 6.5%, 29.6% 증가한 반면, 독일의 지수선물은 평균 거래량이 각각 13.4%, 14.7%, 14.6% 감소하였다. 한편 변동성은 세 국가 모두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3]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거래량 및 변동성 추이



주: 그래프에는 거래량과 변동성의 자연로그값을 사용함  
수직선은 event day(2013.3.1., 2013.9.1.)

〈표 III-12〉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3개월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탈리아 FTSE MIB Futures										
TV	64	25090	16705	13279	99412	65	22701	14715	11961	105423
VOL	64	0.0001	0.0001	0.0000	0.0005	65	0.0001	0.0001	0.0000	0.0005
BAS	64	0.0011	0.0012	0.0003	0.0100	65	0.0007	0.0003	0.0003	0.0016
OI	64	16337	689	15080	17680	65	18420	769	16785	19360
스페인 IBEX35 Futures										
TV	65	16939	9027	5197	44389	65	17198	11714	4236	58894
VOL	65	0.0001	0.0001	0.0000	0.0005	65	0.0001	0.0001	0.0000	0.0005
BAS	65	0.0007	0.0005	0.0000	0.0022	65	0.0006	0.0004	0.0000	0.0019
OI	65	56482	14990	10568	72711	65	66302	20044	10070	85774
독일 DAX Futures										
TV	65	99532	30688	7302	169507	65	86171	21836	5790	167174
VOL	65	0.0001	0.0001	0.0000	0.0003	65	0.0000	0.0000	0.0000	0.0002
BAS	65	0.0001	0.0001	0.0001	0.0004	65	0.0002	0.0002	0.0001	0.0016
OI	65	153200	26107	61904	185576	65	146580	24841	40189	170518

주: TV는 거래량, VOL은 변동성, BAS는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 OI는 미결제 약정

〈표 III-13〉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6개월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탈리아 FTSE MIB Futures										
TV	127	27492	14238	9884	99412	125	24940	15383	8167	105423
VOL	127	0.0001	0.0001	0.0000	0.0006	125	0.0001	0.0001	0.0000	0.0005
BAS	127	0.0012	0.0029	0.0003	0.0320	125	0.0007	0.0003	0.0002	0.0018
OI	127	16244	749	14880	17680	125	18867	913	16785	20545
스페인 IBEX35 Futures										
TV	128	17304	8930	4482	52098	125	18677	11496	2946	58894
VOL	128	0.0001	0.0001	0.0000	0.0010	125	0.0001	0.0001	0.0000	0.0006
BAS	128	0.0009	0.0006	0.0000	0.0027	125	0.0007	0.0005	0.0000	0.0036
OI	128	56351	15073	10568	72711	125	64646	19360	10070	85774
독일 DAX Futures										
TV	128	109209	33363	7302	208790	125	93141	29661	5790	199468
VOL	128	0.0001	0.0001	0.0000	0.0004	125	0.0001	0.0001	0.0000	0.0004
BAS	128	0.0001	0.0001	0.0000	0.0004	125	0.0002	0.0002	0.0001	0.0016
OI	128	155378	25975	47352	185576	125	139821	23902	40189	170518

주: TV는 거래량, VOL은 변동성, BAS는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 OI는 미결제 약정

〈표 III-14〉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탈리아 FTSE MIB Futures										
TV	251	25807	13637	9231	99412	251	28770	16705	8167	133402
VOL	251	0.0001	0.0001	0.0000	0.0009	251	0.0001	0.0001	0.0000	0.0008
BAS	251	0.0084	0.0146	0.0000	0.0726	251	0.0006	0.0003	0.0002	0.0023
OI	251	16180	757	14880	17895	251	19942	1353	16785	22505
스페인 IBEX35 Futures										
TV	252	14588	8763	2025	52098	252	18902	11342	2774	58894
VOL	252	0.0001	0.0001	0.0000	0.0010	252	0.0001	0.0001	0.0000	0.0006
BAS	252	0.0009	0.0006	0.0000	0.0031	252	0.0008	0.0006	0.0000	0.0036
OI	252	49057	15560	8802	72711	252	66245	18711	10070	85774
독일 DAX Futures										
TV	252	112606	33509	7302	211241	252	96198	30843	5415	199468
VOL	252	0.0001	0.0001	0.0000	0.0004	252	0.0001	0.0001	0.0000	0.0004
BAS	252	0.0001	0.0001	0.0000	0.0004	252	0.0002	0.0002	0.0001	0.0016
OI	252	150236	24198	37253	185576	252	134077	23154	39811	17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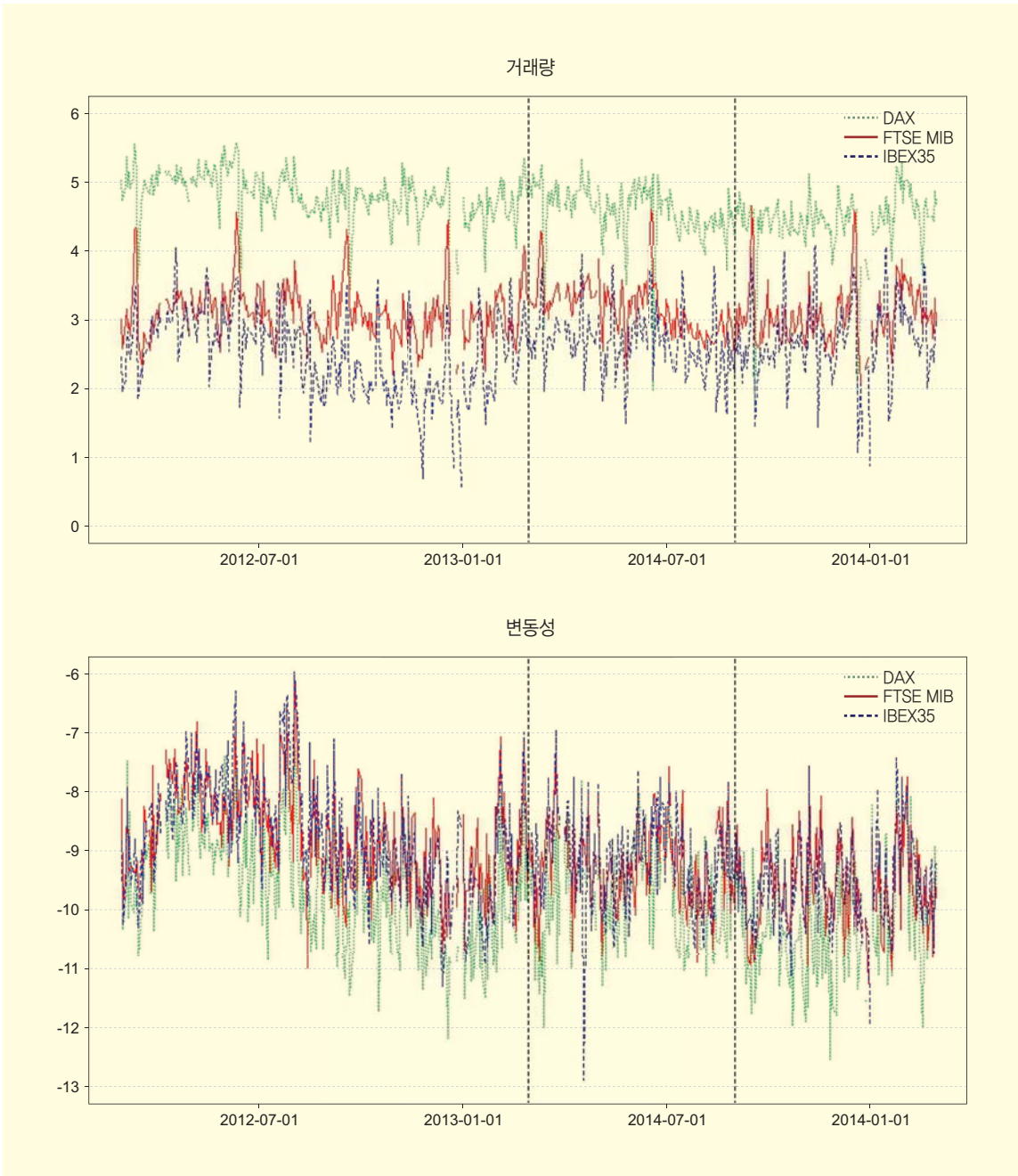
주: TV는 거래량, VOL은 변동성, BAS는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 OI는 미결제 약정

다음으로 [그림 III-4]는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 시행 전후 지수선물 거래량 및 변동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표 III-15〉~〈표 III-17〉의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전후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거래량은 증가하였으나 독일의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지수선물의 경우,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3·6·12개월간 거래량 평균이 각각 19.5%, 14.2%, 4.5% 증가하였다. 스페인 지수선물은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3·6·12개월간 거래량 평균이 각각 35.8%, 46.8%, 19.2% 증가하였다. 반면, 독일 지수선물은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3·6·12개월간 거래량 평균이 각각 6.9% 증가, 5.9% 감소,

2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변동성은 이탈리아 지수선물이 금융거래세 부과 이후 12개월간 약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거래량 및 변동성 추이



주: 그래프에는 거래량과 변동성의 자연로그값을 사용함  
수직선은 event day(2013.3.1., 2013.9.1.)

〈표 III-15〉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3개월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탈리아 FTSE MIB Futures										
TV	59	25051	13968	9377	85445	63	29933	10789	9884	73073
VOL	59	0.0001	0.0002	0.0000	0.0009	63	0.0001	0.0001	0.0000	0.0006
BAS	59	0.0084	0.0142	0.0000	0.0696	63	0.0012	0.0040	0.0003	0.0320
OI	59	16660	705	15400	17895	63	16149	799	14880	17510
스페인 IBEX35 Futures										
TV	59	13022	8053	4470	36797	63	17681	8885	4482	52098
VOL	59	0.0001	0.0002	0.0000	0.0009	63	0.0001	0.0001	0.0000	0.0010
BAS	59	0.0008	0.0005	0.0000	0.0022	63	0.0010	0.0006	0.0000	0.0027
OI	59	44826	13471	12535	58604	63	56216	15278	11261	72617
독일 DAX Futures										
TV	59	111537	34228	18453	211241	63	119193	33293	17688	208790
VOL	59	0.0001	0.0001	0.0000	0.0003	63	0.0001	0.0001	0.0000	0.0004
BAS	59	0.0001	0.0001	0.0000	0.0003	63	0.0001	0.0001	0.0000	0.0003
OI	59	144768	20069	67957	173392	63	157624	25854	47352	185429

주: TV는 거래량, VOL은 변동성, BAS는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 OI는 미결제 약정

〈표 III-16〉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6개월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탈리아 FTSE MIB Futures										
TV	124	24080	12821	9231	85445	127	27492	14238	9884	99412
VOL	124	0.0001	0.0001	0.0000	0.0009	127	0.0001	0.0001	0.0000	0.0006
BAS	124	0.0159	0.0177	0.0000	0.0726	127	0.0012	0.0029	0.0003	0.0320
OI	124	16114	763	15000	17895	127	16244	749	14880	17680
스페인 IBEX35 Futures										
TV	124	11785	7665	2025	36797	128	17304	8930	4482	52098
VOL	124	0.0001	0.0001	0.0000	0.0009	128	0.0001	0.0001	0.0000	0.0010
BAS	124	0.0010	0.0006	0.0000	0.0031	128	0.0009	0.0006	0.0000	0.0027
OI	124	41528	12124	8802	58604	128	56351	15073	10568	72711
독일 DAX Futures										
TV	124	116112	33432	18453	211241	128	109209	33363	7302	208790
VOL	124	0.0001	0.0001	0.0000	0.0003	128	0.0001	0.0001	0.0000	0.0004
BAS	124	0.0001	0.0001	0.0000	0.0004	128	0.0001	0.0001	0.0000	0.0004
OI	124	144929	21031	37253	173392	128	155378	25975	47352	185576

주: TV는 거래량, VOL은 변동성, BAS는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 OI는 미결제 약정

〈표 III-17〉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12개월 기초통계량

변수	이벤트 전					이벤트 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탈리아 FTSE MIB Futures										
TV	252	25096	13242	9231	96301	252	26226	14843	8167	105423
VOL	252	0.0002	0.0003	0.0000	0.0025	252	0.0001	0.0001	0.0000	0.0006
BAS	252	0.0253	0.0237	0.0000	0.1139	252	0.0009	0.0021	0.0002	0.0320
OI	252	15215	1357	12325	17895	252	17545	1555	14880	20545
스페인 IBEX35 Futures										
TV	253	15082	8779	2025	56522	253	17983	10281	2946	58894
VOL	253	0.0003	0.0003	0.0000	0.0026	253	0.0001	0.0001	0.0000	0.0010
BAS	253	0.0010	0.0006	0.0000	0.0033	253	0.0008	0.0005	0.0000	0.0036
OI	253	41721	11519	8802	58604	253	60450	17782	10070	85774
독일 DAX Futures										
TV	253	132839	41298	18453	262707	253	101270	32537	5790	208790
VOL	253	0.0001	0.0001	0.0000	0.0008	253	0.0001	0.0001	0.0000	0.0004
BAS	253	0.0001	0.0001	0.0000	0.0004	253	0.0002	0.0002	0.0000	0.0016
OI	253	154000	24718	37253	197434	253	147691	26113	40189	185576

주: TV는 거래량, VOL은 변동성, BAS는 매수매도호가 스프레드, OI는 미결제 약정

나.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금융거래세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Haferkorn and Zimmermann(2013)의 실증연구를 기초로 하여 DID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금융거래세 부과 국가인 이탈리아의 지수 선물 데이터(Treatment group)와 대조군(Control group)으로 스페인 IBEX35 futures와 독일의 DAX future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다.

$$\ln(TV_{it}) = \alpha_1 + \beta_{11} FTT_{it} + \gamma_1 X + \delta_i + \eta_t + \epsilon_{it} \quad \text{식 (3)}$$

$$\ln(vol)_{it} = \alpha_2 + \beta_{21} FTT_{it} + \gamma_2 Z + \psi_i + \omega_t + v_{it} \quad \text{식 (4)}$$

식 (3)의  $\ln(TV)_{it}$ 은 지수선물  $i$ 의  $t$ 일의 거래량이고,  $FTT_{it}$ 은 터미변수로 금융거래세 부과 이후 이탈리아 지수선물 FTSE MIB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다.  $X$ 는 통제변수들의 벡터로 변동성 변수, 전일 거래량, 유동성 변수, 미결제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alpha_i$ 는 지수선물  $i$ 의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은 고정효과를,  $\eta_t$ 은  $t$ 일에 모든 시장에 미치는 관측되지 않은 고정효과를 통제한다. 다음으로 식 (4)의  $\ln(vol)_{it}$ 은 지수선물의 가격 변동성으로 Parkinson(1980)이 제시한 high low estimator를 사용하였다.<sup>5)</sup>  $Z$ 는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거래량, 전일의 변동성, 유동성 변수를 포함하는 통제변수의 벡터이다.  $\psi_i, \omega_t$ 는 각각 지수선물  $i$  고정효과와 시간  $t$ 의 고정효과를 통제한다.

5) High low estimator =  $\frac{(\ln(H)_t - \ln(L)_t)^2}{4 \ln(2)}$ 이며,  $\ln(H)_t$ 은 일중 고가이고  $\ln(L)_t$ 은 일중 저가이다.

먼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가 지수선물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표 III-18>에 정리되어 있다. 분석 결과 모든 이벤트 윈도우에서 이탈리아 지수선물의 거래량 변화는 스페인, 독일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변동성은

3개월 이벤트 윈도우에서 스페인, 독일에 비해 약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벤트 윈도우를 6개월과 12개월로 확대해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 지수의 변동성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거래량·변동성 변화 실증분석 결과

	3개월		6개월 <sup>1)</sup>		12개월 <sup>1)</sup>	
	거래량	변동성	거래량	변동성	거래량	변동성
FTT	-0.0188 (0.0691)	0.258** (0.123)	-0.0766* (0.0463)	0.101 (0.0847)	-0.0472 (0.0360)	0.0821 (0.0656)
변동성 <sub>t</sub>	0.0701** (0.0355)		0.0593** (0.0247)		0.0770*** (0.0174)	
변동성 <sub>t-1</sub>		0.0848 (0.0633)		0.0796* (0.0431)		0.153*** (0.0310)
거래량 <sub>t</sub>		0.194* (0.110)		0.157* (0.0809)		0.171*** (0.0520)
거래량 <sub>t-1</sub>	0.189*** (0.0480)		0.223*** (0.0332)		0.367*** (0.0232)	
스프레드 <sub>t</sub>	0.0468 (0.0308)	-0.0890 (0.0547)	-0.00150 (0.0198)	-0.0717** (0.0362)	-0.0110 (0.0104)	0.0212 (0.0190)
정산가격 <sub>t</sub>	1.754** (0.864)	-0.196 (1.542)	1.080* (0.620)	-0.732 (1.146)	0.268 (0.371)	-0.625 (0.669)
미결제약정 <sub>t-1</sub>	-0.116 (0.0841)		-0.0350 (0.0579)		0.180*** (0.0389)	
상수항	-5.223 (7.936)	-9.679 (14.13)	-0.690 (5.686)	-3.969 (10.48)	2.384 (3.339)	-4.504 (6.101)
관측치	382	382	733	733	1,455	1,455
R <sup>2</sup>	0.823	0.717	0.849	0.735	0.834	0.738
국가 수	3	3	3	3	3	3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FTT은 금융거래세 부과 이후 이탈리아 지수선물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3. 거래량, 변동성, 스프레드, 정산가격, 미결제약정은 모두 자연로그값을 사용  
 4. 시간 및 국가의 고정효과는 생략  
 1) 해당 기간에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이벤트가 포함됨

다음으로 <표 Ⅲ-19>는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가 지수선물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주식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지수선물 거래량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변동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익거래 감소로 인한 선물지수 수요의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으로 인한 선물지수의 수요 증가분을 상쇄하게 되어

거래량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탈리아 지수선물의 변동성은 주식에 대한 거래세 부과 이후 독일이나 스페인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이후 3개월 동안 이탈리아 지수선물의 변동성이 스페인과 독일의 지수선물 변동성보다 약 3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개월 동안 23.6%, 12개월 동안 23.1% 감소하였다.

<표 Ⅲ-19>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전후 거래량·변동성 변화 실증분석 결과

	3개월		6개월 <sup>1)</sup>		12개월 <sup>1)</sup>	
	거래량	변동성	거래량	변동성	거래량	변동성
FTT	0.0480 (0.0662)	-0.454*** (0.152)	-0.0767 (0.0607)	-0.269** (0.109)	-0.0742 (0.0471)	-0.263*** (0.0878)
변동성 <sub>t</sub>	0.125*** (0.0278)		0.101*** (0.0243)		0.0895*** (0.0172)	
변동성 <sub>t-1</sub>		-0.00134 (0.0593)		0.0389 (0.0429)		0.0932*** (0.0312)
거래량 <sub>t</sub>		0.417*** (0.132)		0.250*** (0.0766)		0.211*** (0.0530)
거래량 <sub>t-1</sub>	0.409*** (0.0419)		0.352*** (0.0318)		0.349*** (0.0214)	
스프레드 <sub>t</sub>	0.0220 (0.0158)	0.00609 (0.0378)	0.00946 (0.0139)	-0.0157 (0.0261)	-0.0175* (0.0105)	-0.0202 (0.0195)
정산가격 <sub>t</sub>	-1.248* (0.647)	-0.108 (1.552)	-2.024*** (0.558)	1.061 (1.031)	-0.991*** (0.348)	-1.296** (0.655)
미결제약정 <sub>t-1</sub>	0.184** (0.0744)		0.162*** (0.0614)		0.195*** (0.0364)	
상수항	17.10*** (6.084)	-13.20 (14.49)	24.05*** (5.396)	-21.93** (9.657)	14.48*** (3.253)	1.427 (6.109)
관측치	345	345	723	723	1,447	1,447
R <sup>2</sup>	0.893	0.758	0.840	0.742	0.836	0.805
국가 수	3	3	3	3	3	3

주: 1.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2. FTT는 금융거래세 부과 이후 이탈리아 지수선물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3. 거래량, 변동성, 스프레드, 정산가격, 미결제약정은 모두 자연로그값을 사용  
 4. 시간 및 국가의 고정효과는 생략  
 1) 해당 기간에 주식시장에 대한 거래세 시행 이벤트가 포함됨

#### I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이탈리아의 금융거래세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탈리아 금융거래세가 주식과 지수선물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탈리아는 시총이 500만 유로 이상인 주식에만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였고, 6개월 후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였다는 점을 이용하여 DID방법론을 사용하여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주식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주식과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지수선물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는 주식의 거래량을 감소시키고, 변동성을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거래세 부과 이후 3개월과 6개월 동안 금융거래세 과세 대상 주식의 거래량은 과세 면제 주식에 비해 거래량이 약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은 약 10%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세대상 주식의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은 면제 대상 주식으로 거래가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과 이후 과세 대상 주식의 거래량이 약 13~15% 감소하였고, 반면 변동성은 6~18%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거래세가 선현물 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한 차이거래를 감소시킴으로써 과세대상 주식의 거래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지수선물에 대한 금융거래세는 지수선물의 거래량과 변동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수선물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담이 지수선물의 거래량

“  
**특정 시가총액 이상인 주식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은 과세 면제 대상의  
 주식으로 거래가 이전된다는 것이다.**  
 ”

을 변화시킬 만큼 크지 않았거나, 지수선물에 대한 금융거래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이 지수선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실제 거래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주식에 대한 금융거래세는 부과 이후 3개월 동안은 지수선물의 거래량은 증가하였으나, 이후 6개월과 12개월 동안에는 거래량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수선물의 변동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이탈리아의 금융거래세가 주식과 지수선물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금융거래세의 세율 또는 주식시장과 지수선물시장의 유동성 정도에 따라 그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특정 시가총액 이상인 주식에 대해서만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은 과세 면제 대상의 주식으로 거래가 이전된다는 것이다. 이는 Schwert and Seguin(1993)이 언급한 것처럼, 모든 자산이 거래세에 동일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와 자산 구조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Amihud, Y., & Mendelson, H.(2011.11.11.), “Taxing Stock Trades Will Hurt Main Street” (With H. Mendelson), *The Wall Street Journal*.
- Baltagi, B. H., Li, D., & Li, Q.(2006), “Transaction tax and stock market behavior: evidence from an emerging market,” *Empirical Economics*, 31(2), 393–408.
- Capelle-Blancard, G., & Havrylchyk, O.(2014), “The Impact of the French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Market Liquidity and Volatility,” Available at SSRN 2378347.
- Coelho, M.(2014), “Dodging Robin Hood: responses to France and Italy’s financial transaction taxes,” Available at SSRN 2389166.
- Ehrenstein, G., Westerhoff, F., & Stauffer, D.(2005), “Tobin tax and market depth,” *Quantitative Finance*, 5(2), pp. 213–218.
- European Commission Taxation and Customs Union, “Did the new French tax on financial transactions influence trading volumes, price levels and/or volatility on the taxed market segment?—A trend analysis—.”
- Haberer, M.(2004), “Might a securities transactions tax mitigate excess volatility? Some evidence from the literature,” Some Evidence from the Literature (April 2004). University of Konstanz Discussion Paper, (04/06).
- Habermeier, M. K. F., & Kirilenko, M. A.(2001),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and financial markets,” (No. 1–5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Haferkorn, M., & Zimmermann, K.(2013),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market quality—the case of france.”
- Hu, S. Y.(1998), “The effects of the stock transaction tax on the stock market—Experiences from Asian markets,” *Pacific-Basin Finance Journal*, 6(3), pp. 347–364.
- Iori, G., Daniels, M. G., Farmer, J. D., Gillemot, L., Krishnamurthy, S., & Smith, E.(2003), “An analysis of price impact function in order-driven markets,” *Physica A: Statistical Mechanics and its Applications*, 324(1), pp. 146–151.
- Keynes, J. M.(2006),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Atlantic Publishers & Dist.
- Kupiec, P. H.(1996), “Noise traders, excess volatility, and a securities transactions tax,”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10(2), pp. 115–129.
- Liu, S.(2007),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market efficiency: evidence from the Japanese experience,”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32(3), pp. 161–176.
- Lo, A. W., Mamaysky, H., & Wang, J.(2004),

- “Asset Prices and Trading Volume under Fixed Transactions Cos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5).
- Meyer, S., Wagener, M., & Weinhardt, C.(2013), “Politically motivated taxes in financial markets: The case of the french financial transaction tax,”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47(2), pp. 177–202.
- Phylaktis, K., & Aristidou, A.(2007), “Security transaction taxes and financial volatility: Athens stock exchange,” *Applied Financial Economics*, 17(18), pp. 1455–1467.
- Pollin, R., Baker, D., & Schaberg, M.(2003),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for US financial markets,” *Eastern Economic Journal*, 29(4), pp. 527–558.
- Pomeranets, A., & G Weaver, D.(2011), “Security transaction taxes and market quality” (No. 2011, 26). Bank of Canada Working Paper.
- PWC (2014), “Financial Transaction Tax–Italy.”
- Roll, R.(1989), “Price volatility, international market link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gulatory policies,”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3(2–3), pp. 211–246.
- Rühl, T. R., & Stein, M.(2014), “The impact of financial transaction taxes: Evidence from Italy,” *Economics Bulletin*, 34(1), pp. 25–33.
- Saporta, V., & Kan, K.(1997), *The Effects of Stamp Duty on the Level and Volatility of Equity Prices*.
- Schwert, G. W., & Seguin, P. J.(1993), “Securities transaction taxes: an overview of costs, benefits and unresolved questions,” *Financial Analysts Journal*, 49(5), pp. 27–35.
- Stiglitz, J. E.(1989), “Using tax policy to curb speculative short-term trading,” *In Regulatory Reform of Stock and Futures Markets* (pp. 3–17). Springer Netherlands.
- Summers, L. H., & Summers, V. P.(1989), “When financial markets work too well: a cautious case for a securities transactions tax,” *Journal of financial services research*, 3(2–3), pp. 261–286.
- Tobin, J.(1978), “A proposal for international monetary reform,” *Eastern economic journal*, 4(3/4), pp. 153–159.
- Umlauf, S. R.(1993), “Transaction taxes and the behavior of the Swedish stock market,”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3(2), pp. 227–240.
- IBFD, [www.ibfd.org](http://www.ibfd.org)

# 지방 SOC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에 대한 소고: 상하수도 사업을 중심으로<sup>1)</sup>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yuna@kipf.re.kr)

## I. 서론

지난 몇 년 동안 노후 상수관 교체비용 부담에 대한 국고투입 여부는 중요한 예산현안 중 하나였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오랜 논의 끝에 2016년 노후 지방상수도 시설사업비용이 예산에 반영되었다.<sup>2)</sup>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노후된 상수관 때문에 생기는 지반 침하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이며, 시급한 SOC 확충을 위한 시범 투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서, 지방재정의 책임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의에서 재정부담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상하수도 사업은 사용자 요금으로 재원부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민간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재정 효율화 방안이 국제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재정의 투입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정책 환경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현 재정상황에서 국고 투입은 곧 국가채무의 증가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업비 부담의 지속가능성이 더 걱정스럽다. 매년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상수도 관망교체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는 질 좋은 상수도의 지속가능한 관리비용 부담체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상·하수도 재정수요는 해당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분명 선호가 차별화된 수요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아닌 중앙정부와 국회에의 요구로 나타나는 현상 또한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아 보인다. 비용부담구조, 정치적·재정적 부담주체, 합리적 투자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단 국고투입을 먼저 요구하는

1) 본 원고는 OECD와 본원의 공동연구사업인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The case of sub-national PPP"의 일부 내용을 재작성한 것임  
2) 「2016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국회 확정)」, 2015.12, 환경부, p. 14.

것은 정치적·재정적 책임성과 거리가 먼 의사결정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상하수도를 비롯하여 도로, 학교시설 등과 같은 지방공공재 공급수단으로 민간투자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막대한 고정비용이 투입되고, 사업의 효율성에 따라 가변비용 구성이 매우 달라지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론적으로 민간자본 투입을 통하여 사업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SOC의 민간투자는 장기적인 자본투입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사실상 민간자본의 참여유도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sup>3)</sup> 게다가 우리나라의 정부 간 재정관계 특성상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민간자본 유치과정에서의 행정부담과 재정위험을 떠안아야 할 유인이 거의 없다. 2008년 경제위기 시에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하여 경제회복을 이끌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빅브라더인 중앙의 재정지원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SOC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국비투입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2015년 5월 정부는 다양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규모가 큰 사업들의 투자유인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소규모 자치단체 사업들의 유인체계는 다루지 못하였다. 이론적으로도 민간투자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논거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리하여 본 분석에서는 지방정부 관점에서의 민간투자 논거의 타당성과 상하수도 사업의 민간투자 확대 가능성(WSS PPP in Sub-

“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국비투입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national context) 여부와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SOC 투자 필요성과 상하수도 일반재정부담의 문제점

### 1. 우리나라 SOC 투자 특징

민간투자 논의에 앞서 우리나라 SOC 투자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5년 이후 SOC 예산 비중은 10.5%에서 6.1%로 감소하고 있다. 불안한 거시경제 상황과 저성장 기조에서 세입 불안정이 지속되는 한 재분배 목적의 복지재정수요가 우선될 것인바, 향후에도 지방 SOC 확충을 위한 중앙재정 역할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에서는 복지재정수요 증가와 주요 선진국들의 SOC투자 비중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지방 SOC 수준은 이미 충분하므로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sup>4)</sup> <표 1>은 주요 선진국이 1인당 GDP가 22,000달러가 됐을 때의 세출 대비 분야별 지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분야별 지출 중 ‘경제’

3) 영국과 프랑스 사례에서 비교적 사업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높지 않은 상하수도 분야는 민간투자 유인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and the KIPF(2015), p. 16).

4) 행정자치부(2007.11), p.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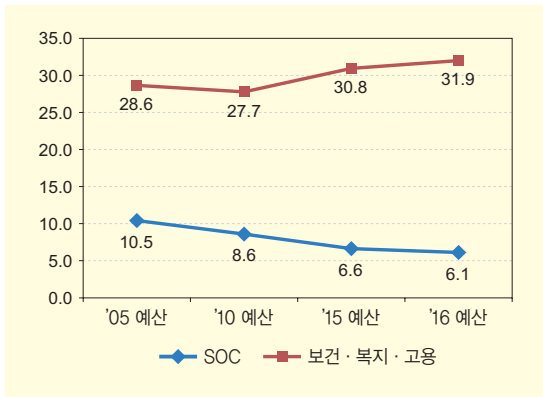
분야가 SOC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세출 대비 약 4분의 1인 24.1%로 가장 높은 경제분야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교 대상 국가 중 그다음으로 높은 일본도 14.3%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출하는 세출을 기준으로 한 재정지출만을 기준으로 본 경제분야 투자규모이다. 선진국들의 SOC 민간투자 규모를 함께 계산할 경우 총량적인 기준에서의 SOC 투자강도는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선진국들의 SOC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제기구 분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들과 달리 불균형적인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를 볼 때, 여전히 지역균형 수요가 높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SOC 투자는 인구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만으로 SOC 투자수준을 가늠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sup>5)</sup> 본 분석은 지역발전에 대한 정치적 수요와 인구분포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지방 SOC 투자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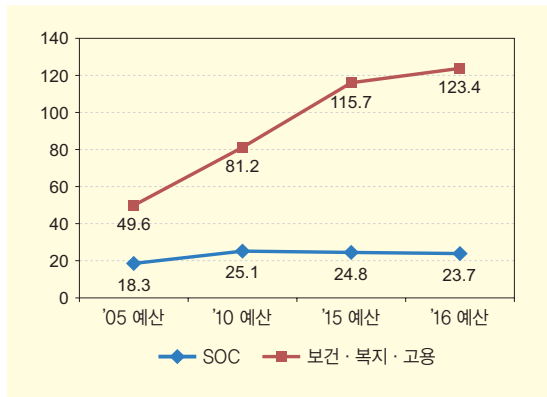
[그림 1] 총지출 대비 분야별 예산비중

(단위: %)



[그림 2] 분야별 예산규모 변화

(단위: 조원)



<표 1> 1인당 GDP 22,000달러 시점의 세출 대비 분야별 세출비중

(단위: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평균	한국
일반행정	17.8	13.3	15.1	13.6	18.7	14.4	18.1	26.4	17.2	12.1
경제	9.7	5.8	6.1	8.8	14.3	9.2	7.5	9.1	8.8	24.1
보건	18.2	13.0	12.4	12.9	15.0	13.3	10.1	10.5	13.2	11.4
교육	15.9	11.0	12.1	9.0	11.1	11.2	10.8	9.4	11.3	17.1
사회보장	19.8	40.0	41.3	44.7	26.4	33.3	40.0	33.7	34.9	10.4

출처: 『OECD 국가비교를 통한 정부규모 진단 결과』,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 2007.11, p. 17.

5) OECD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SOC 수요는 경제성장, 기술발전, 기후변화, 도시화, 혼잡도 증가 등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OECD 2008, p. 21).

6) '지역구 생색내기...의원을 쫓지예산만 47개', 경향신문 2015.12.3. '또 도진 쫓지예산...53건 763억 찢러넣었다', 한국일보 2015.12.5. 등

## 2. 국가재정 투입 규모와 요금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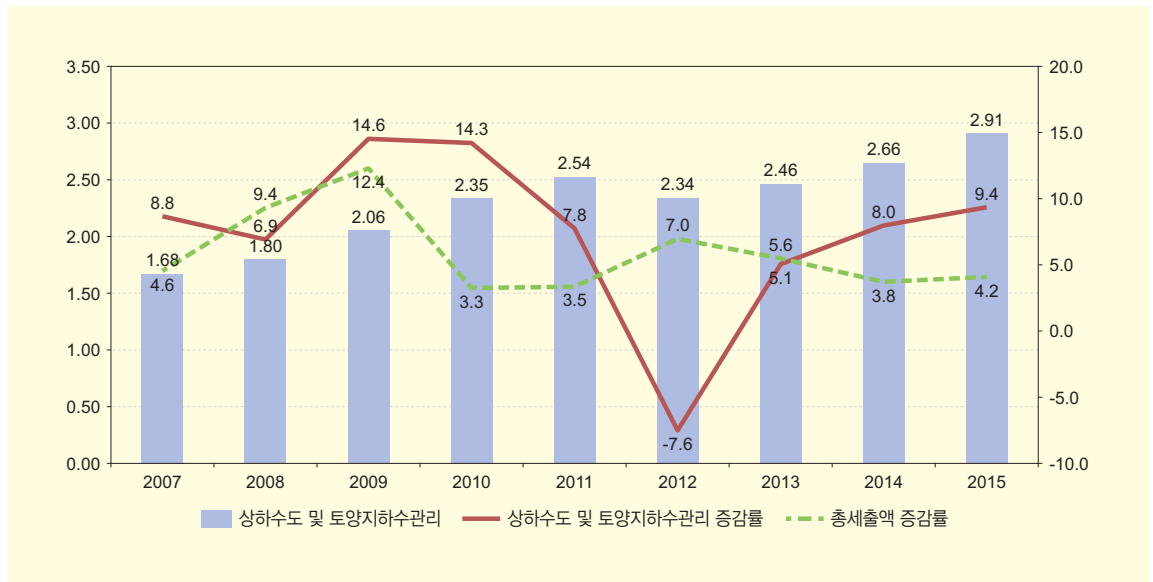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재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정부(중앙+지방) 재정투입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국고보조를 통한 상하수도 재원마련은 자치단체 요금인상 유인을 저하시켜 지속적인 요금 현실화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7)</sup> 2007년 이후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관리 사업'의 국고보조 증가율은 2012년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 총세출 증가율(본예산 기준, 기금제외 일반회계 특별회계, 2015년 322,79조원)을 상회하는 추세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SOC 예산 감소와 대치되는 부분으로, 물 관련 국고보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사업 기준으로

“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재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정부(중앙+지방)  
재정투입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국고보조를 통한 상하수도 재원마련은  
자치단체 요금인상 유인을 저하시켜  
지속적인 요금현실화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하수관거 사업의 국고보조는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4,100억원 규모가 2016년 예산기준 약 1.5조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하수도 요금의 요금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sup>8)</sup>

[그림 3] 상하수도 관련 국고보조 규모와 증가율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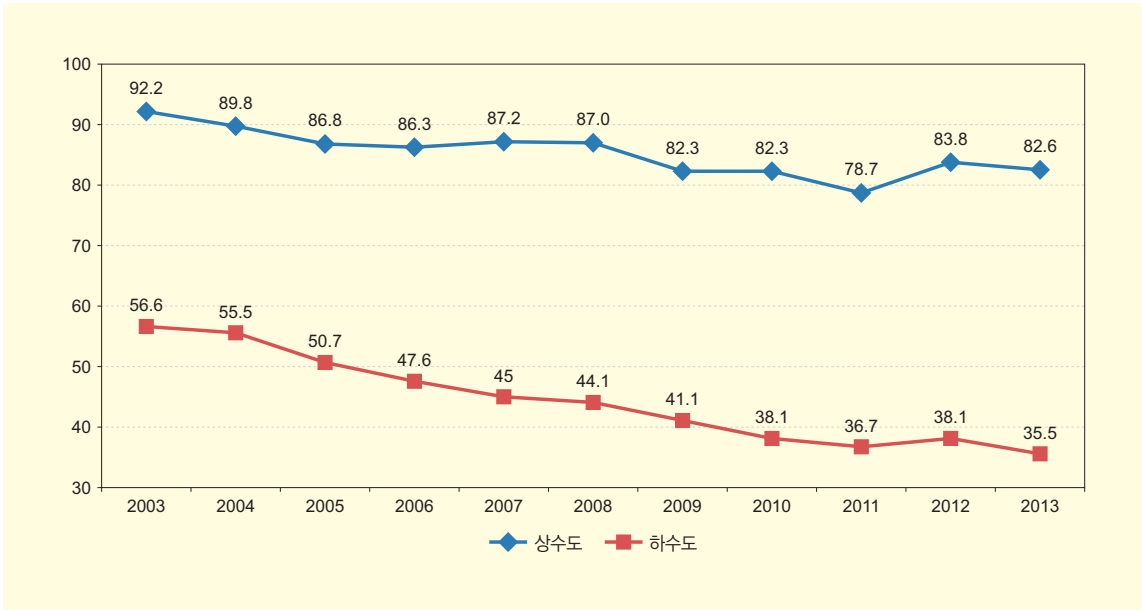
출처: 환경부, 「국회확정예산」, 각 연도; 「예산안개요(대한민국 정부)」, 본예산 기준, 각 연도

7) 김현아(2015)

8) 지방상수도는 국고투입 부분이 지특회계를 통한 대체식수원 정도에 그치고 있으므로 요금 현실화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그림 4]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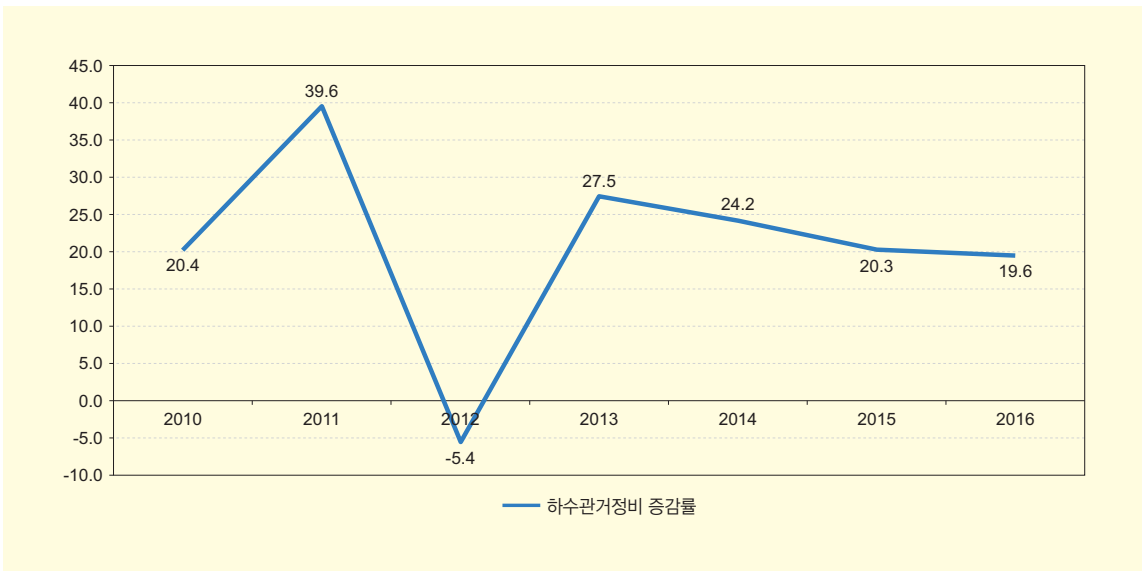
(단위: %)



출처: 환경부, 「상수도 통계」, 「하수도 통계」, 각 연도

[그림 5] 하수관거 사업비(단위사업) 증감률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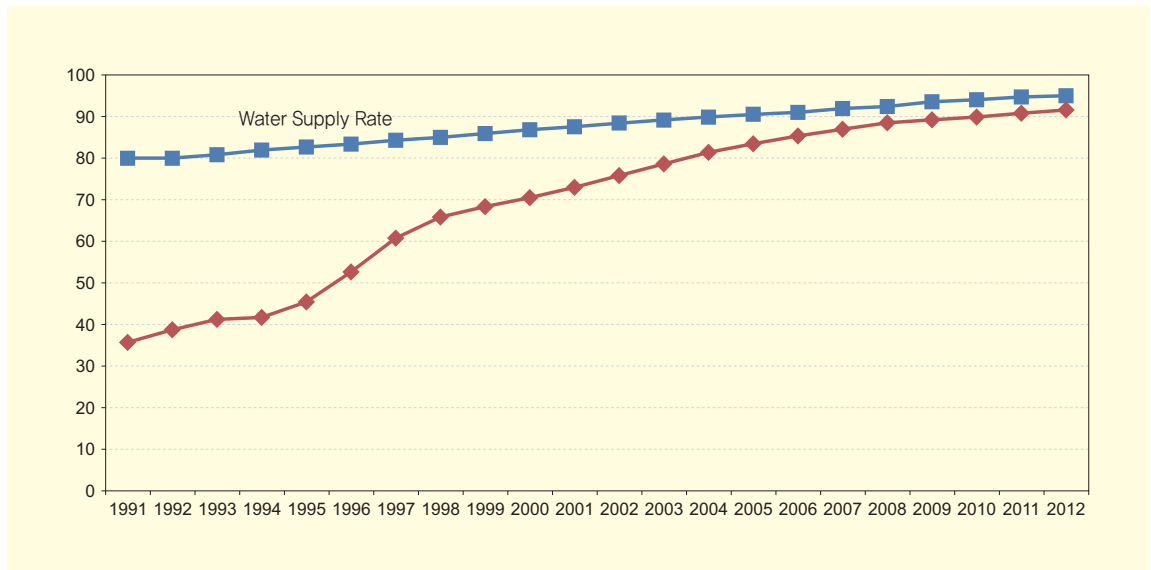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이후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가 상승요인은 증가하는 반면 요금인상이 제한됨으로써 요금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sup>9)</sup> 2008년 이후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등에서 상하수도 요금 동결조치와 같은 국가시책이 2013년까지 유지되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sup>10)</sup> 즉, 제도적으로 요금인상에 불리한 정책이 최근까지 이어져 왔고, 2014년 이후 상하수도 요금인상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고투입에 의존하는 사업구조와 중앙정부의 컨트롤하에 있는 요금구조는 향후 더 많은 국가재정 투입 요구와 재정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 3. 높은 재정부담과 낮은 민간투자 유인

[그림 6]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 하수도 보급률은 30%대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하수도 역사는 1970년대 시작하여 상수도에 비하여 매우 짧고, 아직까지도 신규 하수관거 설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신규 하수관거 투자를 위한 국고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금인상 유인도 낮고, 민간투자 유인 또한 높지 않았다. 하수도 분야에서 이른 바 '임대형민자사업(BTL: Build to lease)'이 시작된 시기는 2005년이고, 임대료가 국비에서 지원되기 시작한 것은 2009년에 이르러서이다.<sup>11)</sup> 그리하여 미미한 규모나마 민간투자가 가능했던 것

[그림 6] 상하수도 보급률

(단위: %)



출처: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각 연도

9) 요금 현실화율(적정화보수율)=[평균요금 : 총괄원가] 방식으로 계산한다(행정자치부, 『2013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p. 29)

10) 『서민생활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2008.6.12. 11개 관계부처 합동발표

11) 환경부, 『2009년 환경부 예산확정』(p. 13),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임대료 지급(신규)', 순증 6,886(백만원)

“  
**상수도 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반 재정 부담과 지방채 사용이 보다  
 활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다.**  
 ”

은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 하수도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기술력 동원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상수도 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반 재정 부담과 지방채 사용이 보다 활용 가능성이 높으므로 민간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았다.

BTL을 포함한 하수도 분야 총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1972년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처리장 건설

이후 2012년까지의 총사업비 기준 공공하수처리 시설 투자규모는 약 22조원 내외이다. 이 중 국고 부담은 약 41%, 지방비 부담이 약 49%, 원인가부담금은 4.9%, 민간투자가 약 4.7% 내외의 비중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하수도 사업은 상수도에 비하여 민간투자가 그나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 규모는 약 1조원 안팎으로 추정되었다. 더불어 하수관거 관련 BTL 임대료 지급 규모는 2009년 68.8억원에서 증가하여 2016년 기준 3,562억원에 달한다. 민간에 지불되는 임대료 지급 규모가 전체 하수관거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09년 1% 내외에서 2014년 33%, 2015년 28%, 2016년에는 약 23% 수준으로 나타난다. 최근 들어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임대료 지급 규모가 감소하면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하수관거정비사업과 BTL 임대료 지급 규모

(단위: 백만원,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하수관거정비	414,491	499,033	696,666	658,999	840,367	1,043,756	1,255,248	1,501,146
증감률		20.4	39.6	-5.4	27.5	24.2	20.3	19.6
BTL사업 임대료지급	6,886	50,163	130,559	205,076	245,218	346,552	362,070	356,239
증감률		628	160	57	20	41	4	-2

출처: 환경부, 「예산안」(국회확정안)

〈표 3〉 1970년대 이후 2012년까지 총사업비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투자현황

(단위: 십억원, %)

	계	국고		지방비		원인가부담금		민간투자	
		사업비	비중	사업비	비중	사업비	비중	사업비	비중
특광역시	4,739	915	19.3	3,737	78.9	3	0.1	84	1.8
시	12,074	5,598	46.4	4,991	41.3	902	7.5	583	4.8
군	4,253	2,574	60.5	1,496	35.2	117	2.7	66	1.6
구	1,225	110	9.0	795	64.9	-	0.0	320	26.1
합계	22,291	9,197	41.3	11,020	49.4	1,022	4.6	1,053	4.7

출처: 환경부, 「201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분석」

BTL 사업은 지방채의 활용을 대신하여 민간이 투자하는 것이지만 계약기간 동안 투자액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므로 실제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추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궁극적으로 BTL은 원금과 이자로 상환하는 조건을 민간과 협의하는 정도가 다를 뿐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은 지방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대부분의 규정이 정해지므로 자치단체가 한도액 내에서 채무를 통한 공공서비스 건설을 유도한다는 것 또한 지방채와 큰 차이가 없다. 회계적으로도 BTL 지급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어서 지방공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지방정부 채무수준이 높지 않고, 정부회계 내 지방공기업 부분에서 그 내용이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수도 부분의 BTL 확대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은 차선책으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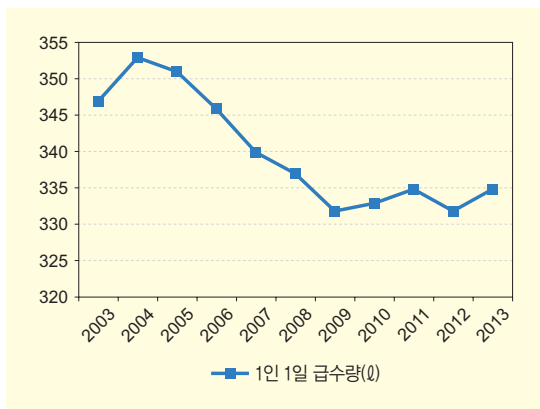
### Ⅲ. 상하수도 민간투자 검토 배경

#### 1. 물 공급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간재원 필요성 제기

높은 재정부담을 통한 상하수도 사업 유지는 어찌 보면 국민 전체로 볼 때 이익일 수 있다. 국민들은 낮은 요금을 부담하면서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분야에서는 낮은 원가부담으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이 높게 유지되기만 한다면 상하수도의 일반재정 부담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의 보조금으로 역할을 하며 내수진작과 수출향상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1/n 원가부담 방식, 즉 사용자와 부담자가 직접 연계되는 것이 아닌 국민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물수요관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의 환경부 통계에서와 같이 현재 물 생산량(급수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물 소비량(사용량)은 증가하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은 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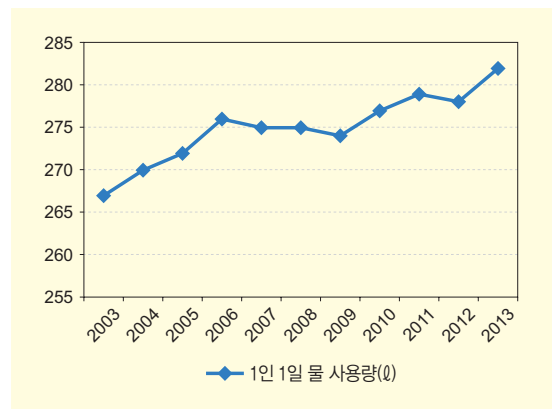
[그림 7] 우리나라 1인 1일 급수량

(단위: 리터)



[그림 8] 우리나라 1인 1일 물 사용량

(단위: 리터)



“  
**지방채는 그중 가장 현실가능한  
 대안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 직접적인 채무증가로  
 사업 효율성 확보 유인이 적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다.**  
 ”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저성장시대에 과거와 같은 우리나라 물 관리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요금부담 확대와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한 효과적인 자원관리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2. 노후 상수관 재정수요 규모 및 재정부담

2015년 환경부는 노후 상수관 관련 필요 시설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필요사업비와 실제 재정수요는 추가 검토를 통하여 확정해야 하겠지만, 교체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막대한 재정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참고로 Ashley and Cashman(2006)의 추정에 따른 선진국 및 BRICS 국가들의 2015년 기준 노후 상하수관 교체 비용 규모를 포함한 전체 재정규모는 GDP 대비 0.35%에서 1.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전체 재정규모는 GDP 대비 1% 수준 내외에 해당한다.

문제는 향후 상수도 분야의 노후 상수관 비용 부담과 민간투자의 연계에 대한 결정이다. 상수도의 경우, 하수도에 비하여 요금인상이 쉽지 않고,

재정수요 파악도 가늠하기 어려워 정부의 투자비 규모와 배분의 기초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상수도 민간투자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한 방식이지만 현재의 지역 간 요금격차가 큰 점 등을 볼 때 정치적 수용성 면에서 인상 폭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효과적으로 볼 때, 국고투입이 대안일 수 있으나 사용자 부담원칙에 타당하지 않아서 수요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과 투입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부담 등이 한계이다. 지방채는 그중 가장 현실가능한 대안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 직접적인 채무증가로 사업 효율성 확보 유인이 적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상수도 분야의 민간자본 투입 대안은 어디까지가 가능하며,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IV.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활용근거 및 사례

### 1. 민간투자 효율성 확보 논의

기존 문헌에서는 PPP(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활용이 단순히 정부가 재원조달 수단으로만 사용하거나 채무를 떠넘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겨지는 것은 PPP 본래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원이 부족한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고, 다음

12) "... The global capital costs of maintaining and upgrading WSS infrastructure in OECD countries plus BRICS has been estimated at between 0.35% to 1.2% of their GDP."(OECD, 2011, p. 15)

정권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례처럼 회계상 책임을 회피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PPP가 매력적인 수단일 수 있으나 이는 사실 '재정 위험'을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13)</sup>

PPP의 이론적 근거는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을 통한 국가의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4)</sup> 그리고 민간의 자본이 투입됨으로써 공공서비스 재원조달의 의미를 넘어서 이른바, 'Value for money(VFM)'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의 PPP에 대한 접근은 단순히 공공서비스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한계에서 벗어나, 민간의 효율과 창의를 통해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다.<sup>15)</sup> 더불어 실제 운용에 있어서 재정사업의 건설 이후 소홀한 유지보수와 달리 장기계약을 통한 유지관리 강화, 새로운 기술 및 전문화된 인적자원 활용, 적격성 확보를 통한 재정절감 등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극복을 PPP의 주된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sup>16)</sup> Yescombe(2013)는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NPM (New Public Management) 이후 '분권'에 대한 요구 확대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요구 증대로 이어졌고, 그 주요 수단으로 PPP가 급격히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의 효율성 확보는 이른바, 시장원리하에서의 경쟁구도 확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상하수도를 비롯한 관망사업의 경우 반복구매 혹은 경쟁구매가 원

“  
민간자본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만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

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른바 '민간의 효율성 확보'를 통한 원가절감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처럼 소규모 투자일 경우, 수익성 또한 높지 않아 민간기업이 투자할 유인은 더욱 낮다.<sup>17)</sup> 상하수도 분야에서의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효율성 확보 근거는 다국적 물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정도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간자본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재정위험만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 2. 국제기구에서의 상하수도 민간투자 분석 내용과 시사점

민간투자 혹은 민관협력사업의 발달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13년 기준 도로, 철도, 상수도 분야 지역별 PPP를 추정한 분석결과에서는 전체 건수의 45%를 유럽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투

13) OECD and the KIPF(2015), p. 15.

14) "...PPPs induce the developer to internalize cost reductions at the operation stage that are brought about the investment..."(Maskin and Tirole(2008), p. 413)

15) "The advocates of service contracts between a public authority and a private partner to build and operate infrastructure for public service provision have been guided by the rationale that PPPs lead to greater productive efficiency as the bundling of the different phases of a project induces the private firm to internalize at the building stage possible externalities on the operating phase, in order to minimize total costs"(Athias et al.(2014), OECD(2008a), (OECD 2014, p. 18), Maskin and Tirole(2008) 등

16) 홍성필, KDI PIMAC 발표자료, 2014(pp.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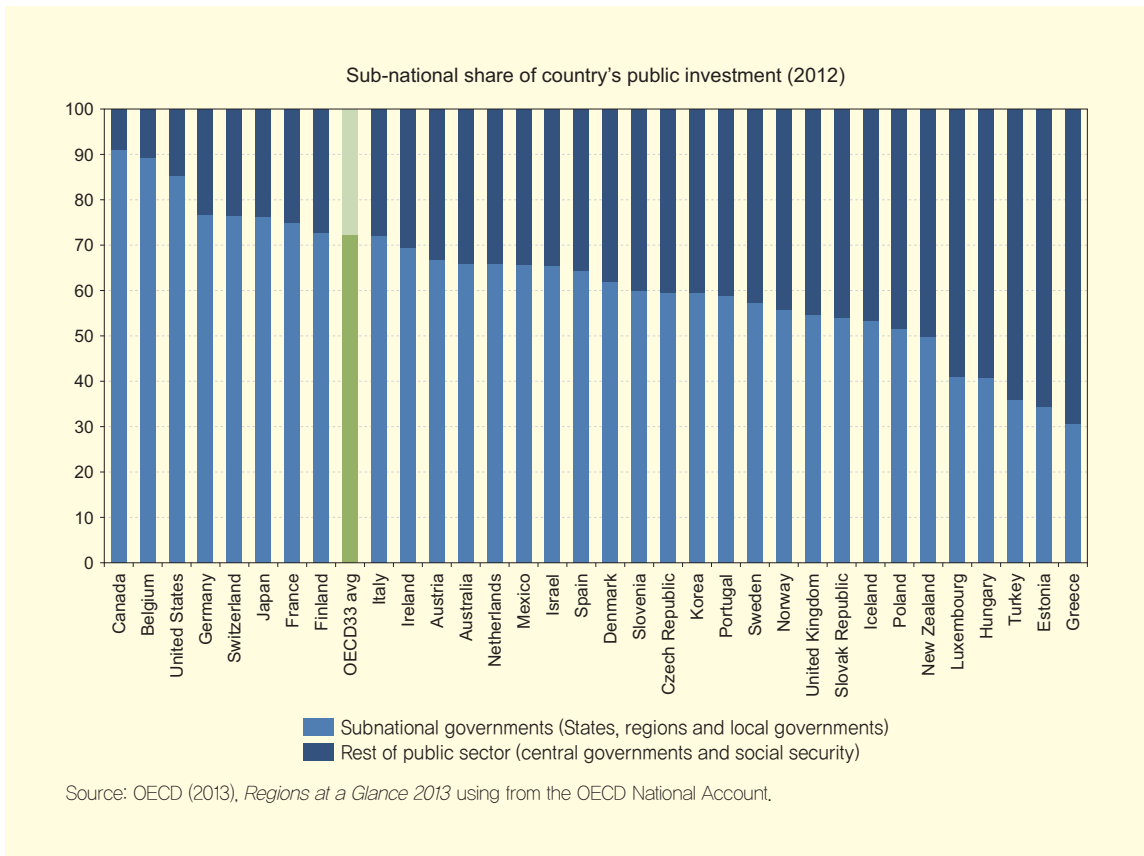
17) OECD and the KIPF(2015), p. 16.

자규모 면에서도 유럽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18)</sup> 최근의 추이를 살펴보면, 나라마다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감소하다가 회복하였으며, 2011년 이후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시장의 PPP 투자규모는 다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9)</sup> 우리나라 역시 2008년 이후 민간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는 추세인데,<sup>20)</sup> 이는 2009년 최소수입운영보장(MRG) 제도가 폐지되는 제도적인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

[그림 9] OECD 국가들의 공공투자부문 지방정부 비중

(단위: %)



출처: OECD(2014) p. 4 재인용

18) Public Works Financing (2013), "World P3 Market by Sector/Country(10/13)", OECD and the KIPF(2015), p. 8 재인용, 부록 참고  
 19) OECD와 본원의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의 국가전체규모 PPP 규모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록 참고).  
 20)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2015.4)

〈표 4〉 추진 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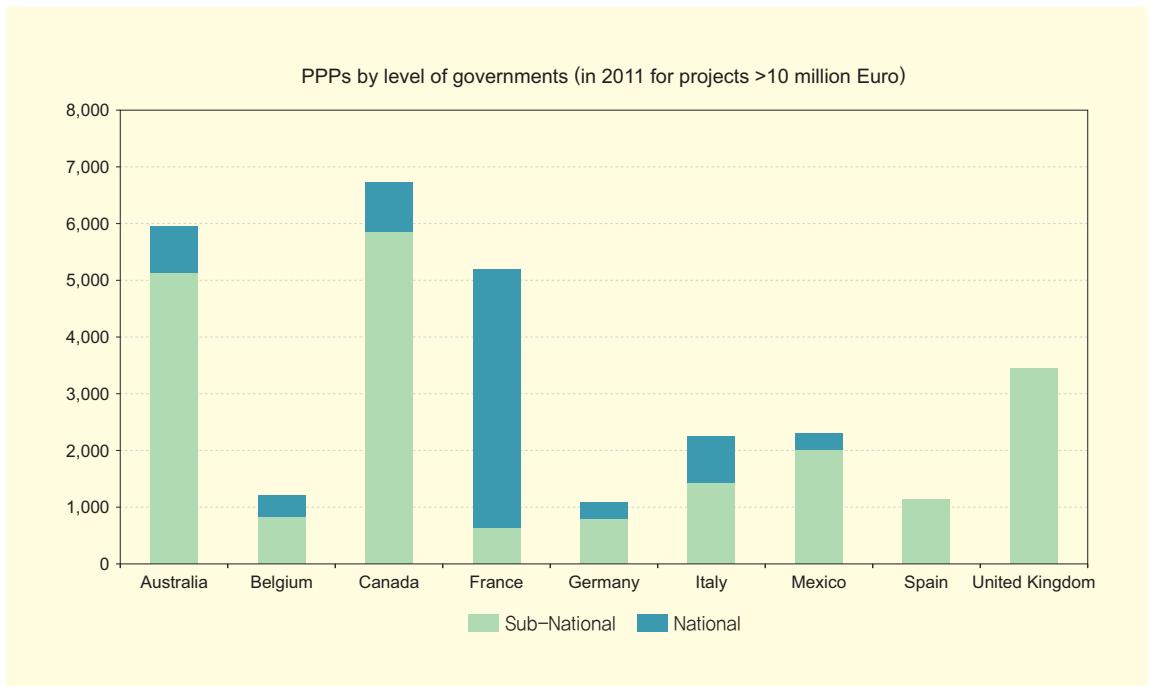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전체	국가	국가보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광역	기초
사업수	633	165	161	307	203
비중	(100)	(26.07)	(25.43)	(48.5)	(32.07)
총사업비	739,324	437,129	177,561	124,635	79,122
총투자비	933,213	565,589	227,100	140,524	88,534
비중	(100)	(60.61)	(24.34)	(15.06)	(9.49)
평균투자비	1,474	3,428	1,411	458	436

출처: KDI 공공투자센터, 「2012년말 기준, 2013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5, p. 80.

[그림 10] 중앙과 지방정부의 PPP 투자비 비중

(단위: 백만유로)



출처: Infrastructure Journal and Athias & al (2015), OECD and the KIPF(2015), p. 10 재인용

### 3. 주요국의 상하수도 민간투자 사례와 유지가능성

프랑스와 독일의 민간투자 사례에서는 민간투자 이후 유수율 개선, 사업의 효과성 제고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강한 중앙정부 규제를 통하여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대처 정부 당시 이념적으로 접근하여 시도한 민영화 이후 요금인상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서비스는 개선되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크게 나타나 이후, 사업자에 대한 강한 규제와 서비스 안정화 조치를 이루는 과정에 있다.<sup>21)</sup> 이에 대해 OECD는 상하수도 민간투자 시, 새로 투입되는 자본시설은 업그레이드하면서도 요금인상폭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sup>22)</sup>

그렇다면 이상에서의 민간협력의 장점이 상하수도 시설확충이 시급한 현실에서 유지가능할 수 있겠는가? 민간은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정부 분야 사업에 자본을 투입해야 할 유인이 없다.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상하수도 요금 개선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시설개선만은 일정 부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감내할 민간사업자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국가들의 경우 관망투자의 시급함과 시설부문 현대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재정투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일단 민간투자를 끌어들이고 난 후, 정부의 지불보증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민간자본 투입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속성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민간투자 부문의 일정 부분을 국가책임으로 부담하게 되는, 즉 국가채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OECD는 상하수도 민간투자 시,  
새로 투입되는 자본시설은  
업그레이드하면서도  
요금인상폭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

### 4. 상하수도 민간투자와 국가채무수준

2005년 기준의 상하수도 민간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중 프랑스와 영국이 80% 이상으로 예외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40%대 정도이고, 그 외의 국가들은 민간투자 비중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의 민간투자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수도 민간투자 수준과 국가채무 및 지방세입 분권과의 단순관계를 통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sup>23)</sup> 상하수도 민간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순채무수준이 비교적 높은 나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21) OECD(2008), pp. 281~282.

22) "Private company should be required to demonstrate that new water supply projects are less expensive than projects to improve water conservation and water-use efficiency before they are permitted to invest and raise water rate to repay the investment."(OECD 2007, p. 327)

23) General government gross(net) debt(Percent of GDP):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Total area(sq km): CIA World Fact Book, GDP per capita(US dollar): OECD General statistics, country statistical profile, Loc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total general government tax revenue: OECD Fiscal Decentralization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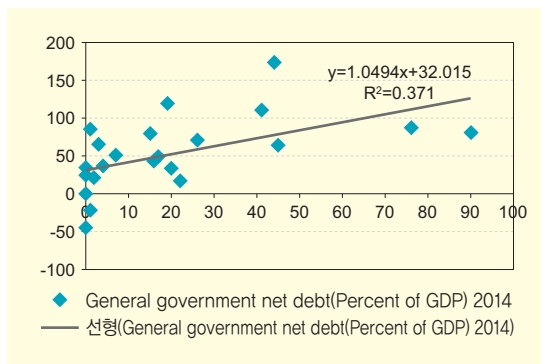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한 국가재정의 대체수단으로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세입 분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세입 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투자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서베이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에서는 PPP(상하수도를 포함한 전체 민간투자계약 건수기준)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해당 국가의 'good institution'이 중요하며, 세출 분권수준이 높을수록 계약 성사율이 높고 사업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sup>24)</sup> 그러나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기타 PPP 사업과는 달리 주로 기초자치단체들이 사업책임자이며, 지방세입 분권 수준이 높을 경우 요금수준 조절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이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민간투자 유인이 낮을 수 있다.<sup>25)</sup>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각국의 제도적 특징이 반영될 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대처정부 이후 정치적 특성, 프랑스의 발달된 계약문화, 북유럽 국가들의 높은 지방세입으로 인한 지방자치 실현 등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 해당 국가의 민관협력에 대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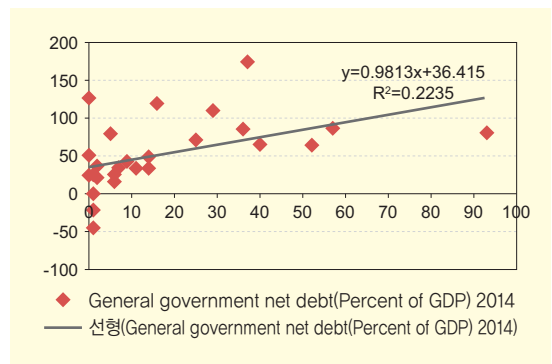
“  
지방세입 분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세입 분권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투자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적 신뢰나 공격적인 물산업 정책 등의 제도적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림 11] 상수도 민간투자수준과 순채무 규모(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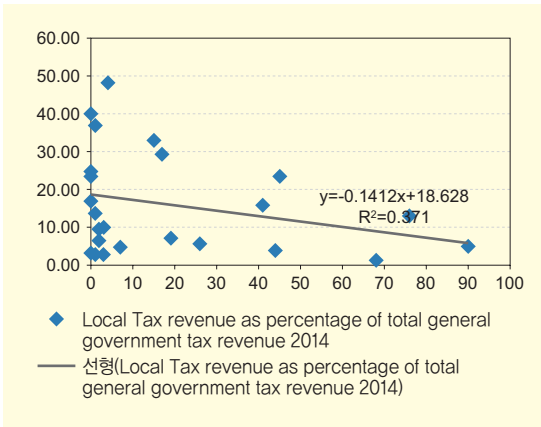
[그림 12] 하수도 민간투자수준과 순채무 규모(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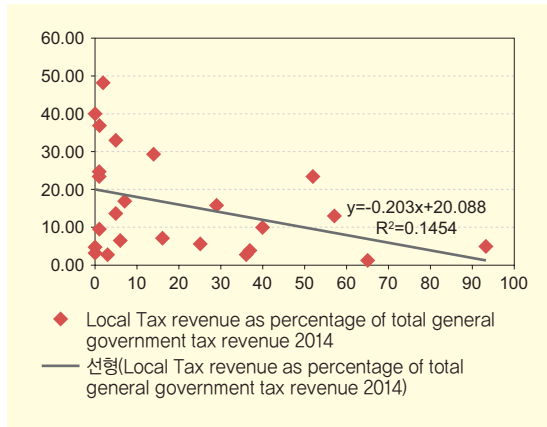
24) Athias et al(2014)

25) 그 밖에 해당 국가 면적, 1인당 소득과 민간투자 수준은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13] 상수도 민간투자수준과 지방세입 비중(2014)



[그림 14] 하수도 민간투자수준과 지방세입 비중(2014)



<표 5> 2005년 기준 상수도 및 하수도 민간투자 비중

Table 4.2, Per cent of the population served the private sector in 2005

	Water	Sewerage
United Kingdom	90	93
France	76	57
Czech Republic	68	65
Spain	45	52
Greece	44	37
Italy	41	29
Hungary	26	25
Australia	22	6
Brazil	20	14
Portugal	19	16
Germany	17	14
Mexico	16	9
United States	15	5
Austria	7	0
China	5	3
Canada	4	2
Russian Federation	4	1
Belgium	3	40
Indonesia	3	0

	Water	Sewerage
Slovak Republic	3	3
New Zealand	2	6
Poland	2	2
Turkey	2	1
Ireland	1	36
Norway	1	5
Sweden	1	1
Denmark	0	1
Finland	0	1
India	0	0
Japan	0	0
Korea	0	7
Luxembourg	0	0
Netherlands	0	11
Switzerland	0	0
Iceland	n.a.	n.a.

n.a.: Signifies no data available.

Source: Pinsent Masons, 2006.

출처: OECD(2007), p. 283, Table 4.2 인용

## 5. 지방정부 상하수도 민간투자 유인과 한계

지방정부 민간투자 이슈는 중앙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26)</sup> 지방정부가 민간투자의 계약 당사자일 경우, 정치적인 책임성 저하 문제, 행정능력 한계 등이 추가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대개의 지방정부는 지자체 수입이나 사용료를 담보로 민간투자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데 수입규모가 중앙정부에 비하여 크지 않고, 따라서 신용도가 높지 않아 국가규모 PPP에 비하여 활성화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약한 점도 단점이다. 그러므로 행정에서 민간금융시장과의 대응능력, 거시금융과의 관계, 상위 정부와의 법률 해석 및 조정가능성 등을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넘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sup>27)</sup>

우리나라 상하수도 사업의 민간 참여부분은 법제도적(「수도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민간투자는 시설투자를 위한 하수관거 BTL 사업, 운영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부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대비 수익성을 전제로 한 민간투자 사업방식인 ‘수익형 민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BTO)’, 즉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여,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sup>28)</sup> 현행 법제도상 민간자본 유치는 가능하지만, 해당 투자자가 수도사업자가 될 수 없고 위탁운영만이 가능하여 지분 행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

“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자치단체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하수도 민간투자는 도로나  
 경전철처럼 사업 수익성 판단 시  
 근거가 되는 사업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재정위험 정도가  
 크지 않은 장점이 있다.**  
 ”

조상 사업책임자인 자치단체장의 선거결과에 따라 계약내용 이행이 달라질 수 있고,<sup>29)</sup> 의사결정이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 등도 민간투자의 장애요인에 해당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자본 유치로 인한 정치적 부담비용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익집단의 로비활동이 상수도 사업 민간자본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스페인 사례에도 나타났으며 다수의 국가들이 이를 정치 쟁점화한 사례가 있다.<sup>30)</sup> 우리나라 역시 과거 물 관련 논의에서 정치적 과장이 있는 논의임을 확인한 바 있기에 경제 논리만으로 정책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자치단체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하수도 민간투자는 도로나 경전철 등처럼 사업 수익성 판단 시 근거가 되는 사업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재정위험 정도가 크지 않은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민간으로부터의 투자여력 확보 유인이라

26) Verhoest et al.(2015)

27) Mizell and Saussier(2015)

28) 부록 참고

29) Levin and Tadelis(2010)

30) Picazo-Tadeo et al.(2012)

“  
**노후 상수관 교체비용 부담을 위한  
 재정수단으로 민간투자 활용방안이  
 지방채나 기타 수단보다  
 우선순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  
 ”

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노후상수관에 대한 국비 투입의사가 국회확정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민간자본의 수익성 확보 위험은 더욱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V. 상·하수도 민간투자 방향과 시사점**

**1. 우리나라 여건에서의 상하수도 민간투자 방향**

국제기구에서의 다양한 상하수도 민간투자에 대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권고사항일 수 있겠으나 자체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다. 나아가 각국의 제도적 환경이 다르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이해관계자일 경우, 국가와의 재정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므로 제도적 검토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민간금융 활용도가 낮고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OECD 국가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화된 민간투자자는 상대하는 지방정부가 단순 계약당사자인지 혹은 실제 의사 결정권자인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 즉, 재원규모, 투입시기, 사업내용, 규제 등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은 해당 시설물 품질에 대한 비교 설문조사에서도 재정사업과 민

간투자사업과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후 상수관 교체비용 부담을 위한 재정수단으로 민간투자 활용방안이 지방채나 기타 수단보다 우선순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향후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위하여 다양한 수단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고, 재정위험 수준이 지방채 상환부담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민간투자 대안은 차선책으로는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기초를 국가채무로 흡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재정부담 증가 속도와 효율을 민간과 협의할 수 있는 재원창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민간투자 방향을 잡는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표 6>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의 시설물 품질에 대한 비교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구 분	재정사업이 우수	비슷함	민자사업이 우수	
사업 분야	환경	16.7	66.7	16.7
	도로	0.0	50.0	50.0
	철도	0.0	87.5	12.5
	항만	0.0	100.0	0.0
전체	7.1	75.0	17.9	

출처: 기획재정부 민투과-KDI, 「2013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5.1.

**2. 상하수도 민간투자 활성화 대안**

정부는 2015년 5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민간투자 활용을 위한 중앙부처 관련 다수의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상하수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와 행자부가 지방공기업 차원에서 요금인상

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개선하고, 지방채와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고용창출을 유도할 경우, 요금인상 정도에 따른 차등 인센티브 제고 방안 등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7〉 상하수도 민간투자 활성화 대안

- (기재부) 지자체 민간투자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
- (국토부, 환경부) 광역상수도 단계에서 경쟁구도 도입해서 정수구입비 인하 유도
- (행자부) 기초지자체 지방채+민간투자 유도시, 요금인상 재정인센티브 확보방안 도입
- (지자체+사용자) 지자체별 요금인상을 통한 물 수요관리 방안 구체화

노후상수관 교체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서의 민간투자 방식은 먼저, 1) BTL 방식을 이용하여, 정부 채무로의 이전할 때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시급한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민간금융 활용방법은 예를 들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서 관리, 보증대상이 민간 선투자사업의 금융기관 대출, 사회기반시설채권임)을 설치 가능하다. 또한 기존 자료에서 광역상수도 사업이 우수한 사례로 소개된 바 있는데,<sup>31)</sup> 현재의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만이 아닌 3)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투입

“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 도시의 경우  
 최소한의 사업수익성이 담보될 경우  
 민간재원 유치가 가능하다.**  
 ”

되어 가격경쟁 및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상수원으로부터 수입할 때의 비용이 자체 정수장 활용 시보다 높을 경우 다른 부분의 원가절감방안 유인이 반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sup>32)</sup> 그러므로 사업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으로 대규모화된 광역단계에서 공급하도록 하여 자체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때 민간투자 유인이 발생하고, 이어 민간자본이 투입되면 경쟁을 통하여 가격 및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sup>33)</sup> 또한 4) 인구 20만명 이상(안) 일반市 지역단위의 민간자본 투자(예: BTO-A)를 고려해 볼 수 있다.<sup>34)</sup>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일정규모 이상 도시의 경우 최소한의 사업수익성이 담보될 경우 민간재원 유치가 가능하다. 지난 5월 정부가 제안한 'BTO-A 유형'은 재정상 추진이 어려웠던 상수관망 개선사업에 적합한 방식에 해당한다. 하수도의 경우, 우선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현재의 BTL 방식을 확대하는 방식을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 채무로 가시화하는 방안이 재정책임성 확보 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sup>35)</sup> KIPF

31) 홍성필(2014)

32) 김현아·김지영(2015)

33) OECD(2007), p. 300.

34) BTO-a(Build Transfer Operate-adjusted)는 손익공유형 정부가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70%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위험을 줄이는 방식임(기획재정부,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 방안」, 2015.4)

35) 문현주·정아영(2013, p. 123)에서는 BTL 방식 외에 RFO(Refurbish-transfer-operate) 방식이 검토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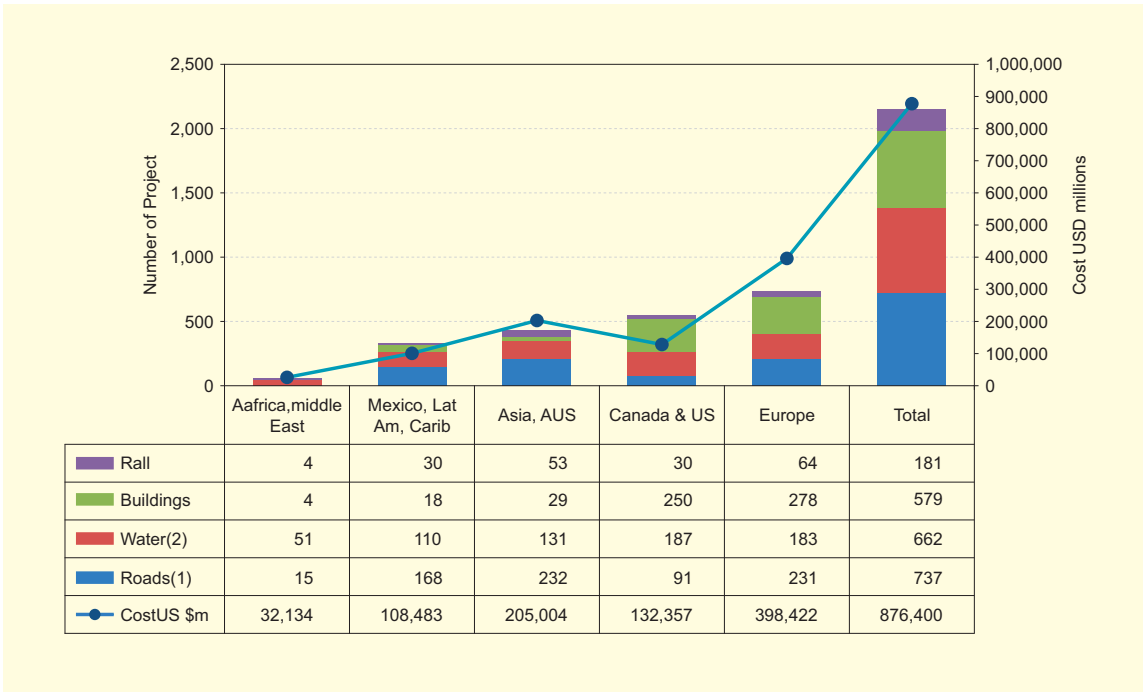
〈참고문헌〉

- 김현아, 「상하수도 요금수준 인상과 재정책임성 확보 방안」, 『재정포럼』, 제233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11.
- 김현아·김지영, 『지방자치단체 물공급 재정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발간예정.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2015.4.
- \_\_\_\_\_, 「열린재정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
- 기획재정부 민투과-KDI, 「2013 민간투자사업 중합평가」, 2015.1.
- 대한민국 정부,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2015.
- 문현주·정아영,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 행정자치부, 「OECD 국가비교를 통한 정부규모 진단 결과」, 2007.11.
- \_\_\_\_\_,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각 연도
- 홍성필,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KDI PIMAC 발표자료, November, 2014.
- 환경부, 「2016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국회확정)」, 2015.12.
- \_\_\_\_\_, 『상수도 통계』, 각 연도.
- \_\_\_\_\_, 『하수도 통계』, 각 연도.
- \_\_\_\_\_, 「201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분석」, 2012.
- OECD and the KIPF,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The case of sub-national PPP,” 2014-15 Research collaboration between the OECD and KIPF, December 2015, pp. 14-15(Working paper)
- Laure Athias, Julie Le Gallo and Thierry Madies, “Does decentralization hinder of foster privatization? Evidence from public private partnerships in OECD countries,” 2014 IIPF 논문발표자료.
- Levin, J., and S. Tadelis, “Contracting for governmen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from U.S. cities,”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58(3), pp. 507-541, 2010.
- Maskin, E. and J. Tirole,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government spending limi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6(2), pp. 412-420, 2008.
-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Directorate, April 2014.
- \_\_\_\_\_, “Infrastructure to 2030,” *Mapping policy for Electricity, Water and Transport*, vol.2, 2007.
- \_\_\_\_\_, “Public-private partnerships : In pursuit of risk sharing and value for money,” OECD publishing, 2008a, doi:10.1787/9789264046733-en.
- \_\_\_\_\_, “Infrastructure to 2030,” Policy Brief, January 2008b, OECD observer, <http://www.oecd.org/futures/infrastructureto2030/40953164.pdf>
- \_\_\_\_\_, “Strategic Financial Planning for Water

- Supply and Sanitation,” [www.oecd.org/water](http://www.oecd.org/water), 2009a.
- \_\_\_\_\_, “Managing Water for All : Perspective on pricing and financing,” 2009b.
- \_\_\_\_\_,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2010.
- \_\_\_\_\_, “Meeting the challenge of Financing Water and Sanitation: Tools and Approaches,” *OECD Studies on Water*, 2011.
- Philippe Burger and Ian Hawkesworth, “How to Attain Value for Money: Comparing PPP and Traditional Infrastructure Public Procurement,” *OECD Journal on Budgeting*, Volume 2011/1, 2011.
- Picazo-Tadeo, A., F. Gonzalez-Gomez, J. G. Wanden-Berghe, and A Ruiz-Villaverde, “Do ideological and political motives really matter in the public choice of local service management? Evidence from urban water services in Spain,” *Public Choice*, 151, 2012.
- Public Works Financing, “International Major Projects database,” 2013.
- Yescombe, E., *Principles of project finance*, 2nd Edition, Academic press, 2013, 2014 at Google Books.
- Verhoest, K., Peterson O.H., Scherrer, W. and Soeipto, R.M. “How do governments support the development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Measuring and comparing PPP governmental support in 20 European Countries,” *Transport reviews: A transitional trans-*
- disciplinary Journal*, 2015.

<부록>

[부도 1] Road, Rail, Water, Buildings PPPs by Region of the World  
(cumulative total 1985–2013, funded by Oct 2013)



출처: Public works financing(2013), "World P3 market by sector/country(10/13)."

〈부표 1〉 연도 및 추진주체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사업 수	총투자비	국가관리		국가보조지자체관리		지자체관리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사업 수	총투자비
1995	1	14,602	1	14,602				
1996	1	1,220					1	1,220
1997	15	28,480	12	22,693	1	2,948	2	2,839
1998	4	26,730	1	24,772	1	1,791	2	167
1999	13	7,895	4	4,335			9	3,560
2000	14	52,125	2	45,929			12	6,196
2001	15	50,358	4	42,211			11	8,147
2002	15	28,977			2	23,448	13	5,529
2003	16	50,643	4	19,928	3	25,713	9	5,003
2004	19	55,334	4	26,073	4	24,284	11	4,977
2005	26	80,913	10	55,373	6	20,684	10	4,856
2006	79	60,768	17	26,291	18	20,275	44	14,201
2007	120	114,595	15	55,124	38	32,213	67	27,258
2008	79	96,012	12	61,098	27	16,291	40	18,623
2009	97	92,160	34	41,285	29	35,741	34	15,134
2010	51	66,346	22	48,083	14	10,825	15	7,438
2011	37	51,035	12	34,809	8	6,882	17	9,344
2012	31	55,021	11	42,984	10	6,006	10	6,032
합계	633	933,213	165	565,589	161	227,100	307	140,524

출처: KDI 공공투자센터, 「2012년말 기준, 2013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2015, p. 85.

〈부표 2〉 민간투자사업 유형별 특징

구분		BTO 방식	BTL 방식
소유권	준공시	정부	정부
	운영기간종료 후	정부	정부
관리운영권		민간사업자	민간사업자
대상시설성격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도로, 철도, 항만 등)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학교, 박물관, 군인아파트 등)
투자비 회수		최종이용자의 사용료	국가의 시설임대료
사업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사용료 산정		• 총사업비 기준 (고시·협약체결시점 가격)	총민간투자비 기준 (시설의 준공시점 가격)
		기준사용료 산정 후, 물가변동분을 별도 반영 사용료는 이용자가 부담	임대료 산정 후, 균등 분할하여 지급
			임대료는 정부가 지급
재정지원		건설기간 중 건설분담금	-
		운영기간 중 운영수입보장 (정부고시사업에 한함)	-
			(필요시 재정지원 가능)
		용지보상비 등	토지 무상 제공 등

출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BTL, BTO) 회계처리지침」



#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주요국의 조세동향

#### 동향 16-01

##### 요약

- 미국은 2015년 12월 21일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인 미국법인에 대해 OECD BEPS Action 13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안규정을 발표함
  - 이는 직전회계연도 총수익이 850백만달러 이상인 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국가별 보고 양식은 미국 국세청이 작업 중에 있음
  - 이 규정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6년 중 최종규정으로 발표될 것이며,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미국은 2015년 12월 24일 외국보험업자 간재보험거래 시 지급하는 프리미엄에 대해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청 통칙(revenue ruling 2016-3)을 발표함
  - 이 규정은 새로운 국세청 통칙 발표일부터 유효함
- 캐나다 재무부는 2015년 12월 24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지원비용의 과세, 비과세 한도액을 km당 0.1캐나다달러씩 인하할 것을 발표함
  - 비과세 대상 차량지원비용은 5,000km까지 0.54캐나다달러, 초과구간은 0.48캐나

다달러로 인하되었으며, 과세대상 차량지원비용은 km당 0.26캐나다달러로 인하됨

-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캐나다는 2016년 1월 12일 외국인 고용주가 캐나다에서 근무한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제외하는 ‘외국인 고용주 인증프로그램’을 발표함
  - 단, 외국인 고용주와 종업원은 캐나다 조세조약국의 거주자이며, 외국인 종업원은 1년 동안 캐나다 거주일이 90일 미만이며, 4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해야 함
  - 외국인 고용주가 2016년 2월 1일까지 캐나다 국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의무가 제외되도록 함
- 영국은 세무행정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의 로드맵을 발표함
  - 세정당국은 납세협력의 부담을 줄이고, 세무행정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16년까지 모든 개인납세자와 소기업은 온라인 은행계좌처럼 보안 디지털 세무계정을 통해 세정당국의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음
  - 2020년까지 기업과 개인납세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등록, 신고, 납부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되므로 확정을 위한 별도의 연간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임

- 벨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점과 공급시기 등에 관한 개정을 2015년 12월 6일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음
  - 벨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5,000유로에서 25,000유로로 인상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같은 적용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3에서 제안하는 ‘국가별 보고서’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
  - 룩셈부르크는 기업의 기밀을 보장하는 반면,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CbCR(Country-by-Country Reporting)을 일관되고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함
- 덴마크 의회는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3에서 제안하는 이전가격 문서화를 채택함
  - 덴마크 의회가 OECD 이전가격 문서화를 채택함에 따라 현행 적용되고 있는 덴마크의 이전가격 문서규정은 신설규정으로 대체됨
  - 덴마크 이전가격 문서화와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 세부적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임
  - CbCR은 2016년 1월 1일이나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종 모회사가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7

년부터 적용될 것임

- 네덜란드 정부는 2015년 12월 30일 2016년 개정세법을 발표함
  -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비거주자인 주주 및 네덜란드 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 등을 통한 조세회피방지규정 도입, 국가별 보고서 등 이전가격 문서 의무화, 공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이 있음
  -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 각종 세액공제 한도 상향, 그리고 네덜란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출국세 과세이연 등이 있음
  - 기타 세목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정, 비거주자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인상 등이 있음
- 프랑스 정부는 2015년 12월 30일 2015년 개정세법에 대한 수정법안을 발표함
  -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영참가소득면제와 배당지급 원천징수 면제규정 개정, 이전가격세제 관련 국가별 보고서 의무 제출 규정 도입 등이 있음
  -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EU 또는 EEA 거주자인 이사의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제도 도입, 비거주자에 대한 최저한세 폐지 등이 있음
  -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일부 농산품에 대한 경감세율 배제, 조세탈루범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이 있음



- 이탈리아 정부는 2015년 12월 30일 2016년 개정세법을 발표함
  -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금융기관의 이자비용공제 확대,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인하, CFC 제도 적용면제 조항 도입, 국가별 보고서 의무화, 각종 조세특례 개정 등을 포함함
  -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금소득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일부 특별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연장, 신흥부부 주거비용 관련 세액공제 신설 등이 있음
  -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공공위생용역과 적격 전자출판물 공급에 적용하는 새로운 경감세율 도입 등이 있음
  - 기타 세목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농업용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신규 채용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의무 면제, 농업용 토지에 대한 등록세 인상 등이 있음
- 호주 과세당국은 2015년 12월 17일 국가별 보고에 대한 지침을 공개함
  - 지침은 납세자들에게 신설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 중 이전가격문서화와 관련된 국가별 보고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지침은 국가별 보고의 대상과 면제, 보고 방법, 보고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일본 각의는 2015년 12월 24일 2016 세법개정안을 승인함
  - 세법개정안은 현행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성장지향적인 법인세개혁,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 고려, 저출산대책·교육여건증진·지역개발과 더불어 국제기준에 적합한 과세규정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러한 개정안은 2016년 3월 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입법될 예정임

1. 미국-OECD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안규정을 발표

- 미국은 2015년 12월 21일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인 미국기업에 대해 OECD BEPS Action 13의 권고사항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를(country-by-country) 제출하도록 하는 제안규정(proposed regulation)을 발표함<sup>1)</sup>
  - 국가별 보고 양식은 미국 국세청이 작업 중에 있으며, OECD 권고사항을 기초로 하여 일부 수정될 것임
  - 이 규정은 90일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2016년 중 최종규정이 발표될 것이며, 최종규정 발표 이후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미국 다국적기업의 직전회계연도 총수익이 850백만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가지며, 미국

1) 미국 국세청(IRS) 및 재무부(Treasury), "Country-by-Country Reporting(REG-109822-15)"

내국세법 6038(a)<sup>2)</sup>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미국 국세청에 보고되고 있는 외국법인은 보고대상 기업에서 제외함

- 국가별 보고 양식에 포함되는 내용은 크게 모회사인 미국기업의 계열사(constituent entity) 정보, 재무 및 종업원 정보, 추가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표 1〉 미국 국가별 보고 양식에 포함되는 내용

계열사 정보	재무 및 종업원정보	추가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세관할권 정보</li> <li>• 계열사 거주지</li> <li>• 주요 사업활동</li> <li>• 납세자번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수익(계열사 간 거래로 발생한 수익과 아닌 수익 구분)</li> <li>• 법인세 차감 전 손익</li> <li>• 원천징수액을 포함한 총납세액</li> <li>• 누적이익(accumulated earnings)</li> <li>• 유형자산(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의 순장부가액(net value)</li> <li>• 해당 과세관할권에서 일하는 정규직 사원 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출처에 대한 설명</li> <li>• 내용변경에 대한 설명</li> </ul>

- 국가별 보고 양식 제출기한은 OECD 권고사항과 달리 미국법인의 소득신고서 제출기한까지임
  - OECD 권고사항에서는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2. 미국-외국보험업자 간 재보험거래 시 소비세 과세 폐지

- 미국 국세청은 2015년 12월 24일 외국보험업자 간 재보험거래로 지급하는 프리미엄에 대해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국세청 통칙을 발표함<sup>3)</sup>
  - 이는 최근 버뮤다 재보험회사인 ‘Validus’와 미국세청의 소송에서 미 국세청이 재보험에 부과한 소비세를 환급하도록 한 미연방 항소법원의 판결 결과를 고려하여 개정된 것임<sup>4)</sup>
  - 외국보험업자의 재보험거래에 1%의 소비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기존의 국세청 통칙(revenue ruling 2008-15)을 폐지하고 새로운 통칙으로 대체함
- 단, 외국 재보험업자가 미국 내 보험회사로 취급되거나, 재보험거래로 지급받은 프리미엄이 미국 사업소득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1%의 소득세가 과세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2) 미국세법 6038(a)규정에서는 외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해당 미국법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매년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함

3) Revenue ruling 2016-3

4) 버뮤다 재보험회사인 ‘Validus’가 외국 보험업자로부터 인수한 미국의 위험을 인수하는 재보험(retrocession) 거래에 부과된 소비세가 부당하다며 낸 환급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음



### 3. 캐나다-과세·비과세 대상 종업원 차량 지원비용 한도액 인하

- 캐나다 재무부는 2015년 12월 24일 2016년부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영비용의 과세 및 비과세 한도액을 각각 킬로미터(km)당 0.1캐나다달러씩 인하할 것을 발표함<sup>5)</sup>
- 종업원이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업무용 차량 일지를 제출하면 최초 5,000km까지는 km당 0.54캐나다달러, 5,000km를 초과하는 운행구간은 km당 0.48캐나다달러로 계산하여 해당 지급금액을 비과세함
  - 2015년에는 5,000km까지 km당 0.55캐나다달러, 초과구간은 km당 0.49캐나다달러였으나 2016년부터 0.1캐나다달러씩 인하됨

〈표 2〉 캐나다의 비과세 차량지원 기준금액 개정내용

(단위: 캐나다달러)

	비과세대상 차량 지원금액	
	~ 5,000km	5,000km 초과
2010~2011	0.52	0.46
2012	0.53	0.47
2013~2014	0.54	0.48
2015	0.55	0.49
2016	0.54	0.48

출처: 캐나다재무부(<http://www.cra-arc.gc.ca/tx/bsnss/tpcs/pyrll/bnfts/tmbll/wnc/rts-eng.html>)

- 회사소유차량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차량 운영비를 회사에서 전액부담 한다면 해당 비용을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데, 기존 km당 0.27캐나다달러에서 2016년부터 0.26캐나다달러로 인하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4. 캐나다-적격 외국인 고용주의 외국인 종업원 근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제외

- 캐나다 국세청은 2016년 1월 12일 적격 외국인 고용주가 적격 외국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제외하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주 인증 프로그램’을 발표함<sup>6)</sup>
  - 이는 비거주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캐나다 예산안에서 제안됨
  - 캐나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를 통해 2016년 2월 1일까지 비거주자 고용주가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 의무가 제외되도록 함
- 적격 외국인 고용주 및 외국인 종업원은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이며, 적격 외국인 종업원은 과세기간 중 캐나다 근무일자가 45일 미만이거나, 캐나다에 90일 미만 거주한 자임
  - 만약 적격 외국인 고용주가 파트너십인 경우, 파트너십 소득의 90% 이상이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에게 분배되어야 함

5) 캐나다 재무부(<http://www.fin.gc.ca/n15/15-090-eng.asp>)

6) 캐나다 국세청, "Application for Non-Resident Employer Certification-RC473," 2016.01.12 및 pwc, "New Non-Resident Employer Certification program: Payroll withholding relief for foreign employers with frequent business travellers to Canada," 2016.01.15.

- 적격 외국인 종업원이 캐나다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30일 전에 고용주는 캐나다 국세청에 ‘적격 외국인 고용주 신청서(RC437)’를 제출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부터 원천징수의무가 제외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 5. 영국-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의 전환

- 영국은 2015년 11월 발표한 재정지출분석보고서의 후속조치로, HMRC의 세무행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함<sup>7)</sup>
  - 세정당국은 디지털 방식을 통해 납세협력의 부담을 줄이고, 세무행정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함
    -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세무행정 중 하나로 ‘디지털방식의 전환’을 위해 130억파운드 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 세정당국은 납세자의 근로정보, 금융정보, 기타 적절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세무행정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음
- 세정당국이 전환하고자 하는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4가지 기본방향을 담고 있음<sup>8)</sup>
  -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납세행정을 단순화함
    - 세정당국이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납세자의 디지털 계정을 통해 자료를 수취하게 되고, 납세자는 고용주, 은행 혹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취하여 세정당국에 제공할 필요가 없음
  -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한곳에서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2020년까지 납세자는 디지털 계정을 통해 납부세액, 재정지원혜택과 같은 재정상황을 은행의 온라인 계정처럼 한곳에서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임
  -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기업을 위해 구축됨
    - 실시간으로 세정당국은 기업의 세무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 확정을 위해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음
  -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개인납세자를 위해 구축됨
    - 개인납세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됨
- 2016년까지 모든 개인납세자와 소기업은 온라인 은행계좌처럼 보안 디지털 세무계정을 통해 세정당국의 정보에 접속할 수 있음
  - 이미 200만개 이상의 소기업은 HMRC 디지털 계정을 이용하고 있고, 개인 납세자에 대한 디지털 계정은 2015년에 도입되었음
  - 개인들은 2017년부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은 하나의 중앙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납부의무가 있는 다양한 세금과 제출의무가 있는 서식이 통합되어 행정절차가 간단해질 것임

7) HMRC, "SPENDING REVIEW AND AUTUMN STATEMENT 2015," 2015.11, p. 35.

8) HMRC, "Making tax digital," 2015.12, p. 5.



- 2020년까지 기업과 개인납세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등록, 신고, 납부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게 되므로 확정을 위한 별도의 연간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것임
- 세무행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세정당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세무관련 자료를 수취하게

되어 납세자들은 세액 확정을 위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임

- 2018년 4월부터 자영업자, 임대사업자를 포함하여 기업은 주요 원천소득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갱신하여야 함

〈표 3〉 영국의 디지털 세무행정시스템에 대한 로드맵<sup>9)</sup>

구분		진행과업
2016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료제공 범위와 작업, 단순한 세무행정, 제3자 정보와 관련한 공개회의</li> <li>• 납세자는 디지털계정을 통해 국민보험기여금이 주연금(State Pension)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음</li> <li>• 영국의 모든 500만개 소기업과 모든 개인납세자는 디지털 계정을 통해 HMRC가 보유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li> <li>• 납세자와 HMRC 간의 통신 보안에 대한 테스트 시작</li> <li>• 납세자의 디지털 계정에 PAYE(원천징수)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대화(webchat)을 도입함</li> <li>• 소기업의 전자 세무신고를 위한 테스트 시작</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저축공제를 초과하는 금융기관과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의 이자를 근로자와 연금수급자의 세무 코드에 포함함</li> <li>• 근로와 연금에서 공제되는 인적공제액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이용에 대한 테스트 시작</li> </ul>
2017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대소득에 대한 전자신고의 테스트 시작</li> <li>• 새로운 온라인 빌링 시스템 시작</li> <li>• 디지털 계정을 통해 납세자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득원천을 신고할 수 있음</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계정으로 납세자는 한곳에서 전반적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음</li> <li>• 납세자의 자동 세무코드 조정은 초과 혹은 미달 PAYE(원천징수)를 방지함</li> </ul>
2018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납세자의 디지털 계정에 금융기관과 주택금융조합에서 수령한 이자를 확인할 수 있음</li> </ul>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기업, 자영업자와 임대업자는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금을 위해 분기별로 납세자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정보의 갱신을 시작함</li> <li>• HMRC에 자녀수당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더 이상 신고할 필요 없음</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기업, 자영업자와 임대업자는 VAT를 위해 분기별로 납세자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정보의 갱신을 시작함</li> <li>• 주거용 자산의 처분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30일 이내에 납부되어야 함</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기업, 자영업자와 임대업자는 법인세를 위해 분기별로 납세자의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정보의 갱신을 시작함</li> <li>• HMRC의 모든 서비스는 디지털 계정을 통해 이루어짐</li> </ul>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9) HMRC, "Making tax digital," 2015.12, pp. 11~12.

## 6. 벨기에-부가가치세의 면세점과 공급시기 등에 관한 개정

- 부가가치세의 면세점과 공급시기 등에 관한 개정사항을 2015년 12월 6일 관보를 통해 발표하였음
  -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을 인상하는 개정안과 부가가치세의 적용, 공공기관공급에 대한 현금주의(Cash-based regime)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벨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현행 15,000유로에서 25,000유로로 인상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부가가치세의 면세점 인상안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EC)의 승인으로 제정되었음
-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가가 청구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을 재개함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거나 대가가 청구될 때 혹은 지불될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부과될 수 있음
  - 이 중 ‘대가가 청구될 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가가 청구되는 경우 공급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어 2013년에 폐지되었으나, 오히려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음
    -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때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가가 청구될 때 혹은 지불될 때로 공급시기를 볼 수 있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대가 청구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임
  - 재화나 용역의 공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대가가 청구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는 공급일의 다음달 15일에 부과될 것임
  - 재화나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가가 지불된다면, 대가 지불일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임

- 매입자납부제(매입자 부담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reverse charge)<sup>10)</sup>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주의로 과세함
  - 현금주의에 따라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급받기 전까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함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이전에는 매출세액에 대한 자금 부담이 없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 7. 룩셈부르크-BEPS Action 13의 국가별 보고서 수용

-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3에서 제안하는 ‘국가별 보고서’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힘
  - 룩셈부르크는 2014년 10월 29일에 베를린 성명을 통해 조기 적용 국가(Early adopter)로 합류하게 됨
  - 이행사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은 사업을 영위하

10) 공급자 간 수차례 거래를 함으로써 부가세를 탈세하는 회전목마형 부가세 탈세 등 일정 유형의 부가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세 납부 의무를 공급자에서 고객으로 변경하는 제도(주 EU 대사관 : [http://missiontoeu.mofa.go.kr/webmodule/hi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lD=15&boardid=10878&seqno=1110341&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http://missiontoeu.mofa.go.kr/webmodule/hi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lD=15&boardid=10878&seqno=1110341&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는 모든 국가에 국가별 사업내용과 법인세, 종업원 수, 매출액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 매년 CbCR을 신고하여야 함

- 룩셈부르크 대사관 주최로 OECD 파리 본사에서 개최된 ‘국제조세와 OECD의 BEPS에 관한 회의’에서 CbCR의 수용 의사를 밝힘
- 룩셈부르크는 기업의 기밀을 보장하고, 다국적기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별 보고서를 일관되고 신속히 시행할 것이나 세부사항은 발표되지 아니함<sup>11)</sup>
- 재무장관은 CbCR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나, 법인 자체의 조세 문제와 같은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쟁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재무장관은 다국적기업의 CbCR을 관련 국가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 8. 덴마크 : BEPS Action 13의 이전가격 문서화 채택

- 덴마크 의회는 OECD BEPS 프로젝트의 Action 13에서 제안하는 이전가격 문서화를 채택함<sup>12)</sup>
- 현행 적용되고 있는 덴마크의 이전가격 문서규정은 이번에 채택된 OECD 이전가격 문서화로 대체됨

■ 덴마크 이전가격 문서화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 세부적인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 상반기에 결정될 예정임

- 전 세계 매출이 최소 56억크로네(DKK)이고 덴마크에 본사가 있는 다국적기업은 덴마크 세정당국에 연간 국가별 보고서(CbCR)를 제출하여야 함
- 최종 모회사의 세무상 거주지가 덴마크가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CbCR은 덴마크에서 제출되어야 함
  - 다국적 그룹에 속한 한 회사가 덴마크에 있고, 다국적그룹의 최종 모회사가 CbCR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에 있는 경우
  - 다국적그룹에 속한 한 회사가 덴마크에 있고, 다국적그룹의 CbCR이 자동적으로 교환되지 않는 경우
- 제안될 법안은 매출, 세전 이익, 납부세액, 자본 구성, 종업원, 유형자산 등에 대한 신고범위가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sup>13)</sup>

■ CbCR은 2016년 1월 1일이나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 연도부터 적용되며, 최종 모회사가 덴마크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7년부터 적용될 것임

- CbCR은 늦어도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룹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11) 룩셈부르크 관보, <http://www.gouvernement.lu/5646957/26-grameгна-mission>

12) 덴마크 국세청 : <http://www.skm.dk/love/lovforslag/2015-16/forslag-tii-lov-om-aendring-af-kattekontrolloven,-arbejdsmarkedsbidrag-sloven,-kildeskatteloven,-ligningsloven-og-pensionsbeskatningsloven>

13) Tax analysis, 2016.01.11, p. 123.

## 9. 네덜란드-2015년 12월 30일 2016년 개정세법을 발표함<sup>14)</sup>

- 2016년 개정세법(Tax Plan 2016)은 2015년 12월 22일 네덜란드 상원(Eerste Kamer)을 통과하여 12월 30일 정부에서 공식 발표됨

### 가. 법인세

-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비거주자인 주주 및 네덜란드 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정비 등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도입, 국가별 보고서 등 이전가격문서 의무화, 공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등이 있음
-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에 대한 EU Directive(2015/12)에 따라 네덜란드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네덜란드 조합의 원천징수의무 사항이 개정됨
  - 네덜란드 소재 법인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네덜란드 법인을 보유하는 주된 이유가 조세회피 목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는 네덜란드에서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함
  - 기존 세법에서 원천징수의무가 없던 네덜란드 조합(cooperative)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함
- OECD BEPS Action 13의 지침에 따라 특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네덜란드에서 마스터파일, 로컬파일과 함께 국가별 보고서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함
- OECD의 Common Reporting Standard와 EU Directive(201/07)에 따라 네덜란드 금융회사는 해외 거주자의 은행잔고 등 특정 금융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기존 세법상 정부가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공기업은 과세대상 단체에서 제외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일부 향만운영자와 의과대학을 제외한 공기업의 경제적 활동으로 창출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 단, 공기업의 조직개편(reorganization)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면제됨

14) Netherlands-Tax Plan 2016, Bill to amend Tax Plan 2016 and Bill on other fiscal measures gazetted(30 Dec. 2015), News IBFD.



나. 소득세

-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세 세율 및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각종 세액공제 한도 증가를 통한 개인납세자의 세부담 완화, 네덜란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출국세 과세이연 등이 있음
- 일부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기존 42%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을 40.4%로 인하함
  - 52%의 세율이 적용되던 과세표준구간의 기준금액을 57,585유로에서 66,421유로로 상향 조정함

〈표 4〉 2016년 네덜란드 개정 소득세율

(단위: 유로, %)

과세표준	세율
~19,822 이하	36.5
~ 33,589 이하	40.4(기존 42)
~ 66,421 이하(기존 57,585)	40.4(기존 42)
66,421 초과	52

- 개인납세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기본세액공제, 근로세액공제, 고령세액공제, 저소득 근로배우자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함
  - 기본세액공제 최대 공제한도는 2,203유로에서 2,242유로로 상향
  - 근로세액공제 최대 공제한도는 2,220유로에서 3,103유로로 상향
  - 고령세액공제는 1,119유로에서 1,730유로로 상향
  - 저소득 근로 배우자 세액공제는 1,119유로에서 1,730유로로 상향

- 네덜란드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국하는 시점에 주식 양도소득세 형식으로 과세되던 기존 출국세(exit tax)에 대하여 10년간 과세이연 또는 면제를 적용함
  - 기존 네덜란드 출국세는 거주지를 이전하는 네덜란드 법인의 과점주주(네덜란드 법인 주식의 5% 이상 소유)가 출국하는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
  - 개정된 세법은 이러한 출국세를 출국일로부터 10년간 유예하고, 10년간 네덜란드 법인 주식을 처분하지 않거나 10년간 해당 법인 잉여금의 90%를 초과하여 배당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국세를 면제함

다. 기타 세목 개정사항

- 기타 세목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조정, 비거주자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 담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 인상 등이 있음
- 자녀당 증여세(gift tax) 면제 한도를 상향 조정함 (2017년부터 적용)
  - 자녀당 증여세 면제 한도를 기존 52,752유로에서 10만유로로 상향 조정함
    - 증여세는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주거지의 취득, 유지, 개보수 등에 사용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용자상환에 사용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증여 당시 자녀는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네덜란드에 보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과세를 완화함
  - 비거주자가 지방세 과세대상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자동차세율이 가장 높은 지역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보아 가장 낮은 자동차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비알코올 음료와 담배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함
    - 경감 소비세율이 적용되던 과일 및 야채주스와 광천수에 경감세율이 아닌 일반 소비세율인 100리터당 8.83유로를 적용함
    - 담배에 대한 소비세가 85.74유로/kg에서 99.25유로/kg으로 인상됨
- (자료 수집 및 정리: 오유나 회계사)

## 10. 프랑스-2015년 12월 30일 2015년 개정세법에 대한 수정법안을 발표함<sup>15)</sup>

- 프랑스 국회는 2015년 12월 17일 2015년 개정세법 수정안(Amending Finance Bill for 2015, projet de loi de finances rectificative pour 2015)을 채택하고 정부가 2015년 12월 30일 발표함

### 가. 법인세

- 법인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경영참가소득 면제와 배당지급 원천징수 면제 규정 개정, 이전가격 세제 관련 국가별 보고서 의무 제출 규정 도입 등이 있음
- 유럽연합 또는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 소재하는 모회사가 결손상태에서 청

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러한 모회사에 프랑스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은 30%의 프랑스 원천징수세가 면제됨

- 기존 세법에서는 EU에 소재하는 법인이 프랑스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은 모법인이 프랑스 자회사 지분의 10% 이상을 2년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 한해 프랑스 원천징수세가 면제되었음
- 기존 세법은 프랑스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 배당금에 대하여 프랑스 모법인과 EU 또는 EEA 소재 모법인에 대한 과세 차별을 발생시켜 EU 법상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 원칙에 위배되어 개정됨
  - 결손상태의 프랑스 모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은 결손과 상계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결손상태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EU 또는 EEA 법인은 결손금공제 사용의 제한으로 수입배당금 공제가 불가함

- 경영참가소득면제(participation exemption) 규정과 관련하여 배당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및 세이프하버조항(safe harbor rule) 등이 도입됨
- 기존에는 EU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에 한해 적용되었으나 적용 대상을 EEA 지역 소재 법인으로 확대하고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면제규정 적용요건을 완화함
  - 영리법인의 경우 경영참가소득면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회사 지분의 5% 이상을 2년 이상 소유하여야 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

<sup>15)</sup> France; French Guiana; Guadeloupe; Martinique; Reunion—Amending Finance Law 2015—adopted (22 Dec. 2015), News IBFD.



지분율 요건을 2.5%로 완화하는 대신 소유기간을 5년으로 함

- 특정 거래나 투자구조 형태의 주된 목적이 조세 회피 또는 EU 모회사법(EU parent-subsidiary directive)에 따른 배당소득면제 규정 남용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 프랑스 원천징수면제 적용을 배제함
- 프랑스 세법상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에는 경영참가소득면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조세피난처 법인 설립의 사업정당성을 입증하는 경우 소득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세이프하버규정 도입
- 직전연도 그룹 매출 총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프랑스 본사는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하는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음
  - 법인명과 주된 사업활동
  - 매출액 및 근로자 수
  - 세전 이익/손실과 법인세납부액
  - 국가 보조금 수령액 등

#### 나. 소득세

- 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EU 또는 EEA 거주자인 이사의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제도 도입, 비거주자에 대한 최저한세 폐지 등이 있음
- EU 법에 따라 EU 또는 EEA 거주자인 이사가 비

거주국에서 획득한 보수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중 동 보수에 대하여 이사의 거주지국에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함

- 프랑스 내에 거소를 소유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함
  - 기존 세법에서는 비거주자의 프랑스 소재 부동산 임대가치의 3배를 명목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였음

#### 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일부 농산품에 대한 경감세율 배제, 조세탈루범으로부터 공급 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이 있음
- 식품 또는 농산품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농산 원 재료를 10%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대상에서 제외하고 20%의 일반세율을 적용함
- 재화거래에서 공급자가 조세를 탈루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세탈루범과의 거래에 대한 매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 적용을 용역거래에도 확대하여 적용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욱 회계사)

#### 11. 이탈리아-2015년 12월 30일 2016년 개정세법을 발표함<sup>16)</sup>

- 이탈리아 국회는 2015년 12월 28일 2016년 개정세법안(Stability Law for 2016)을 채택하고 정부는 이를 2015년 12월 30일 발표함

16) Italy-Stability Law for 2016-summary (13 Jan, 2016), News IBFD.

가. 법인세

-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인세율 인하, 금융기관의 이자비용공제 확대,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 원천세율 인하, CFC제도 적용면제 조항 도입, 국가별 보고서 의무화, 세액공제 등 각종 조세특례 개정 등을 포함함
- 단일 법인세율을 기존 27.5%에서 24%로 3.5%p 인하함
  - 단, 은행 등 금융업 영위 법인들은 3.5%의 추가소득세(surtax)를 과세함으로써 금융업 법인들에는 실제적인 법인세 인하효과가 없음
- 금융기관의 이자비용 공제금액을 확대함
  - 은행 등 적격 금융기관의 이자비용을 전액 공제 허용함
    - 단, 보험회사의 경우 총이자비용의 최대 96%까지 공제 가능함
- EU 또는 EAA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대하여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들 지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함
  -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EU 또는 EEA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에 대해서는 CFC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EU 또는 EEA 국가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375%에서 1.2%로 인하함
- 대체세(substitute tax) 납부를 통한 특정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증액 인정,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

가상각특례 및 각종 세액공제 도입 등 다양한 특례 제도를 신설함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납세자는 본인 소유의 비상장주식 또는 적격 토지에 대하여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의 8% 대체세를 납부하고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시가로 증액할 수 있음
  - 2016년 9월 30일 이전까지 법인과 파트너십 등이 동 법인의 주주에게 판매하는 유·무형 자산의 양도소득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대신 대체세(장부가액과 시가 차이의 8%)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음
  - 2015년 10월 15일부터 2016년 말까지 취득하는 적격 생산기계 및 시설장비 중 연 상각률이 6.5% 이하인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의 140%까지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상각할 수 있음
  - 법인 구조변경(reorganization) 등으로 증액된 상표권과 영업권에 대해서는 상각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가속상각할 수 있도록 함
  - Abruzzo, Basilicata, Calabria 등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소재한 법인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소기업의 경우 20%, 중기업 15%, 대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공유산의 유지, 보호, 재건 또는 공공장소와 문화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목적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기존 50%에서 65%로 조정함
- 직전연도 그룹 매출 총액이 7억 5천만유로 이상인 이탈리아 본사는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포함한 국가별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1만~5만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됨
-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음

- 법인명과 주된 사업활동
- 매출액 및 근로자수
- 세전 이익/손실과 법인세납부액
- 국가 보조금 수령액 등

### 나. 소득세

-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연금소득 세액공제 한도 상향 조정, 일부 특별세액공제의 일몰기한 연장, 신흠부부 주거비용 관련 세액공제 신설 등이 있음
- 과세소득이 7,750유로 이하인 납세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을 1,783유로로 인상하는 등 소득구간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
  - 소득구간 7,750유로에서 15,000유로까지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1,255 + (528 \times (15,000 - \text{과세소득}) \div 7,250)$
  - 소득구간 15,000유로에서 55,000유로까지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1,255 + ((55,000 - \text{과세소득}) \div 40,000)$
- 2015년 말로 폐지될 예정이던 부동산의 에너지효율 증대와 리노베이션 및 리노베이션 관련 가구 매입 등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 말로 연장함
  - 부동산의 에너지 효율 개선 관련 비용의 65%
  - 부동산의 리노베이션과 리노베이션 관련 가구 취득 비용의 50%
-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신흠부부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2016년에 발생하는 가구 취득 비용의 50%(한도 16,000유로)

### 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공공위생용역과 적격 전자출판물 공급에 적용하는 새로운 경감세율 도입 등이 있음
- 2016년 예정되었던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2017년으로 유예함
  - 경감세율: 현행 10%에서 2017년부터 13%로 인상
  - 표준세율: 현행 22%에서 2017년 24%, 2018년에는 25%로 인상
-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제공하는 공공위생용역에 적용하는 최대경감세율 5%를 신설함
-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또는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등으로 등록되는 적격 전자출판물 공급에 대해서는 새로운 4%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라. 기타 세목

- 기타 세목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농업용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신규채용에 대한 고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 면제, 농업용 토지에 대한 등록세 인상 등이 있음
- 농업용 토지와 산간지역에 대한 지방 부동산세를 면제하고, 면제 대상 납세자의 범위를 농업사업자로 확대함
- 2016년에 채용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40%의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무를 연간 3,250유로를 한도로 최대 2년간 면제함
- 농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등록세가 12%에서 15%로 인상됨

(자료 수집 및 정리: 홍민옥 회계사)

## 12. 호주-국가별 보고 지침 공개<sup>17)</sup>

- 호주 과세당국은 2015년 12월 17일 국가별 보고에 대한 지침을 공개함
  - 지침은 납세자들에게 신설된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 중 이전가격문서화와 관련된 국가별 보고의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방지규정의 내용 중 OECD Action 13에 따른 이전국가문서화인 국가별 보고의 적용이 포함되어 있음
  - 지침은 국가별 보고의 대상과 면제, 보고방법, 보고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룹 연간 매출액 10억호주달러 이상인 글로벌기업은 원칙적으로 보고대상이 되나, 보고대상의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OECD는 매출액 7억 5천만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면제규정을 두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호주 과세관청은 대상자가 서면으로 면제 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내용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거래의 규모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 기업의 위험요소 평가
    - 기업의 협력부담 정도
    - 과세관청이 정보교환 등을 통해 관련 보고를 다른 방식을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
  - 예를 들어 글로벌기업이 국외거래가 없는 경우,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이 부여된 국부펀드 등이 이러한 보고의무면제에 해당할 수 있음
- 과세관청이 면제 자체의 적용은 부적절하지만 납세자의 신청사유에 일부 고려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소화된 로컬파일 양식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또한 소득세 면제가 적용되는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면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보고는 해당 기간 종료 후 12개월 내에 승인된 양식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보고 내용은 OECD 지침 등에 따라 비공개되나, 호주 정보교환약정에 따라 다른 국가에 제공될 수 있음
- 국가별 보고의 작성이 보고자의 통제 범위 밖에 있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과세관청에 통보해야 함
- 이러한 경우는 모회사가 국가별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데, 보고면제 등을 포함한 대안을 과세관청과 논의하여야 함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별 보고와 마스터 파일만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로컬파일은 별도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함
- 과세관청은 로컬파일에 대해 위험평가와 협력부담을 고려하여 3가지 형태의 승인된 양식으로 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17) Australian Taxation Office, Subdivision 815-E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Country-by-Country reporting, Law Companion Guideline LCG 2015/3, 2015.12.17.



- OECD 지침에서 요구하는 3가지<sup>18)</sup> 모든 사항을 담은 완전한 로컬파일, 모든 사항을 포함하나 정보 정도가 낮은 간소화된 로컬파일, 요구사항 중 첫 번째 사항만을 포함한 요약 형태의 로컬파일로 구분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법인세율의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의 조정, 새로운 이전가격 문서화, 소비세율의 경감세율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개정안은 2016년 3월 말까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입법될 예정임

### 13. 일본-2016 세법개정안 각의 결정<sup>19)</sup>

- 일본 각의(閣議)는 2015년 12월 24일 2016 세법개정안을 승인함
  - 세법개정안은 현행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해 성장지향적인 법인세 개혁,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 고려, 저출산대책·교육여건 증진·지역개발과 더불어 국제기준에 적합한 과세규정의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가. 법인세

- 법인세율과 지방세인 법인사업세율을 인하하고, 지방법인 특별세를 폐지함
  - 대기업의 세율을 현행 23.9%에서 2016년 23.4%, 2018년 23.2%로 인하함

〈표 5〉 법인세율

		현행	개정안	
			2016.4.1.~2018.3.31.	2018.4.1.이후
일반법인		23.9%	23.4%	23.2%
중소기업	소득 8백만엔 이하	19.0% (경감세율 15.0% <sup>1)</sup> 적용)	19.0% (경감세율 15.0% <sup>1)</sup> 적용)	19.0%
	소득 8백만엔 초과	23.9%	23.4%	23.2%

주: 1)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은 2017년 4월 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조세동향」 2015-01 참조)

출처: KPMG, *Outline of the 2016 Tax Reform Proposals*, 18 December 2015, p. 2.

18) 3가지 사항은 OECD Action 13 Annex II 에 기술되어 있는데 Local entity, Controlled transactions, Financial information임

19) 財務省, 「平成28年度 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 12月 24日 閣議決定

- 법인사업세(지방세) 세율을 2015년과 2016년에 순차적으로 인하함

〈표 6〉 지방 법인사업세 표준세율(소득기준의 경우)

소득기준	현행	개정안
연 4백만엔 이하	3.1%(1.6%)	1.9%(0.3%)
연 4백만엔 이상 8백만엔 미만	4.6%(2.3%)	2.7%(2.7%)
연 8백만엔 초과	6.0%(3.1%)	3.6%(0.7%)

주: 괄호안 세율은 지방법인 특별세 등에 관한 잠정조치법 적용 후 세율로 특별지방법인세 과세종료되는 2017년 4월 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출처: 財務省, 「平成28年度 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 12月 24日, p. 42, 재구성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율을 기간별로 조정함
  - 현행은 2015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65%로, 이후 기간은 50%로 되어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한도율을 2016년 60%, 2017년 55%로 조정함

〈표 7〉 이월결손금 공제율

	현행	개정안
2015.4.1.~2016.3.31	65%	65%
2016.4.1.~2017.3.31		60%
2017.4.1.~2018.3.31	50%	55%
2017.4.1.~		50%

출처: 財務省, 「平成28年度 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 12月 24日, p. 41, 재구성

- 이외에 법인세와 관련하여 특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선택 폐지, 세제혜택의 일몰에 따른 종료,

중소기업 접대비 특례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건물부속설비 및 구조물에 대해 적용되던 가속상각법을 폐지하고 정액법을 적용하도록 함
  - 다만, 광업용자산은 기존의 생산량 비례법 적용 가능
- 생산성향상시설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sup>20)</sup>를 기한 연장하지 않고 2017년 일몰시키기로 함
-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산정 특례<sup>21)</sup>를 2년 연장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개시되는 사업연도까지 적용함

나. 소비세

- 소비세율을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2단계 세율로 구분함
  -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8%의 경감세율을 2017년 4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함
    - 일본은 2017년부터 소비세 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예정되어 있음<sup>22)</sup>
  - 경감세율은 주류를 제외한 음식료품과 전기구독계약이 체결된 주 2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에 적용됨

〈표 8〉 소비세율

	현행	2017.4.1.~
소비세율	8% (단일세율)	8% (경감세율) 10% (표준세율)

출처: 財務省, 「平成28年度 税制改正の大綱」, 平成27年 12月 24日, p. 61, 재구성

20) 「조세동향」 13-10호 참조

21) 「조세동향」 13-02호 참조

22) 「조세동향」 15-01호 참조



#### 다. 국제조세

- OECD BEPS Action 13에 따라 이전가격 관련 문서화 보고를 도입함
  - 다국적기업 및 이에 속한 법인 등은 국가별 보고, 사업개황 보고(마스터파일), 독립기업거래가격 산정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국가별 보고, 마스터파일은 2016년 4월 1일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 로컬파일은 2017년 4월 1일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관련 문서를 7년간 보존하도록 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 주요국의 재정동향

### EU

- EU 집행위원회, EU 접경 지역의 사회 ·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10억유로 투자 발표(2015.1.7.)<sup>1)</sup>
  - 접경 지역 협력 프로그램(cross-border cooperation programmes)의 일환으로, EU 주변국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접경 지역의 조화로운 지역 협력을 목표
  - 재원은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유럽인근국지원기금(European Neighbourhood Instrument)으로 충원
  - EU 회원국을 포함하여 30개국이 참여
    - (EU 회원국) 불가리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헝가리, 슬로바키아
    - (주변국) 아르메니아,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튀니지, 노르웨이, 터키
  - 참여국은 중소기업 진흥, 문화, 환경 및 기후변화, 빈곤 퇴치, 교육 및 연구, 에너지, 접근성, 국경관리 중 우선순위를 4개까지 설정

• (예시: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하천청소 사업) 인재(man-made disasters) 예방 협력을 강화하여 다뉴브 강 유역의 생태학적 가치를 보존하는데 380만유로를 투자

- EU 집행위원회, 벨기에 초과이익세제의 위법성 결정(2015.1.11.)<sup>2)</sup>
  - 벨기에는 2005년부터 ‘초과이익’세제(“Excess Profit” tax scheme)<sup>3)</sup> 시행을 통해 35곳 이상 다국적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축소를 허용해 옴
  - 집행위는 심층검토를 통해 이 같은 특혜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여 벨기에 법인세제의 정상적 관례와 불합치하고 EU 보조금법의 정상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위배된다고 결정
  - 집행위는 벨기에 정부에 초과이익세제를 중지하고 불공정 이득에 따른 약 7억유로 규모의 추정금을 환수할 것을 명령
  - 집행위는 2013년부터 회원국들의 조세예규(tax ruling)를 검토하고 있으며,<sup>4)</sup> 1월 27일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1)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6\\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6_en.htm), 2015.1.7.  
 2) 출처: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42\\_en.htm](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42_en.htm), 2015.1.11.  
 3) 벨기에는 다국적기업이 규모의 경제, 평판, 수요공급량, 신시장 접근 등의 효과에 기인하여 가상의 독립기업의 평균 이익보다 ‘초과이익’을 얻는다고 간주하고 이에 대해 비과세. 실제로, 특정 다국적기업들은 이윤의 50% 이상, 많게는 9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음  
 4) 집행위는 2015년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가 각각 피아트와 스타비스에 세제특혜를 주었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아일랜드(애플), 룩셈부르크(아마존, 맥도날드) 등의 심층검토를 수행 중



IMF

- IMF, 가나 경제조정프로그램<sup>5)</sup> 2차 검토 결과 발표 및 1억 1400만달러 분할금 지급 승인(2016.1.13.)<sup>6)</sup>
  - (평가)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정책제언) 정부는 2016년에 재정건전화를 더욱 강력하게 지속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강력한 지출 제한을 시행해야 함
    - 공무원 임금에 대한 예산 제한, 재량지출 조정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세수기반 확대, 납세 순응(tax compliance) 강화, 공공재정 관리 강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 (지원내용) 가나는 1억 1400만달러(8,302만 SDR)의 분할금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누적 지원금은 3억 4370만달러(2억 4907만 SDR)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감소

- (기여도) OECD의 GDP 성장률 기여도는 민간 소비가 0.4%p로 가장 높고, 정부소비와 투자가 각각 0.1%p였으나 순수출은 0, 재고 증감은 -0.1%p로 나타남
- (G7 국가) G7 국가의 GDP 성장률 기여 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남
  - 2015년 3분기에 미국, 독일, 일본은 민간소비가 GDP 성장을 주도한 반면 캐나다는 순수출이,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재고 증가가 GDP 성장을 주도



OECD

- OECD, 2015년 3분기 OECD 국가 GDP 성장률의 기여도 발표(2016.1.12.)<sup>7)</sup>
  - (OECD 전체) 민간소비가 2015년 3분기 OECD GDP 성장률의 주요한 기여요인
    - (성장률) OECD 전체 국가의 2015년 3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0.5%로 전분기 대비 0.1%p

5) 2015년 4월 3일, 가나는 3년 동안 9억 1800만달러(6억 6420만 SDR)를 3년 동안 지원받기로 승인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5/pr15159.htm>)

6) IMF: <http://www.imf.org/external/np/sec/pr/2016/pr1607.htm>

7) 출처: OECD, <http://www.oecd.org/std/na/contributionslogdpgrowththirdquarter2015quarterlynationalaccountsoecd.htm>


〈표 1〉 GDP 성장률 기여도

(단위: %p)

		민간소비	정부소비	총고정 자본형성	순수출	재고증감	GDP 성장률(%)
OECD 전체	Q2 15	0.3	0.1	0.2	0.1	-0.1	0.6
	Q3 15	0.4	0.1	0.1	0.0	-0.1	0.5
캐나다	Q2 15	0.3	0.1	-0.4	0.3	-0.4	-0.1
	Q3 15	0.2	-0.1	-0.2	1.0	-0.3	0.6
프랑스	Q2 15	0.0	0.1	0.0	0.4	-0.5	0.0
	Q3 15	0.2	0.1	0.0	-0.7	0.7	0.3
독일	Q2 15	0.1	0.1	-0.1	0.6	-0.3	0.4
	Q3 15	0.3	0.2	-0.1	-0.4	0.2	0.3
이탈리아	Q2 15	0.2	-0.1	0.0	0.0	0.2	0.3
	Q3 15	0.2	0.1	-0.1	-0.4	0.3	0.2
일본	Q2 15	-0.3	0.1	0.0	-0.2	0.3	-0.1
	Q3 15	0.2	0.1	0.1	0.1	-0.2	0.3
영국	Q2 15	0.6	0.2	0.3	1.6	-2.2	0.5
	Q3 15	0.5	0.1	0.1	-1.0	0.7	0.4
미국	Q2 15	0.6	0.0	0.3	0.0	0.0	1.0
	Q3 15	0.5	0.0	0.2	-0.1	-0.2	0.5

주: Contributions may not sum to GDP growth due to rounding  
출처: OECD Quarterly National Accounts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캐나다**

1. 기타

- 통계청, 2015년 3분기 재정통계(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발표(2015.1.11.)<sup>8)</sup>
  - 캐나다 통계청은 캐나다 정부 모든 부문의 IMF 기준 재정통계(GFS)를 발표, 정부 부문에는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캐나다 및 퀘벡 연금 제도를 포함

- FY2015 3분기 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약 1,884억캐나다달러
- FY2015 3분기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1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약 1,943억캐나다달러

8) 캐나다 통계청, <http://www.statcan.gc.ca/daily-quotidien/160111/dq160111a-eng.htm>



〈표 2〉 캐나다 2015년 3분기 재정통계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2014			2015		
	Q2	Q3	Q4	Q1	Q2	Q3
수익(Revenue)	189,463	187,352	186,933	194,916	192,594	188,439
비용(Expense)	187,792	187,688	192,181	200,860	192,564	194,307
총운영수지(Gross operating balance)	17,845	15,894	11,091	10,780	16,733	11,132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	1,671	-336	-5,248	-5,944	30	-5,868
비금융자산 순취득(Net acquisition of nonfinancial assets)	-3,213	5,227	4,321	-843	1,792	5,358
순융자/순차입(Net lending or borrowing)	4,884	-5,563	-9,569	-5,101	-1,762	-11,226
금융자산 순취득(Net acquisition of financial assets)	47,752	10,538	2,431	31,114	34,588	30,601
부채의 순부담(Net incurrence of liabilities)	43,265	15,664	12,170	35,770	36,142	41,611
통계적 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397	-437	170	-445	-208	-216
지출(Total expenditure)	184,579	192,915	196,502	200,017	194,356	199,665
순자산(Net worth)	-8,036	83,074	-61,302	-108,101	8,733	-119,253
비금융자산(Non-financial Assets)	921,662	1,008,428	892,961	872,551	958,957	841,773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1,181,152	1,196,554	1,212,867	1,246,283	1,293,675	1,323,272
부채(Liabilities)	2,110,850	2,121,908	2,167,130	2,226,935	2,243,899	2,284,298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989,698	-925,354	-954,263	-980,652	-950,224	-961,026

출처: 캐나다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Table 385-0032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프랑스**

1. 기타

- 통계청(INSEE), 2015년 3분기 일반정부 채무 발표 (2015.12.23.)<sup>9)</sup>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015년 3분기 말 일반정부 채무는 2조 1,032억유로로 2분기 대비 22억유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전분기 대비

0.7%p 감소한 96.9%로 나타남  
 - 정부부문별로 전분기 대비 중앙정부 채무(-11억유로)와 지방정부 채무(-16억유로)가 감소하였으며, 사회보장기금 채무(+5억유로)가 증가

9)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40&date=20151223>

〈표 3〉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일반정부 채무

(단위: 십억유로)

	2014 Q3	2014 Q4	2015 Q1	2015 Q2	2015 Q3	
일반정부 채무	2,035.4	2,037.8	2,089.4	2,105.4	2,103.2	
GDP 대비 %	95.3	95.6	97.5	97.6	96.9	
정부부문별						
중앙정부	국가	1,609.6	1,610.2	1,647.3	1,672.7	1,671.6
	중앙행정조직	21.3	22.6	22.1	22.0	22.0
지방정부	180.2	188.2	187.4	186.2	184.6	
사회보장기금	224.4	216.8	232.6	224.5	225.0	

출처: 프랑스 통계청, 2015.12.23.

- 새로운 고령화 대응책 발표(2015.12.29.)<sup>10)</sup>
  - 프랑스 정부는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층 사회 적응 법률(loi relative à l'adaptation de la société au vieillissement)<sup>11)</sup>을 2015.12.28일 공포했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7억유로가 투입될 예정

• (주요 내용)

- 대내외 실버 경제 체인의 형성(주택, 신기술 산업 부문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노인장기요양보험인 개인별자립성수당(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sup>12)</sup>의 재가급여(연 3억 7천 5백만유로) 확대 등으로 보상을 인상(2002년 43% → 2012년 31% → 2016년 36%)\*

\* 프랑스 지방정부협의체인 데파르트망 협의회(ADF: Asssemblée des départements de France)와 긴밀한 협의

에서 준비된 이 법안의 새로운 조치로 인한 비용은 국가에 의해 완전히 보상됨

- 노인의 공공정책 참여기회 확대 등

(자료 수집 및 정리: 하에스터 연구원)

독일

1. 예산·결산 등

- 재무부, FY2015 잠정결산 발표(2016.1.13.)<sup>13)</sup>
  - (재정지출) 2015년 재정지출은 2,993억유로로 기존 지출목표 대비 26억유로 감소
  - (재정수입) 조세수입과 세외수입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3,114억유로 기록, 이는 목표 대비 45억유로 높은 수치이며 재정지출 대비 121억유로 높게 집계
  - 망명신청자 및 난민들을 위한 접수처, 숙소 등에 71억유로의 추가 지원 예상

10) 정부포털, <http://www.gouvernement.fr/action/l-adaptation-de-la-societe-au-veillessement>

11) 고령층 사회 적응 법안은 2014.6.3일 각료회의에 제출되었으며 2015.12.14일 의회가 채택하여 2015.12.28일 공포 및 2016.1.1일 발효

12) 개인별자립성수당(APA)제도는 노인의 자립성을 위해 개인차를 고려한 개인화된 수당이며, 보험료 없이 조세로 재정을 충당

13) 자료: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6/01/2016-01-13-PM03.html>



〈표 4〉 FY2015 결산(잠정)

(단위: 십억유로)

	2015(목표)	2015(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01.9	299.3	-2.6
재정수입	306.9	311.4	4.5
조세수입	280.1	281.7	1.6
세외수입	26.8	29.7	2.9
신규차입	0.0	0.0	-

출처: 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2015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흑자를 기록, 이는 2010년 하반기 전망 대비 0.76%p, 채무제한법<sup>14)</sup> 기준 대비 0.45%p 각각

높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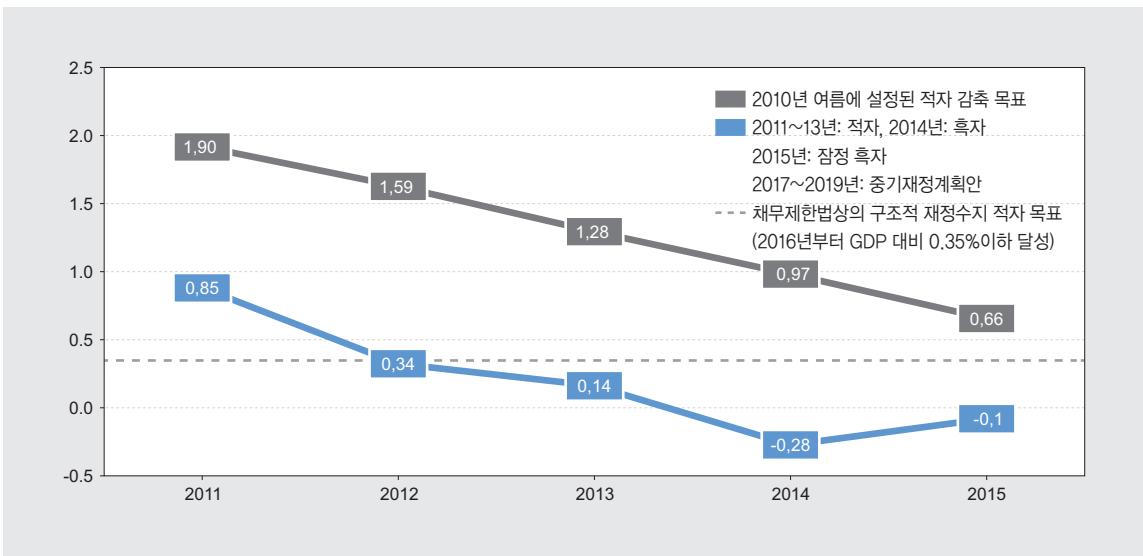
- 최종 결산보고서는 6월 발표 예정

## 2. 기타

- 연방 통계청, 2015년 1-3분기 39억유로 재정흑자 발표(2015.12.29.)<sup>15)</sup>
- 2015년 1~9월의 재정수지 흑자가 39억유로로 집계, 2014년 같은 시기 대비 169억유로 개선
  - 국가전체 재정수입은 9,478억유로로 전년도 대비 5.2% 증가했으며, 재정지출은 9,439억유로로 2.4% 증가

[그림 1]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



출처: 재무부, Vorläufiger Haushaltsabschluss 2015

14) Schuldenbremse(Debt Brake):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에 구조적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함(참고: 「정책분석 14-03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 161)

15) 연방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lungen/2015/12/PD15\\_486\\_71131.html](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lungen/2015/12/PD15_486_71131.html)

- 연방정부의 재정수지 흑자는 56억유로로 2014년 대비 20.7억유로 개선, 주정부 역시 41억유로의 흑자 달성
- 사회보험 재정적자는 31억유로 증가한 67억유로

로 집계

- 연금보험 순차임은 49억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반면 연방고용청(federal employment agency)재정은 148억유로의 흑자 달성

〈표 5〉 1-3분기 재정수지

(단위: 십억유로)

		전체	연방정부	주 정부	기초 자치단체	사회보험
재정지출	2015	943.9	258.4	258.8	161.8	430.1
	2014	921.8	265.1	248.9	155.0	410.2
재정수입	2015	947.8	264.0	262.9	162.7	423.5
	2014	901.0	249.9	249.4	152.3	406.6
재정수지	2015	3.9	5.6	4.1	0.9	-6.7
	2014	-20.8	-15.1	0.6	-2.7	-3.6

출처: 독일 연방 통계청(2015.12.29)

〈자료 수집 및 정리: 엄동욱 연구원〉

● **일본**

1. 예산·결산 등

■ FY2016 정부예산안 발표(2015.12.25.)<sup>16)</sup>

- (주요내용) 일본 정부는 경제살리기와 재정건전화 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FY2016 세출총액 96조 7,218억엔 규모의 예산을 편성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
  - 아베총리의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해 「희망출산율 1.8」 및 「개호(간병)이직제도」와 관련된 육아 지원과 개호분야,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추진

- ☞ 보육시설 정원을 2017년도 말까지 기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
- ☞ 보육서비스 물량 확대를 통해 45만명(사회보장세금 일체개혁으로 재원충당 356억엔), 기업주도형 보육시설의 정비를 통해 5만명(사업주 각출금 인상을 통한 재원충당 835억엔) 확대 예상
- ☞ 간병 때문에 이직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휴직자에게 지급되는 개호휴직급여를 육아 휴직 급여수준으로 인상(40→67%)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사회보장관계비는 「경제·재정 재생계획」에 따라 4,400억엔 증가로 억제해 책정

16) 재무성, 「平成28年度予算フレーム」, 2015.12.25.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eiuan28/02.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eiuan28/02.pdf)



☞ 의료·개호 등 사회보장관계비는 31조 9,738억엔을 기록, 이 중 고령화로 인한 연금 약 11조, 개호 약 3조엔을 책정

- 사전 방재대책, 노후대책 추진 등을 통해 강한 국가를 추진
- 외교·방위 예산 확대
-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과학기술기반 강화를 추진
- 동일본 대지진 부흥을 가속

〈재정건전화〉

- 일반세출 증가를 경제·재정 재생계획 기준에 따라 4,700억엔으로 억제해 편성
- 신규 국채발행액은 34.4조엔으로 전년도 대비 6.6% 감소하면서 국채의존도는 리먼사태(2008년) 이전 수준인 35.6%로 회복

• (세입) FY2016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96조 7,218억엔으로 편성

- (조세 및 인지수입) 경제성장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증가 전망에 따라 전년 대비 5.6% 증가한 57조 6,040억엔
- (기타수입) 전년 대비 5.4% 감소한 4조 6,858억엔
- (공채금) 전년 대비 6.6% 감소한 34조 4,320억엔

• (세출) FY2016 세출규모는 전년 대비 0.5% 증가한 96조 3,420억엔으로 편성

- (국채비) 전년대비 0.7% 증가한 23조 6,121억엔
-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전년 대비 0.3% 증가한 73조 1,097억엔

☞ 지방교부세교부금은 전년 대비 1.6% 감소

한 15조 2,811억엔으로 이는 리먼사태 이후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지방교부세 특별조치를 폐지에 따른 방침

• FY2016 분야별 세출내역

- (사회보장관계비) 「경제·재정 재생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4,412억엔<sup>17)</sup> 증가로 억제한 31조 9,738억엔 편성

☞ 사회보장관계비는 「2016년도 예산 개산요구의 기본방침」에 따라 연간 6,700억엔에서 5천억엔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1,700억엔 삭감한다는 방침

☞ 2016년도 진료수가 개정에서 의사·약사의 기술료 등에 해당하는 '본체'는 0.49%(498억엔) 인상, 약가는 1.22%(1,247억엔) 인하

- (공공사업관계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5조 9,737억엔

☞ 국지적 호우를 대비한 방재대책, 인프라노후화 대책 추진

☞ 물류네트워크의 정비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발

17) 「경제·재정 재생 계획」의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예산의 임시지출의 영향으로 인한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 4,997억엔

〈표 6〉 FY2016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단위: 억엔, %)

구분	FY2015(당초)	FY2016 예산	증감액	증감율
[세입]				
1. 조세 및 인지수입	545,250	576,040	30,790	5.6
2. 기타 수입	49,540	46,858	-2,681	-5.4
3. 공채금 <sup>1)</sup> (국채발행)	368,630	344,320	-24,310	-6.6
(1) 공채금	60,030	60,500	470	0.8
(2) 특례공채금	308,600	283,820	-24,780	-8.0
합계	963,420	967,218	3,799	0.4
[세출]				
1. 국채비	234,507	236,121	1,614	0.7
2. 기초적재정수지대상경비	728,912	731,097	2,185	0.3
(일반세출)	573,555	578,286	4,731	0.8
(사회보장관계비)	315,326	319,738	4,412	1.4
(사회보장관계비 이외)	258,229	258,549	319	0.1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sup>2)</sup>	155,357	152,811	-2,547	-1.6
합계	963,420	967,218	3,799	0.4

주: 1.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 공채의존도 35.6%(2015년 당초 38.3%)

2)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은 지방세수 증가 등을 반영

출처: 재무성, 「平成28年度予算フレーム」, 2015.12.24.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eituan28/03.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eituan28/03.pdf)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eituan28/02.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eituan28/02.pdf)



〈표 7〉 FY2016 주요분야별 일반세출 내역

(단위: 억엔, %)

구분	FY2015	FY2016	증감액	증감률
	(A)	(B)	(B-A)	(%)
사회보장관계비	315,326	319,738	4,412	1.4
문교 및 과학진흥비	53,584	53,580	-4	-0.0
(과학기술진흥비)	12,857	12,929	72	0.6
연금관계비	3,932	3,421	-511	-13.0
지방교부세교부금	155,357	152,811	-2,547	-1.6
방위관계비	49,801	50,541	740	1.5
공공사업관계비	59,711	59,737	26	0.0
경제협력비	5,064	5,161	97	1.9
중소기업 산업대책비	1,856	1,825	-31	-1.7
에너지대책비	8,985	9,308	323	3.6
식료안정공급관계비	10,417	10,282	-135	-1.3
기타 경비	61,379	61,193	-185	-0.3
예비비	3,500	3,500	-	
합계	728,912	731,097	2,185	0.3

주: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재무성, 「平成28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5.12.24.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eiuan28/01.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6/seiuan28/01.pdf)

〈표 8〉 FY2016 경제지표

(단위: %)

구분	FY2012(실적)	FY2013(실적)	FY2014(실적)	FY2015(실적전망)	FY2016(전망)
명목GDP 성장률	0.0	1.7	1.5 (0.1)	2.7	3.1
실질GDP 성장률	0.9	2.0	-1.0	1.2	1.7
소비자물가지수(변화율)	-0.3	0.9	2.9 (0.9)	0.4	1.2
완전실업률	4.3	3.9	3.5	3.3	3.2

주: 1. 2015년도 및 2016년도는 「FY2016년도 경제 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자세」(2015년 1월 12일 각료회의 승인)에 따름

2. 2014년도 명목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지수의 괄호안의 계수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영향 제외한 계수임

출처: 재무성, 「平成28年度予算のポイント」, 2015.12.24.

- 재무성, 경기부양을 위한 3.3조엔 규모의 FY2015 추가경정예산을 발표(2015.12.18.)<sup>18)</sup>
  - 일본정부는 전년도 예산잉여분(약 1.6조엔)외에 2015년도 세수증가분과 예산감축분 등을 재원으로, 3.3조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 (1억 총활약사회) 「1억 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1조 1,646억엔을 편성하였으며, 아베노믹스 제2의 화살인 「희망출산율 1.8」과

제3의 화살인 「개호이직제로」로 3,951억엔, 저소득 고령 연금수급자에게 현금 3만엔을 지원하는 임시복지금으로 3,624억엔을 편성  
 - TPP 국내대책 예산에 대해 자민당 의원들로부터의 세출확대가 요구되었으나, 일본정부는 3,400억엔 규모로 억제<sup>19)</sup>

〈표 9〉 FY2015 추경예산 프레임

(단위: 억엔)

세출		세입	
1. 「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긴급 대책	11,646	1. 세수	18,990
■ 희망출산율 1.8 대책(제2의 화살) 및 개호(간병)관련 이직률 제로(제3의 화살)	3,951		
■ 아베노믹스의 과제인 소비회기와 안심사회보장(연금생활자 지원 임시복지 급부금)	3,624		
■ 투자촉진 · 생산성 향상	2,401		
■ 지방창생(해외진출 전략 지원, 외국인 유치 환경정비 등)	1,670		
2. TPP관련 정책 실현을 위한 관련 경비	3,403	2. 세외수입	-3,466
■ 농림수산업의 체질강화 대책	3,122		
■ TPP를 통한 강한 경제의 실현(외국인 직접투자 촉진 등)	280		
3. 재해복구 대응 경비	5,169	3. 전년도잉여금수입	22,136
4. 부흥의 가속화 등	8,215		
■ 2014년도 결산잉여금 중 일부를 활용한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회계 전입	7,935		
■ 폐수 · 오염수 대책사업	156		
■ 원자력 발전소 주변 방재대책	124		
5. 기타 긴급과제에 대한 대응 경비	3,037	4. 공채금	-4,447
■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	2,285		
■ 중소기업자 · 농림어업인 지원	752		
6. 기타 경비	3,560		
소계	35,030		
7. 지방교부세교부금	12,651		

18) 재무성, 「平成27年度補正予算フレーム」, 2015.12.18.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5/hosei271218.html](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15/hosei271218.html)

19) 주 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주간경제동향



〈표 9〉의 계속

(단위: 억엔)

세출		세입	
8. 기본경비 감액	-14,467		
(1) 국채비	-13,343		
(2) 기타	-1,124		
합 계	33,231	합 계	33,231

- 주: 1. 일반회계 세출(1~6)은 35,030억엔이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더하면 47,680억엔이 됨  
 2. 계수는 반올림하고 있기 때문에 끝수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공채금의 경우 건설국채를 증액시키고 적자 국채를 감액  
 4. 동일본대지진부흥특별회계에서 제염사업 추가 783억엔, 후쿠시마2시읍면 재해사업자 자립지원 228억엔 등을 계상  
 5. TPP관련 정책 실현을 위한 관련 경비는 지방창생 사업 1,472억엔을 포함하면 4,875억엔

출처: 재무성, 「平成27年度補正予算フレーム」, 2015.12.18.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5/sy271218/hosei271218a.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5/sy271218/hosei271218a.pdf)

[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5/sy271218/hosei271218c.pdf](http://www.mof.go.jp/budget/budger_workflow/budget/ty2015/sy271218/hosei271218c.pdf)

〈자료 수집 및 정리: 최경진 연구원〉

# 정책흐름



-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마련 및 통보
-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본격 추진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

– 공공기관이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선도 –

\* 본 자료는 2016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총 2,700명 수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 추진으로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선도

- 정부는 상시·지속적이고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다.
- 이러한 비정규직 고용개선의 일환으로 총 2,732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① LH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114개 기관 1,881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 ② 서울대학교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52개 기관 851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을 기존의 정규직과 동일한 보수·직급체계를 부여하여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정규직 전환심의 결과

(단위: 명)

분야	합계	비정규직 → 정규직	정규직내 처우개선
합계(146개)	2,732	1,881	851
공기업(11개)	249	229	20
준정부기관(44개)	1,280	762	518
기타공공기관(91개)	1,203	890	313

- 이번 전환계획과 함께, 상시·지속 업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활용하도록 하고
  -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활용하도록 하는 등 정규직 위주의 인력운용을 통해, 비정규직이 과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기여함과 함께
  -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주요 반영기관 현황

**(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단위: 명)

기관명	반영	반영 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140	건설임대 공급·운영 및 분양전환 등 업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40	보건직, 요양보호사 등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5	시험평가, 시험인증 관련 연구 인력
부산대학교병원	85	간호, 보건, 행정, 원무 수행 인력 등
국민연금공단	72	기초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등 고유업무 인력
한국환경공단	64	자동차 환경인증, 수질오염 방제체계 운영인력 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콜센터 인력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54	공원자원 보호·복원, 안전관리 등 고유업무 인력
근로복지공단	54	물리치료사, 퇴직연금 운용요원 등
승강기안전관리원	49	안전검사·교육, 기술컨설팅 인력 등

**(2) 정규직 내 처우개선**

(단위: 명)

기관명	반영	반영 사유
서울대학교병원	66	간호, 보건, 사무 인력
국민체육진흥공단	26	경륜, 경경, 경주운영 업무, 호텔운영 등 인력
국제방송교류재단	50	방송제작, 홍보, 영업, 관리행정, 운전 인력
특허정보진흥센터	50	선행기술 조사, 특허분류 업무 인력
소상공인진흥재단	43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운영 등 인력
노사발전재단	40	생애설계, 재취업 상담·교육, 구직알선 등 인력
우체국금융개발원	39	보험심사, 보험조사, 민원처리 등 인력
시설안전공단	30	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 건설공사 안전관리 등
창업진흥원	23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사업화 지원 등 인력
한국고용정보원	14	정보시스템 운영, 연구사업 관리, 행정 등 인력

#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마련 및 통보

\* 본 자료는 2016년 2월 16일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에서 발표한 「20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 마련 및 통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구축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확보 추진

- 처음으로 국고보조금 전체에 대한 집행정보의 체계적 확보·분석을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조기 차단 및 '17년 시스템 개통 시부터 통합관리망 활용성 극대화\* 기대

\* 유사사업 검증, 수급이력조회 및 정보공개 등에 활용

■ 정부는 '17년 7월 개통을 목표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추진 중이며,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우선 '16년도 전체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정보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 현재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중 보조사업자·수급자, 지출증빙 등의 정보는 연말에 정산보고서 형태로 기관별 분산·수작업 관리되고 있어,
- 보조금 집행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곤란하고, 부정수급 확인을 위한 실지조사 시 행정력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보조금 집행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관리망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체계적인 집행정보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은 2.16.(화),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하였다.

\*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의 보조금 집행·관리 담당자 150여명 참석

- 「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에는
  - 관리대상사업과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집행정보 확보 및 제출방법, 유형별 담당자의 임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으며,

\* i) 보조금 교부이력, ii) 보조금 수입정보, iii) 보조사업자 정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iv) 보조금 수령·수급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v) 지출증빙(전자세금계산서, 계좌·신용카드 등), vi) 지출비목 정보 등

-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각 보조사업자는 동지침에 따라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집행정보가 체계적으로 확보되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통 이전에도 지출증빙 정보(전자세금계산서 일련번호, 카드승인번호 등)를 활용하여

- 국세청 등과 협조를 통해 허위증빙·과다청구 등 지출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보조금 부정 조기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확보된 보조금 집행정보를 이용하여 통합망 개통시점부터 유사사업 검증, 수급이력 조회 등 체계적 분석과 정보공개에 활용함으로써 시스템 구축효과의 조기 구현이 기대된다.

- 전체 국고보조금의 집행정보에 대한 체계적 수집이 처음 이루어지는 만큼 일선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등의 자료 작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 추진단은 '16년도 집행정보 관리에 관련되는 기관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동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계획이며,
- \* 중앙부처 및 산하 보조사업자 대상 10여회(2월), 지자체

등 10여회(3월)

- 또한, 콜센터 운영\*을 통해 각 보조사업자들로부터 정보입력·관리·제출과 관련된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추후 홈페이지 개설 예정).
- \* 대표번호 1544-88220이며, 기존 dBrain의 사용자 지원센터에서도 금번 '16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정보 작성과 관련한 문의를 동시에 처리할 예정임
- 윤병태 추진단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초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들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 및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였다.

**참고 1**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후의 주요 변화

구분	업무분야	현행	변화('17.7월 이후)
효율적 관리	보조금 예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상 세부사업 단위로 보조금 예산을 관리하고, 상세한 내역은 담당자가 별도 수기 관리</li> <li>*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 기준으로 보조금 예산관리</li> <li>※ 내역사업이란 중앙관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실제의 사업수행단위</li> <li>→ 유사중복사업 검증, 보조사업 전과정의 전산화 위한 기반마련</li> </ul>
	집행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별 별도계좌를 사용하되, 재원별 구분 없이 사용</li> <li>• 보조금 전달 단계별 교부, 집행현황 추적 확인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 전용계좌 도입, 국비, 지방비 등 재원별 관리</li> <li>• 교부·집행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집행실적 저조사업 적시 조치</li> </ul>
	사업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자 공모, 선정 사업관리 수작업 처리</li> <li>• 영수증 등 증빙자료 수작업 관리</li> <li>• 수작업 정산보고서 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관리 온라인화</li> <li>• 국세청, 카드사 등과 연계를 통한 온라인 증빙관리 및 검증</li> <li>• 정산보고서 등 정산업무 자동화</li> </ul>
	수급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 사업별 칸막이식 보조사업 및 수급자 정보 관리</li> <li>* 시스템적 중복수급 파악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부처 수급자 통합 DB 구축, 부처 간 보조사업 및 수급자 정보공유</li> <li>• 보조사업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자격 검증 및 수급이력 검증</li> </ul>
중복·부정 수급 방지	유사·중복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 기관별 각각 다른 보조사업 관리</li> <li>• 담당자의 Eye Check에 의한 사업 중복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관리항목 표준화</li> <li>• 보조금 예산편성 등 각 단계별 유사·중복 사업 검색 기능 제공</li> </ul>
	부정수급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 및 감사 위주의 사후 부정수급 모니터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 징후 모니터링 및 패턴관리로 부정수급 사전 예방</li> <li>• 관계시스템 연계에 의한 자격·증빙·가격 검증으로 사전, 집행, 사후 등 각 단계별 부정수급 상시 모니터링</li> </ul>
대국민 감시 및 서비스	정보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부처별 통계성 정보만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성과 판단이 가능하도록 다각도(부처간, 지역별 등) 비교통계 제공</li> <li>•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정보, 부정 수급자 현황 공개</li> </ul>
	개인맞춤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별 수혜 가능한 맞춤형 보조금 정보 제공</li> <li>• 보조금 수급 신청 및 진행확인 서비스 제공</li> </ul>

**참고 2** 국고보조금 현황

- **(현황)** '16년 기준, 40개 부처, 1,789개 사업, 총 60,3조원

**최근 국고보조금 규모 증가 추이**

(단위: 조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46.5	49.2 (5.8%)	52.5 (6.9%)	58.3 (11.0%)	60.3 (3.4%)
① 지자체	34.2	36.8	40.0	45.1	46.0
② 민간	12.3	12.4	12.5	13.3	14.3

**주요 부처별 국고보조금 현황**

(단위: 억원, 개)

중앙관서명	지자체		민간		합계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사업 수	금액
합 계	840	460,434	949	142,522	1,789	602,956
복지부	117	258,171	124	6,381	241	264,552
농림부	83	41,546	100	24,608	183	66,154
국토부	157	43,719	29	17,799	186	61,518
환경부	111	44,079	15	806	126	44,885
문체부	80	16,882	172	20,239	252	37,121
산자부	27	6,473	72	16,085	99	22,558
고용부	20	2,148	38	17,425	58	19,573
해수부	63	6,719	69	6,321	132	13,040
산림청	31	9,588	14	732	45	10,320
통일부	2	52	15	8,636	17	8,688
국회	-	-	4	104	4	104
대법원	1	205	4	81	5	286
선관위	-	-	2	881	2	881
민주평통	-	-	3	77	3	77

주: 일반 부처는 보조금 금액 기준 상위 10개 부처, 헌법기관의 보조금 규모 적시

#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 본 자료는 2016년 2월 1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15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 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입법예고·부처협의(2.16~2.26, 10일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3.4) 예정

첨부 '15년 시행규칙 개정내용

## I. 주요 개정내용

### 1.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관련 세부사항 규정 (법인규칙 §27의 2·소득규칙 §42 신설)

**【시행령 개정내용】**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등 규정  
(추가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업무용 사용의 범위,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법령 §50의 2·소득령 §78의 3)

- **(적용제외대상 승용차 추가)** 장례서비스업자의 운구용 승용차
- **(업무용 사용 범위)** 거래처 방문, 판촉활동, 회의참석, 출퇴근 등
- **(임차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임차방법별로 구분
  - (리스차량)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 렌트료의 70%

## 2.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추가(소득규칙 §76의 2 신설)

**【시행령 내용】**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유사한 파생상품을 과세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159의 2)

- **(현행)** 국내 파생상품 중 양도세 과세대상 : 코스피200 선물·옵션
- **(개정)** 「미니 코스피200 선물·옵션\*」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  
\*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서, 코스피200 선물·옵션과는 거래단위인 승수(10만원 VS 50만원)만 차이
- **(적용시기)** '16.7.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3. 국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국기규칙 §19의 3, 관세규칙 §9의 3, 부가규칙 §47, 법인규칙 §6, 소득규칙 §23·§57)

- **(현행)**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시 이자율 2.5%\*을 적용  
\*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감산
- **(개정)**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이자율을 1.8%로 인하
- **(적용시기)**
  - ① (국기규칙, 관세규칙) 공포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 ② (부가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③ (법인·소득규칙)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II. 기타 개정내용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소득규칙 §71)
  - **(현행)** 취학·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요건(2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개정)** 특례가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추가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종교인소득 비과세 대상 중 사택제공이익 범위 신설(소득규칙 §10의 2)

**【법 개정내용】** 종교인소득 중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사택제공이익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법 §12)

- **(신설)** 사택제공이익은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차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받는 이익
- **(적용시기)** '18.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재외동포에 대한 거주자 판정시 일시적 입국 입증 방법 규정(소득규칙 §2)

**【시행령 개정내용】** 재외동포가 **非사업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해당 입국기간을 거주 기간에서 제외(일시적 입국사유와 입증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소득령 §4④))

입국 사유	입증 방법
단기 관광	• 관광시설 이용에 따른 입장권, 영수증 등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질병 치료	• 「의료법(§17)」상 진단서, 증명서, 처방전 등
병역 이행	• 병역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병역법 시행규칙(§8)」상 병적증명서 등
기타	• 친족 경조사 등 비사업·비업무 목적으로 입국한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의 범위 합리화(법인규칙§46의 3)

- **(현행)** 임대하는 건물은 업무용에서 제외
  - \* 부동산임대업·건설업 법인이 임대하는 경우는 업무용에 포함
- **(개정)** 종합소매업 법인\*의 영업장 임대도 업무용에 포함
  - \*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시 정상 이자율 기준 인하(법인규칙 §43)

- **(현행)** 특수관계자에 무상·저리로 자금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 이자율은 6.9% 적용

- **(개정)**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해 당좌대출 이자율 4.6%로 인하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
  - \* 다만, 공포일 이전 약정을 체결한 대여금의 경우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 이자율 적용

-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 취득 주택을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법인규칙 §26)

- **(현행)** 법령상 사용이 제한·금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
  - \* 소유권에 관한 소송중으로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 소송 등 민원에 따라 취득한 공장부지 인접 부동산 등
- **(개정)** 전기사업자가 「송·변전 주변지역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를 부득이한 사유에 추가
-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국내사업장·비거주자 간주 특례 적용대상 규정(조특규칙 §47의 3)

**【법 개정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운영으로 수취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조특법 §104의 28)

- **(신 설)** 경기시간·점수 측정업체,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등 외국법인, 올림픽방송제작사·독점방송중계권자 등 외국법인 소속 임직원
- **(적용시기)** '16.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및 법령화(상증규칙 §10의 5, §19의 2 신설)

- **(신 설)**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조정\*하고, 고시로 운용 중인 이자율을 시행규칙으로 법령화

\* 금전 무상대출 시 적정 이자율(§10의 5)

: [현행] 8.5% → [개정] 4.6%

정기금 수급권 평가 시 이자율(§19의 2)

: [현행] 6.5% → [개정] 3.5%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기업상속공제 공제한도 명확화(상증규칙 §5)

- **(신 설)**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기업으로 영위한 경우 기업상속공제 공제한도\*

#### 적용방법 명확화

\* 기업영위기간 10~15년: 200억원, 15~20년: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 (총 한도) 기업 영위기간이 가장 긴 기업의 한도

- (개별기업별 한도) 기업별 기업 영위기간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되, 영위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5 국제조세조정법 시행규칙

-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 선정기준 명확화(국조규칙 §6의 1)

**【시행령 개정내용】** 국제거래통합보고서 제출대상자를 ①&②를 만족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으로 규정(국조령 §21의 2)

① 매출액 1,000억원 초과

②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500억원 초과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 산출방법 등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

- **(신 설)** 제출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는 재화·용역거래 및 대여·차입거래 금액의 합계

- **(적용시기)** '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 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 추가(농림특례규칙 §7②)
  - (현행) 어업용 트랙터 등 5종의 어업기계에 대해 면세유 공급
  - (개정) 어망세척기를 추가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의 보유현황 신고 주기 단축(농림특례규칙 §8의 2)
  - (현행) 면세유 공급대상인 어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 보유현황을 2년 주기로 면세유류관리기관(수협 등)에 신고
  - (개정) 신고주기를 1년으로 단축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보유현황 신고 분부터 적용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본격 추진

\* 본 자료는 2016년 2월 11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본격 추진」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 기획재정부는 2016. 2. 11.(목)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1차)」를 개최
- ◇ 향후 경영평가 등 인센티브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매일 점검회의(2차관 주재)를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

■ 기획재정부는 2016. 2. 11.(목)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8개 부처) 및 공공기관 부사장(10개 기관) 등 참석

- 이번 회의는 지난 1.28일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 성과연봉제 확대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효율적 확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송언석 차관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하여 각 부처와 공공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에 강한 추진의지를 갖고 조속히 확대·도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 공공기관은 내부 동기부여가 미흡하고 업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성과연봉제 확대를 통한 조직 문화의 혁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사 모두 대응적 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공기업은 금년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은 금년 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완료될 수 있게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매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제2차관 주관)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 점검, 애로사항 해소 등 조치할 계획이며,
-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따른 경영평가 등의 인센티브 방안 등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 세계잉여금 4년 만에 흑자로 전환(2.8조원) -

\* 본 자료는 2016년 2월 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적자에서 2015회계연도 흑자로 전환(2.8조원)

- 총세입 328.1조원, 총세출 319.4조원, 결산상 잉여금 8.7조원 발생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의 유진희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마감 결과 총세입은 328.1조원, 총세출은 319.4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7조원이며, 이월 5.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조원 흑자로 기록하였다.

### '15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예산(A)	총세입(B)	세입초과(B-A)	총세출(C)	결산상잉여금(B-C)	이월(D)	세계잉여금(B-C-D)	불용
합계	328.0	328.1	0.1	319.4	8.7	5.9	2.8	10.8
일반회계	262.5	261.9	△0.6	257.9	4.1	1.5	2.5	5.9
특별회계	65.5	66.2	0.7	61.5	4.7	4.4	0.3	4.9

주: 합계 금액과 구성항목별 합계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입은 328.1조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29.4조원 증가하였고, 예산 대비 0.1조원 초과하였다.
- 국세수입은 217.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4조원 증가, 예산 대비 2.2조원 초과\*
  - \* 소득세(1.9조원), 법인세(1.0조원), 증권거래세(0.8조원), 부가세(△1.3조원) 등
- 세외수입은 110.2조원으로 전년 대비 17.0조원 증가, 예산 대비 2.0조원 부족\*
  - \* 교육부 입학금·수업료의 대학회계 전환(△1.5조원), 과징금 및 벌과금(△0.7조원) 등

### '15회계연도 총세입 세부내용

(단위: 조원)

	국세수입			세외수입			계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일반회계	208.8	210.8	2.1	53.7	51.1	△2.6	△0.5
특별회계	7.0	7.1	0.1	58.6	59.1	0.5	0.6
계	215.7	217.9	2.2	112.3	110.2	△2.0	0.1

주: 차이 금액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출은 예산현액\* 336.1조원 중 319.4조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27.9조원 증가하였다.
- \* 예산현액(336.1조원)=예산액(328.0조원)+전년도 이월액 등(8.1조원)

- 이월은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 감소하였다.
  - 일반회계는 1.5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4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 감소
- 세계잉여금\*은 2.8조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2.5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0.3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 \*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차년도 이월액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15년에 흑자로 전환
    - \* 세계잉여금(조원)  
: ('12) △0.1 → ('13) △0.8 → ('14) △0.8 → ('15) 2.8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2.5조원)은 국가재정법 (§90)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 예정(특별회계 세계잉여금 0.3조원은 자체세입 조치)

- 불용\*은 10.8조원으로 전년(17.5조원) 대비 6.7조원 감소하였다.
  - \* 불용=예산현액-총세출-이월
  - 일반회계는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9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감소
    - \* 일반·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기준 불용은 9.7조원임
  - '13년(18.1조원) 및 '14년(17.5조원)에는 세입 부족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세입 부족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15년 불용액은 '13~'14년에 비해 대폭 감소
-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붙임 1 '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회계결산과)**

- 총세입 328.1조원에서 총세출 319.4조원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조원(일반회계 25,276억원, 특별회계 2,862억원)

\* 세계잉여금=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이월

(단위: 억원)

구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잉여금 (D=B-C)	이월 (E)	세계잉여금 (D-E)
합계	3,280,192	3,281,284	1,092	3,193,907	87,377	59,239	28,138
(2014)	3,096,925	2,987,388	△109,536	2,915,114	72,275	79,893	△7,618
일반회계	2,624,745	2,619,383	△5,362	2,578,816	40,567	15,291	25,276
(2014)	2,472,032	2,392,256	△79,776	2,363,607	28,649	27,685	964
특별회계	655,447	661,901	6,454	615,091	46,810	43,948	2,862
(2014)	624,893	595,132	△29,761	551,507	43,626	52,208	△8,582

주: 일반회계: 52개 중앙관서(조달청,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18개

- **(총세입)** 328.1조원으로 예산(328.0조원) 대비 0.1조원 초과징수
  - **(일반회계)** 예산 대비 0.5조원 부족한 261.9조원 징수, 전년 대비 22.7조원 증가
    - \* 국세수입(2.1): 소득세 1.9, 법인세 1.0, 증권거래세 0.8, 부가세 △1.3 등
    - 세외수입(△2.6): 예수금 △2.9, 입학금 및 수업료 △1.5, 전년도 이월금 2.8 등
  - **(특별회계)** 예산 대비 0.6조원 초과한 66.2조원 징수, 전년 대비 6.7조원 증가
    - \* 국세수입(0.1): 농특세 0.1 등
    - 세외수입(0.5): 전년도 이월금 3.1, 융자원금회수 0.5, 우정사업수입 △1.1 등

- **(총세출)** 319.4조원으로 예산현액(336.1조원) 대비 95.0% 집행
  - **(일반회계)** 예산현액(265.3조원\*) 대비 97.2%인 257.9조원 지출
    - \* 예산액(262.5조원), 전년도이월액(2.8조원) 등
  - **(특별회계)** 예산현액(70.8조원\*) 대비 86.9%인 61.5조원 지출
    - \* 예산액(65.5조원), 전년도이월액(5.3조원) 등

- **(이월·불용)** 이월 5.9조원, 불용 10.8조원으로 전년 대비 이월은 2.1조원 감소, 불용은 6.7조원 감소

(단위: 억원)

구분	이월			불용		
	2015년 (A)	2014년 (B)	증감 (A-B)	2015년 (C)	2014년 (D)	증감 (C-D)
합계	59,239	79,893	△20,654	107,651	174,918	△67,267
일반회계	15,291	27,685	△12,394	58,512	108,679	△50,167
특별회계	43,948	52,208	△8,260	49,139	66,239	△17,100

주: 이월: (일반회계) 방위사업청(0.5), 국방부(0.5), 국민안전처(0.1)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2.0), 지역발전(1.4), 교통시설(0.6) 등  
 불용: (일반회계) 교육부(1.6), 기재부(1.5), 국방부(0.7)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1.3), 우체급여금(1.0), 에너지및자원사업(0.6) 등

- **(세계잉여금)** 2.8조원(일반회계 25,276억원, 특별회계 2,862억원)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2.5조원)은 국가재정법 (§90)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
    -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붙임 2 '1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조세분석과)

### 1 2015년 국세수입

- '15년 국세수입 실적 : 217.9조원
  - '15년 추경 세입예산(215.7조원) 대비 2.2조원 (1.0%) 초과
  - '14년 국세수입 실적(205.5조원) 대비 12.4조원 (6.0%) 증가

(단위: 조원, %)

구분	'14년 실적	'15년		'14년 실적 대비		'15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205.5	215.7	217.9	12.4	6.0	2.2	1.0
일반회계	199.3	208.8	210.8	11.5	5.8	2.1	1.0
특별회계 <sup>1)</sup>	6.2	7.0	7.1	0.9	14.0	0.1	1.4

주: 1) 주세(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5년 세수실적 개선 원인
  - ①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② 세법개정 효과\*\*, ③ 세정지원 노력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
    - \*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 \*\*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 2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전년대비)

### <증가 세목>

- 양도소득세 : +3.8조원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기인
    - \* 부동산 거래량(천건): ('14)5,783 → ('15)6,823 (+18.0%)
  
- 법인세 : +2.4조원
  - 법인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사전 성실신고 지원 효과 등으로 증가
    -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13)63.8 → ('14)56.4 (<Δ11.6%)
    - \*\*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1%p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16 → 17%p) 등
  
- 개별소비세 : +2.4조원
  -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에 기인
    - \* '15년 담배 개별소비세 실적 1.7조원('15년 예산 대비 0.1조원 증가)
    - \*\* '14.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 '15.7월부터 탄력세율 → 기본세율 전환
  
- 근로소득세 : +1.7조원
  -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에 기인
    - \* 상용근로자 수(만명): ('14)1,216 → ('15)1,259 (+3.6%)
    -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만원): ('14.1~11)314.9 → ('15.1~11)324.6 (+3.1%)
  
- 증권거래세 : +1.5조원
  - 증권거래대금 증가\*에 기인
    - \*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조원): ('14)976 → ('15)1,327 (+36.0%)
    - \*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조원): ('14)483 → ('15)874 (+81.1%)

- 종합소득세 : +1.3조원
  -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고실적 개선\* 등에 기인
    - \* 종합소득세 신고과세표준(조원): ('14)101.4 → ('15)119.3 (<+17.6%)

### <감소 세목>

- 부가가치세 : Δ3.0조원
  - 수입 부진\*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감소\*\*에 기인
    - \* 수입액(억달러): ('14)5,255 → ('15)4,368 (<Δ16.9%)
    - \*\* 국내분 부가세(조원): ('14)13.6 → ('15)17.0 (+25.2%)
    - 수입분 부가세(조원): ('14)43.6 → ('15)37.2 (<Δ14.7%)
  
- 이자소득세 : Δ0.4조원
  - 금리 하락\*에 기인
    - \* 3년 만기 회사채금리(%): ('14)2.98 → ('15)2.08 (0.90%p ↓)
    -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14)2.43 → ('15)1.74 (0.69%p ↓)
  
- 관세 : Δ0.2조원
  - 수입 부진\*에 기인
    - \* 수입액(억달러): ('14)5,255 → ('15)4,368 (<Δ16.9%)

**붙임 2** '15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국고과)

(단위: 조원, %)

구 분	'14년 실적	'15년		'14년 실적 대비		'15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국세	205.5	215.7	217.9	12.4	6.0	2.2	1.0
○ 소득세	53.3	58.8	60.7	7.4	13.9	1.9	3.2
• 근로소득세	25.4	27.1	27.1	1.7	6.7	△0.02	△0.1
• 종합소득세	11.5	12.2	12.8	1.3	11.3	0.6	5.1
• 양도소득세	8.0	10.5	11.9	3.8	47.3	1.4	13.2
• 이자소득세	2.9	2.6	2.5	△0.4	△12.9	△0.1	△3.0
○ 법인세	42.7	44.1	45.0	2.4	5.6	1.0	2.2
○ 상속증여세	4.6	5.2	5.0	0.4	9.0	△0.1	△2.2
○ 부가가치세	57.1	55.4	54.2	△3.0	△5.2	△1.3	△2.3
○ 개별소비세	5.6	7.8	8.0	2.4	42.3	0.2	2.3
○ 증권거래세	3.1	3.9	4.7	1.5	49.6	0.8	20.1
○ 인지세	0.7	1.0	1.0	0.2	31.3	-	△3.0
○ 교통에너지환경세	13.4	13.9	14.1	0.6	4.6	0.1	1.0
○ 관세	8.7	8.6	8.5	△0.2	△2.6	△0.1	△0.7
○ 교육세	4.6	5.2	4.9	0.3	5.7	△0.3	△6.1
○ 종합부동산세	1.3	1.3	1.4	0.1	7.0	0.1	9.2
○ 주세	2.9	3.3	3.2	0.4	13.2	-	△0.8
○ 농특세	3.3	3.7	3.8	0.5	14.8	0.1	3.3
○ 과년도수입	4.0	3.6	3.4	△0.6	△15.2	△0.2	△5.3

**붙임 3** '15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국고과)

- **(규모)** 2.8조원\*으로, '1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15년에 흑자로 전환\*\*

\* 세계잉여금 2.8조원=2.5조원(일반회계)+0.3조원(특별회계)

\*\* 세계잉여금(조원)

: ('12) △0.1 → ('13) △0.8 → ('14) △0.8 → ('15) 2.8

- **(원인)** 국세수입 초과 징수(2.2조원)와 이월액 감소(2.1조원)에 주로 기인

- **(국세수입 초과)** 국세수입은 +2.2조원 초과 징수하였으나 세외수입은 △0.6조원\* 감소

\* 전체 세외수입은 △2.1조원 감소하였으나 대학회계 전환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1.5조원)가 수입과 지출에서 동시에 감소하여 제외

- **(이월 감소)** '15년 이월액은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 감소

\* 이월액 규모(조원): '11(5.1) → '12(7.8) → '13(7.2) → '14(8.0) → '15(5.9)

※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이월액(세입징수액 증가 또는 이월액 감소 ⇒ 세계잉여금 증가)

- **(향후 처리계획)**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5,276억 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할 계획(특별회계 0.3조원은 자체 세입조치)

\* ①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 (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 채무상환 (①, 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 〈법정 최소비율(30%)로 처리시(예시)〉

- ①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 1,400억원
-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7,163억원
- ③ 채무상환 : 5,014억원
- ④ '16년도 세입이입(또는 추경재원) : 11,699억원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 “세금 더 내야하나”...‘구글세’ 도입에 속 타는 다국적 기업

BEPS 관련 규제가 도입되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 뜨겁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진출과 관련한 전략 등을 수정, 해외 조세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회계업계에 따르면 2012년 6월 OECD 재정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이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한 이후 3년 반 만인 지난해 11월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BEPS 규제가 확정됐다.

BEPS는 국가 간의 상이한 조세제도와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소득을 저세율국가로 이전하는 조세회피 행위다. 구글이 대표적인 회사로 꼽히면서 BEPS에 대한 세금을 일명 ‘구글세’라고 부른다.

OECD는 BEPS로 인한 세수 손실이 매년 최대 2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G20은 올해부터 최소기준과 공통접근, 모범관행·권고안·지침 등을 담은 BEPS 관련 최종 프로젝트 보고서를 내놨다.

다국적 기업들은 BEPS를 막기 위한 국제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EPS 규제에 따라 세액 단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역외탈세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원천지국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정KPMG 2016년 개정세법 및 BEPS 세계 설명회’에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이 몰린 이유다.

한국도 이같은 추세에 발맞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의무가 부과되는 이전가격 세제·국가별 보고서 등은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국제청과 민간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순차적 BEPS 대응 조치를 도입 검토할 예정이다.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BEPS 대응 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BEPS 홍보와 간담회, 포럼 등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측은 “BEPS 프로젝트로 변화된 조세환경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증가도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뉴스1, 2016-02-21〉

## “배출권거래제 미흡, 환경세 도입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배출권거래제도 외에 환경세를 추가로 도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적정가격으로는 2만 6,300원을 제시했다.

19일 조세재정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도와 환경세 조화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여건, 정책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고려해볼 때 2020년 온실가스

스 감축목표 달성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추가적인 제도적 노력으로 환경세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서 기준가격을 IKAU당 1만원으로 설정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돼 배출권을 사려는 기업은 많지만 팔려는 곳이 없어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실제 지난해 배출권 총 거래량은 124만 2,097톤으로 정부가 내놓았던 물량 5억 4,322만톤의 0.2%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유인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배출권 가격의 적정수준으로 2만 6,300원을 제시했다. 이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권 가격을 적정수준의 가격으로 보고 추정한 결과다.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배출권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책정한 기준가격 1만원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낮으며, 결국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2020년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세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세 과세대상은 배출권거래제 비적용부문으로 한정했다. 배출권거래제와 정책적 시너지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보고서는 다만 실제 배출권 가격이 적정수준보다 낮을 경우 전력부문에 한해 적정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차이만큼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가격하한제’ 도입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력부문에 적정수준의 탄소배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녹색기술 개발 및 사용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도다.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이 무상 할당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 비적용 산업부문에 과세되는 환경세 세율은 배출권 가격보다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환경에너지세제를 강화하는 경우 배출권 가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고려해 환경세율을 설정하되,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석탄과 전력에 대해선 추가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석탄세와 전력소비세 도입을 고려하되 이중과세문제 해소를 위해 전력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에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환경세를 설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강성훈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기준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배출권거래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배출권 가격이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도록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2016-02-19〉

### “부가가치세율 인상 고려해 볼 수도”

조세연, 부가세 세부담 결정요인 분석…부가세율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리려면 과세기반 확대, 세수율 상승과 함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부가가치세 세부담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부가가치세 수입 비율 수준을 증가시키려면 세율요인, 과세베이스 요인 및 세수율 요인의 동반상승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부가세 수입 비율은 4.1%로 OECD 회원국 평균 7.1%보다 3%p나 낮았다.

이처럼 부가세 비중이 작은 원인은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부가세를 도입한 이후 10%의 단일 명목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부가세 표준세율인 18.94%의 52.8%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도 OECD 평균의 90.7%에 그쳐 부가세수 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론적 과세베이스’란 수출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고, 중간투입물이나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투자는 과세범위에서 제외하며, 면세제도나 경감세율제도 및 기타비과세·감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부가세를 부과할 수 대상을 말한다. 국민계정상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최종소비지출에 해당한다. 이론적 과세베이스에 표준세율을 곱하면 탈세나 조세회피 등의 납세불순율이 없는 상태에서 거둘 수 있는 잠재적인 세수입 규모가 나온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이론적 과세베이스 비율은 1990년 57.3%에서 2002년 63.5%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큰 폭의 변동과 감소세를 보이며 2014년 61.2% 수준까지 떨어졌다.

과세베이스 비율이 2002년 이후 하락한 것은 정부 최종소비지출이 경상 GDP보다 1.34배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민간최종소비지출이 연평균 경상성장률의 85% 수준밖에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부가세 과세기반이 약화됐다는 의미다.

반면 이론적 과세베이스 대비 실제 부가세를 거둬

들인 과세베이스 비율을 의미하는 부가세 세수율은 1990년 0.61%에서 2014년 0.71%로 상승했다. 잠재적인 세수가 1990년 이후 연평균 9.1%씩 증가했지만 부가세수 실적은 연평균 9.7%로 더 빠르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13년 세수율은 66.9%로 OECD 평균 55.8%보다 11.1%p 높았다.

부가세 세율과 과세베이스는 OECD 평균만 못하지만 세수율만큼은 OECD 평균을 상회한다는 분석결과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OECD 평균보다 낮은 부가세수의 GDP 비율을 늘리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세수율을 더 상승시키는 방안을 먼저 꼽았다. 부가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하고 하락세인 과세베이스를 상승시키는 것은 수출 중심이 아닌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각종 감면·영세율·면세범위를 축소하거나 납세순응도를 제고하는 등 세수율을 상승시키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쉽게 끌어낼 수 있고, 우리나라 부가세 세수율은 70% 정도여서 아직 상승시킬 여력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세수율 증가를 통해 부가세 비율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세수율을 100% 이상 높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GDP 대비 부가세 수입 비율을 상당수준 높이려면 세수율, 과세베이스, 세율 등 3가지 요인 모두 또는 최소 2가지 요인을 함께 상승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치적 합의를 통해 부가세율을 인상하는 것도 정책수단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일신문, 2016-02-04)

# 재정포럼

2016년 2월호 통권 제236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희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김준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 월간 재정포럼

2016년 2월 15일 발행 / 제20권 제2호(통권 제236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0~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mailto: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지원팀

###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정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